

#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착화 방안

책임연구원: 안현미(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신희연(한국보육진흥원 팀장)

위촉연구원: 정수진(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발간사

지난 10여년동안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재정과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민이 배제되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 선호도와 서비스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지난 20여년 동안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 일대 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2012년~14년까지 280개 확충하는 등의 괄목한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를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현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는 주요 방안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아동,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사가 만족하는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보육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한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standard) 및 그에 따른 세부조건들(criteria)을 마련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 정책효과성 및 선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서울 국공립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후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서울은 향후 20년,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채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가지고 ‘보육 걱정이 없는 도시’ 서울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육 걱정없는 도시’ 서울을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며,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신 재단 연구자와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 11월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이숙진



# Contents

## I 서론 \_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제 2절 연구 내용 ..... 6
- 제 3절 연구 방법 ..... 8
  - 1. 문헌연구 ..... 8
  - 2. 조사연구 ..... 8
- 제 4절 연구 추진체계 ..... 14

## II ‘적정’보육서비스 개념과 서비스 준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 \_ 17

- 제 1절 보육서비스의 원칙과 준거(standard)에 관한 쟁점 ..... 19
  - 1. 보육서비스 기준과 영유아보육법 ..... 19
  - 2. 아동 최우선 원칙 ..... 22
  - 3. 보육철학과 목표 ..... 24
- 제 2절 보육서비스 수준에 관한 쟁점: ‘표준’, ‘적정’, ‘최저’ 수준 ... 26
- 제 3절 보육서비스 질의 영향요인 ..... 34
  - 1. 보육교사 변인 ..... 35
  - 2. 어린이집 환경 변인 ..... 36
  - 3. 부모변인 ..... 37

**Ⅲ 국내·외 보육서비스 기준(standards) 분석 및 시사점 \_ 39**

제 1절 한국 보육서비스 기준 및 근거 .....	41
1. 보육서비스 법적 기준 .....	42
2. 평가를 목적으로 한 보육서비스 기준 .....	48
3.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산출에 근거한 표준보육서비스 .....	53
제 2절 아일랜드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59
제 3절 스웨덴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70
1. 규범 및 가치 .....	70
2. 발달 및 학습 .....	71
3. 아동의 영향력 (Influence of the Child) .....	71
4. 피르스콜라와 가정(부모) .....	71
5. 관리, 평가 및 개발 .....	72
6. 어린이집 총 책임자(원장) 역할 .....	72
제 4절 호주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74
1. 호주 국가수준의 질적 프레임워크 (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 .....	74
2. 호주 어린이집(center-based) 운영의 핵심 기준(standard) .....	79
제 5절 일본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83
제 6절 소결 및 ‘적정’보육서비스 틀 .....	88

## IV ‘적정’ 보육서비스 델파이 조사 및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 결과 \_ 93

제 1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결과	95
제 2절 ‘적정보육서비스’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97
1. 델파이 1차 조사개요 및 결과분석	97
2. 델파이 2차 조사개요 및 결과분석	103
3. 3차 조사결과	111
제 3절 국공립어린이집 정착화 방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조사결과	167
1. 아동발달의 적정성	167
2. 보육교사 측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172
3. 보육서비스 측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176
4. 보육서비스측면: 건강, 안전, 위생	179
5. 지역사회측면: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182
6. 보육기관의 공공성: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183
7. 소결: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	183

**V**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_ 187

제 1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본원리 .....	189
1. 서울시 보육 철학과 보육목표 .....	190
2. 어린이집 운영방침 및 세부기준 .....	191
제 2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에 의한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200
1. 아동 발달 증진 .....	200
2.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	205
3. 운영의 투명성 확보 .....	214
4. 건강·안전·위생관리 강화 .....	223
5. 돌봄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	229
6. 보육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기관 책무성 강화 .....	231
제 3절 소결: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과 추진체계 .....	233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설립 인가 개선(안): 환경구성을 중심으로 .....	233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증제 도입 및 보육품질지원 센터 설립 .....	237
3. 서울시 어린이집 SMART 평가 시스템 도입 .....	239



**참고문헌 \_ 243**

Abstract ..... 250

**부 록 \_ 253**

부록 1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의 법적기준 및 근거 ..... 255

## 표 목차

표 I-1	델파이 방법 장단점	9
표 I-2	델파이 조사방법 과정	10
표 I-3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전문성	11
표 I-4	연구 추진과정 및 내용	15
표 II-1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 준거	20
표 II-2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 법적 근거 및 내용	21
표 II-3	EU의 인간존엄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23
표 II-4	표준보육과정	25
표 II-5	SERVQUAL 모델을 적용한 보육서비스 척도	30
표 II-6	개념정의	33
표 III-1	한국 보육서비스의 법적 근거	43
표 III-2	평가인증 지표 구성(40인 이상)	48
표 III-3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51
표 III-4	2009년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	54
표 III-5	서울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가이드라인 산출 기준	55
표 III-6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안)	57
표 III-7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안)	57
표 III-8	아일랜드 국가수준의 보육서비스 목적 및 기준	59
표 III-9	호주의 국가적 차원의 질적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76
표 III-10	호주의 어린이 학습 원칙, 실행 그리고 학습결과	77
표 III-11	호주의 core standards와 centre based standards	80
표 III-12	일본 보육소지침	83
표 III-13	국가별 어린이집 중심 운영 및 평가기준 비교	89
표 III-14	‘적정’ 보육서비스 프레임	90
표 IV-1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 대상자 현황(어린이집 규모)	95
표 IV-2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 참여자 보육교사 총 경력 및 구립 교사 경력	96
표 IV-3	1차 델파이 조사결과	99
표 IV-4	2차 델파이 조사결과	105
표 IV-5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3차 조사 기준	110
표 IV-6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아동측면	112

표 IV-7	텔레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교사 측면	121
표 IV-8	텔레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서비스 측면-운영의 투명성	128
표 IV-9	텔레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서비스 측면-건강·안전·위생	135
표 IV-10	텔레파이 3차 조사 결과: 지역사회연계측면	161
표 IV-11	텔레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기관의 공공성 측면	164
표 IV-12	추가되어야 할 필수공간 의견수렴 결과	168
표 IV-13	아동발달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 내용 의견수렴	169
표 IV-14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기준 의견 수렴 결과	170
표 IV-15	아동발달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 내용 의견수렴	175
표 IV-1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	184
표 V-1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	195
표 V-2	어린이집 하루 이용시간	202
표 V-3	평가인증시 보육활동자료 구비 기준(40인 이상)	203
표 V-4	교재교구비 단가 산출 기초	204
표 V-5	규모별, 연령별 아동1인당 교재교구비 비용: 가이드라인	205
표 V-6	어린이집 취업규칙 구성(안)	206
표 V-7	자율장학 프레임(안)	209
표 V-8	아동행동 대응성: 용인되는 훈육과 금지된 훈육	211
표 V-9	어린이집 아동행동지도를 위한 운영 체계(안)	212
표 V-10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 기준안 개선(안): 수입지출운영	214
표 V-11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 기준안 개선(안): 관항목	217
표 V-12	서울시 평가 추진과정(안)	221
표 V-13	정부공시 범위	221
표 V-14	ECEC사업 평가에의 부모참여	222
표 V-15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관찰 내용	224
표 V-16	서울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가이드라인 산출 기준	225
표 V-17	어린이집 운영 관계 법률 및 보육지침 개선(안)	226
표 V-18	어린이집-부모님 상생프로젝트	230
표 V-19	부모님과의 파트너쉽을 위한 가이드라인	232
표 V-20	어린이집 인가기준 개선(안)	234
표 V-21	서울시 보육교직원 인증제: 사전직무교육 및 실습 내용(안)	239

## 그림 목차

■ 그림 I-1 ■	텔레파이 조사방법 절차 및 단계 .....	11
■ 그림 III-1 ■	호주의 NQF와 QRS 체계 구성 .....	75
■ 그림 III-2 ■	호주 조기학습 비전과 프레임워크 .....	77
■ 그림 V-1 ■	서울시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 체계 및 관계 .....	193
■ 그림 V-2 ■	서울시 교사성장프로젝트 (안) .....	208
■ 그림 V-3 ■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지도점검 간소화 .....	219
■ 그림 V-4 ■	거점국공립어린이집 모델(안) .....	231
■ 그림 V-4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증제(안) .....	238
■ 그림 V-5 ■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 시스템(안) .....	241

# 연구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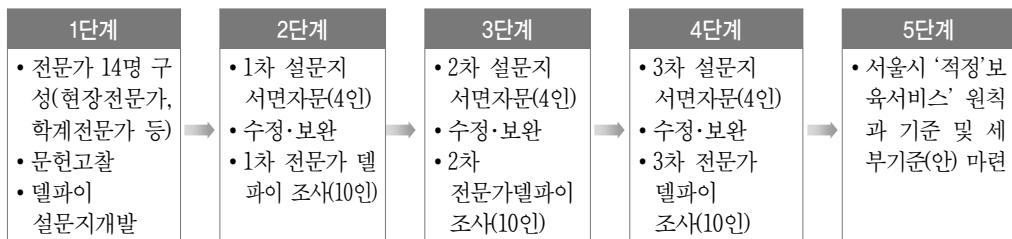
- 서울시는 보육공공성 확충을 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동 당 2개소 확충’ 노력결과,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중이 10.6%에서 12.2%로 확대되었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21.8%에서 26.6%로 확대, 접근용이하게 됨. 이러한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서비스 수준을 담보, 향상시킬 수 있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었음.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기준은 일차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표준보육서비스 기준”은 부재함.
  - 표준보육서비스는 현재 운용되는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 등으로 동일시킬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표준보육비용’은 한 아이당 필요로하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1999년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출시 인건비 기준단가를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옴으로써 비현실적 단가 및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표준’이라고 명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음으로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보육과정(보육과정, 보육·교육과정)’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 환경구성, 공간, 인력기준, 특수보육 등에 대한 내용 및 환경 구성 등에 있어서는 간과하고 있음.
- 보육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가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바로미

터가 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한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standard) 및 그에 따른 세부조건들(criteria)을 마련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더 나아가 서울시의 정책효과성 및 선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적용가능한 ‘서울 국공립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후 확산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델파이기법에 위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과 세부준거 마련

- 델파이방법은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분산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립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가는 방법임. 또한, 델파이 기법은 미래 예측 방법의 하나이고, 익명성과 피드백이라는 핵심요소를 지니고 있어 구조적으로 특정인의 설득적 주장이나 영향력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며,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연구조사원들에 의해 종합되며, 다음 단계 분석을 위해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이루어짐(박영숙 외, 2007).
- 본 연구의 핵심인 ‘표준’ 또는 ‘적정’ 기준의 보육서비스 질은 일반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주로 프로그램, 보육비용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져 델파이조사방법에 의해 전문가(현장, 학계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는 예측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함.



■ 그림 ■ 델파이 조사방법 절차 및 단계

- 현장전문가 중심의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을 활용한 적용가능성 조사
  -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은 드 보노(De Bono, 1973(2005))<sup>1)</sup>가 개발한 CoRT(Cognitive Research Trust) 프로그램에 포함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제안을 할 때 보다 열린 생각을 하게 하여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도록 하는 전략임. 이는 특정한 사물 혹은 사건,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흥미로운 것을 각각 기록한 다음 이들 각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별력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로 쓰임. 플러스(Plus)는 장점, 좋은 점, 편리한 점 등의 긍정적인 면을 의미하고, 마이너스(Minus)는 단점, 고칠점, 불편한 점 등의 부정적인 면을 의미함. 흥미로운 점(Interest)은 새로운 점 흥미로운 점, 기발한 점 등의 창의적인 면을 의미함.
  - 여기에 추가적으로 4~5개 그룹의 현장 전문가 원장 30명, 보육교사 19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함. 이 때,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기법을 사용, 개별 데이터의 '의미론적 연관성, 상호 의존성, 종속성' 등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그룹핑하여 구조화해 가는 방법을 함께 활용, 전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을 거침.
  - 조사내용은 서울시 국공립 모델로서 사전에 마련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조사함.

---

1) 80850\_CoRT1\_Introduction\_Section.pdf

## II ‘적정’보육서비스 개념과 서비스 준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진국 보육서비스 기준이 갖는 시사점

### 1. 보육서비스 수준에 관한 쟁점: ‘표준’, ‘적정’, ‘최저’ 수준

- 표준은 국가수준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의미함. 예를 들면, ‘표준 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의 만 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을 의미함. 반면, ‘표준’의 의미를 영유아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제법령, 시행령, 규칙과 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 또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일정정도 이상, 즉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 등으로 해석되기도 함(이승희·박지은, 2006; 김현숙·서병선, 2008).
- ECEC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은 ‘적합한(adequate)’ 또는 ‘양호한(good enough)’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지원(inputs)을 의미함(OECD, 2013:32). 하지만 최소기준은 모든 기관에 적용 가능한 규제 프레임 워크로 안전, 공간, 직원 대비 아동 비율, 직원의 자격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함(OECD, 2013:79). 이와 달리 정부가 인가기준으로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일본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앞서 언급한 적합한 수준의 범위로 해석될 수 있음.
- ‘적정’ 개념은 목적하는 지향성, 방향성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을 의미함. 예를 들면, 보육시설의 입지적정성을 목적으로 적정성은 보육수요, 이용편리성, 환경쾌적성, 안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의미함(서원석 외, 2009. 또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품질관리<sup>2)</sup>척도를 SERVQUAL 모델의 품질구성요인, 즉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응답성, 접근성 그리고 권리성이라는 7개의 품질 기준에 의거 적정성을 평가함.

2) 서비스의 우수한 성과에 관련한 제공자의 전반적 판단이나 태도라 정의하고 있음



- 위의 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그 수위에 따라 중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육이 목적하는 아동발달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적정보육서비스 개념으로 정하고자 함.

## 2. 외국 사례 분석 및 본 연구의 시사점

- 적정보육서비스 설계를 위해 국내외 보육서비스 가이드라인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음
  - 첫째, 스웨덴의 경우 궁극적인 보육목표만을 제시하고 세부 준거를 명시한 않았지만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 및 이외 교직원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지침과 원장의 구체적인 책무 등에 대한 기준은 본 연구에서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호주의 경우 한국의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등이 간과하고 있는 보육·교육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체계가 기준 및 준거, 실행, 아동성과까지 구체적인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기관보육 중심의 가이드라인도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셋째, 아일랜드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기준에 따른 목적과 그에 따른 세부 준거들이 구체적임. 또한 어린이집 입소, 계약에서 불만사항 처리 등까지 아동 및 학부모중심의 서비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넷째, 일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내용과 이와 관련해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육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소의 역할, 즉 보육소 보육의 목적, 특성, 자녀양육지원, 보육교사의 전문성 등을 명시하고, 보육의 원리,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 등을 토대로 한 보육내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육사업 안내(지침) 수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큼.

### Ⅲ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

본 연구결과, 아래와 같이 서울시 보육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운영 철학과 기준 그리고 ‘서울시 국공립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1. 서울시 보육철학과 보육목표

서울시 보육철학과 가치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전인적 성장 발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음.

#### 2. 어린이집 운영방침 및 세부기준

##### 1) 어린이집 운영 철학(안)

첫째,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토대로 전인적 성장 발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

둘째,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동의 특수성과 다양성, 지역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균등한 발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육 계획과 보육과정을 마련, 실천하여야 함.

셋째, 보육서비스의 관리 구조, 보고 체계,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필요한 경험과 기술, 특성과 역량을 가지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넷째, 보육서비스 공급의 적정 기준에 의한 예산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출(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개 그리고 내외부 점검체제 마련 및 책임 운영이 이루어짐.

다섯째, 어린이집은 철저한 안전, 위생,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건강 관리에는 예방접종 관리, 아동발달, 인원, 연령에 적절한 급간식(식수포함)을 제공, 위생적인 환경 및 식자재 관리, 충분한 휴식, 식습관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고 친밀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환경구성 마련뿐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

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함.

여섯째, 지역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 및 자원연계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함.

일곱째, 어린이집은 개방성과 불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수정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해야 함.

## 2) 어린이집의 보육목표 및 원칙

첫째,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발달 증진에 최선을 다함.

둘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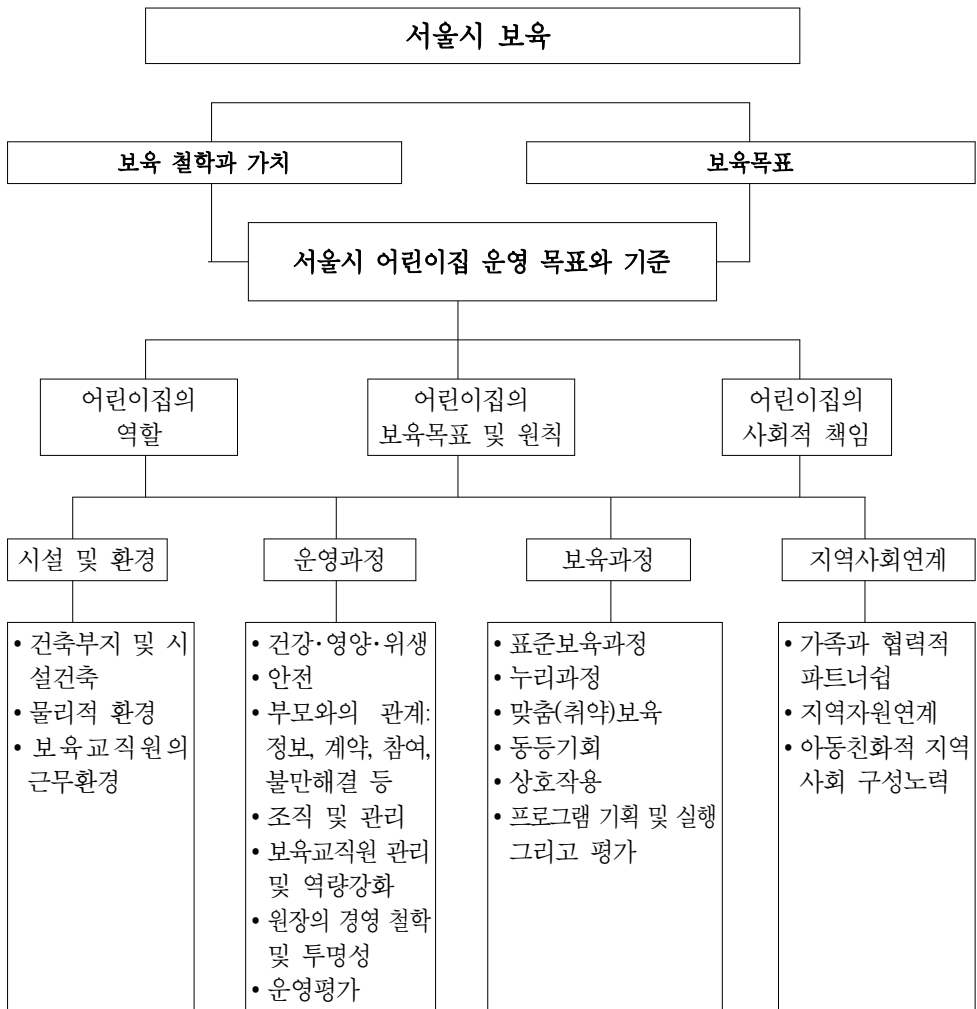
셋째, 서울시-어린이집-보육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함.

넷째, 건강, 안전, 위생 관리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길러, 심신의 건강한 기초를 마련함.

다섯째,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보육환경 구성, 즉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함.

여섯째, 보편적 보육을 통한 형평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을 다함.

이러한 여섯 가지 목표 및 원칙을 포괄하는 서울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음.



주: 앞서 연구방법에서도 밝혔듯이 보육과정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후 모델에서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함. 단, 맞춤보육, 동등기회,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포함함.

【그림】 서울시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 체계 및 관계

### 3.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구체적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은 아래 <표>와 같음.

영역	원칙(principal)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아동 측면	1. 아동 발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간의 적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가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 확보(가구 등 20%미만 배치)</li> <li>② 유희실 별도 공간 확보: 보육실 이외 유희실 공간 확보 기준 필요</li> <li>③ 세면대 및 변기: 아동 10명마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배치 등과 같이 직원 수, 장애아동 수 등을 고려한 수 기준 마련</li> </ul> </li> <li>- <b>인적구성의 적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최적의 교사대 아동비율: 만0세 1:2, 만1세 1:3~4, 2세 1:5, 만3세 1:12, 만4세 이상 1:15</li> <li>⑤ 직장맘 친화형 지원 : 직장맘 이용 일정비율 이상의 경우 교사추가 지원</li> </ul> </li> <li>- <b>서비스의 적절성과 균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연령별 보육과정 중심의 교재교구 기준안 마련</li> </ul> </li> </ul>
보육 교사 측면	2.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력관리의 체계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울시 보육교직원 취업규칙마련: 구체적인 내용 제시 (모집, 채용, 승급 체계 등)</li> </ul> </li> <li>- <b>인적구성의 전문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서울시 보육교사 인증제 및 교사성장 프로젝트: 사전교육 의무화, 자율장학 및 보수교육 체계화</li> <li>③ 원장의 역할과 책무성 그리고 전문성 명시</li> </ul> </li> <li>- <b>대응성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아동행동지도 지침서 마련 및 교육 이수</li> </ul> </li> </ul>
보육서 비스 측면	3. 운영의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재정의 투명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계관리시스템 전 의무화 및 원장 책임제</li> <li>② 재무회계 기준안 마련 및 고자: 클린운영, 특별활동비 등</li> </ul> </li> <li>- <b>운영의 효율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보육품질 평가 계획 및 자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품질 목표 설정: SMART</li> <li>· 어린이집 운영방침 수립</li> <li>· 직원 전문성 강화 계획 수립</li> <li>· 품질지표에 따른 평가(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이행율, 교육목표 대비 실행율 등)</li> </ul> </li> </ul> </li> <li>- <b>운영의 공개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부모참여 활성화</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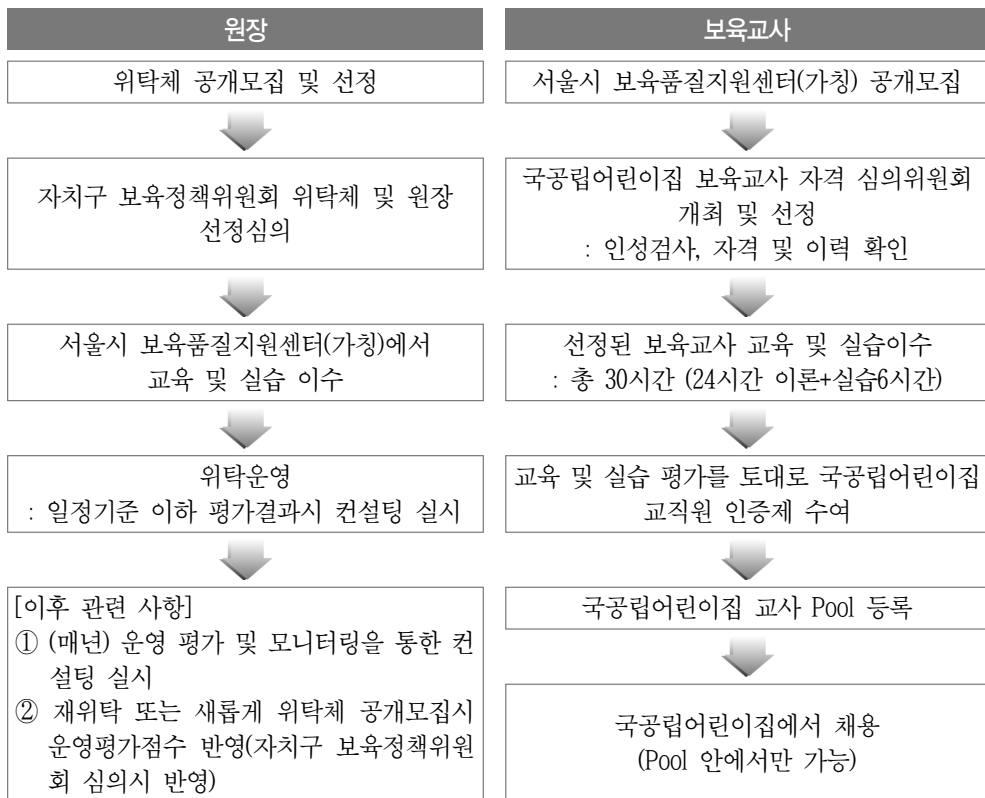
영역	원칙(principal)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4. 건강·안전·위생 관리 강화	<p><b>- 튼튼건강</b></p> <p>① 건강증진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실시</p> <p>② 영양 : 급간식 비용이 아닌 필수 기준 도입( 열량, 칼로리, 제철과일, 단백질, 칼슘, 염도 등 기준)</p> <p><b>- 튼튼안전</b></p> <p>③ 안전인증제 :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적정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석면어린이집</li> <li>· 모든 자재, 물감, 장난감 무연인증품 사용</li> <li>· 보육시설 내부 마감재료: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설치</li> </ul>
지역 사회 연계 측면	5. 돌봄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p><b>- 부모님과과의 상생프로젝트</b></p> <p>① 적정보육서비스의 부모님과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실천 그리고 부모평가 실시</p> <p><b>- 거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b></p> <p>② 지역사회 돌봄 거점기관의 책무성- 어린이집 미 이용 부모의 육아두려움 해소를 위한 부모교육</p> <p>② 지역자원 연계 및 확보를 통한 현장학습, 특별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p> <p>③ 보육반장과의 긴밀한 연계 및 정보공유</p>
보육 기관의 공공성 측면	6. 보육서비스 형평성제고 및 기관 책무성 강화	<p><b>- 다양성 및 동등기회 보장</b></p> <p>① 다문화, 장애통합 등의 이동 맞춤형 매뉴얼 개발 및 교육실시</p> <p>※ 운영원칙: 기회의 공평성, 비차별 실천, 참여 장벽제거, 다양성 공유, 특별한 욕구에 대한 수용 및 대응</p> <p><b>- 개방성</b></p> <p>②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매뉴얼: 서면계약서, 어린이집 서비스 목표 및 기능, 교사소개, 교과과정, 부모교육참여,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보육서비스 불만 처리 방식, 각 자녀에 대한 세부기록사항 등)</p> <p>③ 열린어린이집 운영 : 주1일 열린이집 운영 및 상시화</p> <p>④ 운영위원회 운영 및 불만창구 마련</p> <p>- 불만창구 운영절차 마련 및 실시</p>

#### 4.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과 추진체계

#####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설립인가 개선안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적정성, 인적구성의 적정을 담보하기 위한 ‘어린이집 인가 기준과 공간배치의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이외 보육실의 환경구성(교재교구, 환기, 온도, 소음, 채광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또한 설치시 자치구 마다 각기 상이하여 설치시 공통기준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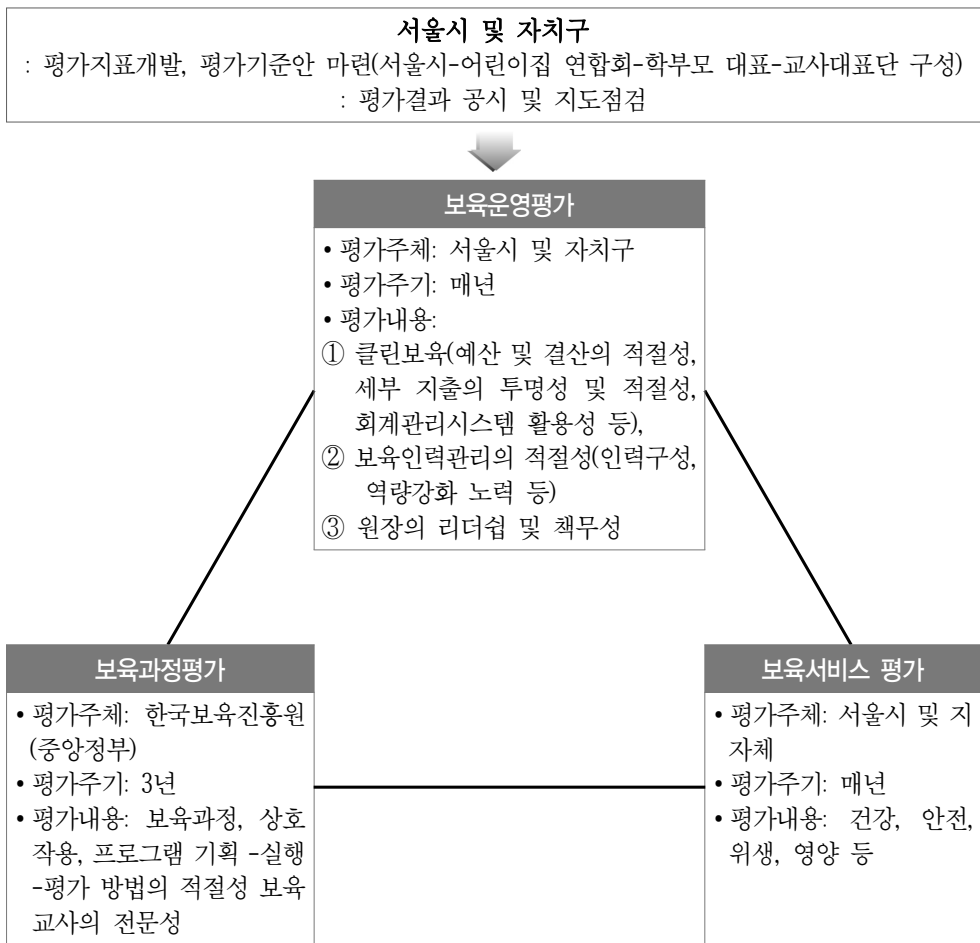
#####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증제 도입 및 보육품질지원센터 설립



■ 그림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증제(안)

### 3) 서울시 어린이집 SMART 평가 시스템 도입

SMART 평가 시스템을 보육운영평가, 보육과정평가, 보육서비스 평가 등 세 영역으로 구분, 실시함. SMART 평가 시스템의 전제조건은 평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평가자의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체계 또한 포함함.



【 그림 】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 시스템(안)



# I

##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 내용

제 3절 연구 방법

제 4절 연구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 서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보육공공성 확충을 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개동 당 2개소 확충’ 노력결과, 2011년 658개소에서 2012~2013년 209개소 추가 확충하여 2013년 12월말 현재 867개소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중이 10.6%에서 12.2%까지 확대되었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의 21.8%에서 26.6%가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서비스 수준을 담보, 향상시킬 수 있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기준은 일차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표준보육서비스 기준’은 없다. 다만, 표준보육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 이외에 보육지침, 평가인증 등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근거들을 총망라한다고 하더라도 세부기준이 불명확하거나(예: 기저귀 가는 공간, 가구 배치 공간 등의 구분 없이 보육실 통합 기준만 존재), 기준이 없는 경우(교사의 휴게 공간 등) 등의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보육서비스에 준하는 ‘표준보육비용’은 한 아이당 필요로하는 서비스 단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2005년 영유아를 일정기준으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을 “표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출시 인건비 기준단가를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과 함께, 5년마다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매년 물가상승률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2009년 영아의 높은 보육비용 단가 산정 등의 문제점은 ‘표준’이라고 명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2013년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육아정책연구소, 2013)은 실제 어린이집 운영상 제공되는 서비스 평균값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높은 인건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국공립과 민간의 낮은 인건비 지출과 기타운영비 지출 등과 같은 지출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통합적 산출 결과 또한 ‘표준 보육비용’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표준보육과정(보육과정, 보육·교육과정)’은 아동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 환경구성, 공간, 인력기준, 특수보육 등에 대한 내용 및 환경 구성 등에 있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이 갖는 서비스의 원칙과 기준의 모호성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보육서비스 투입에 따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OECD(2006, 2012)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서비스 기관에 대한 규제 기준 마련, 서비스 질에 대한 정의와 질적 수준의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틀 마련과, 이를 위해 모니터링을 통한 교직원, 부모, 영유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한 국가 내에서도 서비스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건강과 환경, 프로그램 기준을 정의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구조적 투입(공적 자금, 시설, 교구, 교사 기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라는 것이다(OECD, 2006). 이를 위해 명확한 질 목표와 규정 설정이 필요하며, 규정 설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을 명료화할 수 있다. 즉,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실내·외 공간, 교사 자격 기준과 교사와 영유아 또는 교사와 부모의 접촉빈도와 같은 구조적 지표 등을 고려할 수 있다(OECD, 2012). 한 예로, 호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몰타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수준의 품질 가이드라인(National Quality Standard)’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법적 기준하에서 보육서비스 기준과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

기관의 기준을 분리, 가이드라인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목적과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기준을 구분하여 운영, 환경, 자원(인적, 물적 등) 등의 기준과 규제가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건강, 영양, 환경, 안전 등과 같은 서비스의 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비스의 기준(standard) 및 그에 따른 세부조건들(criteria)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표준보육과정을 넘어선 프로그램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중심’의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더 나아가 서울시의 정책효과성 및 선도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서울 국공립 모델’ 마련 및 향후 현장 적용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 2절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지침에 근거한 보육서비스 공급의 준거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적정’보육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II 장은 보육서비스의 원칙과 기준(standard)에 관한 쟁점, ‘표준’, ‘적정’, ‘최소’ 개념정의 및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한 개념 선택, 그리고 보육서비스 기준 마련의 논리적 근거로서의 보육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내고 본 연구의 방향을 선정하는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III 장은 이론적 논의를 넘어서서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보육목표, 가치, 지향점 등을 토대로 한 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서비스 기준 등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아일랜드, 스웨덴, 호주, 일본 등을 분석하여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 개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4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기관) 중심의 서비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로 아일랜드, 호주가 대표적이다. 특히, 호주는 한국의 평가인증 기준을 마련하는데 벤치마킹할 정도로 구체적인 표준보육서비스에 따른 세부기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웨덴은 보육교사와 이외 직원을 구분, 각각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하는 등의 목표만을 분명히 할뿐 구체적인 세부준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목표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보육소 운영지침서를 마련, 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소 보육의 목적, 보육의 원리(보육의 목표, 방법, 환경,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 등)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장은 II, III 장 분석을 토대로 개발한 델파이 조사지를 3차례에 걸쳐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 및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현장전문가, 즉 원장 및 보

육교사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적용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여 최종 ‘서울시 국공립 모델’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V 장은 IV 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국공립 모델’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여 서울시 보육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 3절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델파이방법 등의 연구방법에 대한 본 연구의 적합성, 진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조사하였다.

둘째, 표준보육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연구범위 선정 위해 ‘표준’, ‘적정’, ‘최저’ 등의 개념 및 준거 관련 문헌리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표준보육서비스’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적 기준과 평가관련 기준 그리고 보육서비스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준거의 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넷째, 외국의 표준보육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헌조사를 토대로 ‘서울시 표준보육서비스’가이드라인 개발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2. 조사연구

#### 1) 델파이 방법

##### (1) 델파이 방법 필요성

델파이 방법은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분산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가는 방법이다. 또한, 델파이 방법은 미래 예측 방법의 하나로 교육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교육발전의 미래 예측, 교육의 목적과 목표 설정, 교육과정 개발, 교육문제 해결, 교수방법 등을 목적으로 전문가와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종합하는 방법으로 델파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sup>1)</sup>

---

1) 델파이 방법은 특정영역의 문제를 다루는데 전문가들의 예측이 비전문가에 비해 정확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과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반면 델파이 방법은 익명성과 피드백이라는 핵심요소를 지니고 있어 구조적으로 특정인의 설득적 주장이나 영향력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며, 참여자들의 의견이 모두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연구조사원들에 의해 종합되며, 다음 단계 분석을 위해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박영숙 외, 2007).

【표 I-1】 델파이 방법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되는 질문지로 연구자에 의해 통제됨에 따라 초점에 집중함</li> <li>• 대상자 선정시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제적임</li> <li>• 피드백을 기초하여 의견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음</li> <li>• 각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형성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성 있는 전문가 선정의 어려움</li> <li>• 전문가의 의견의 성실성 및 신뢰성 문제(무책임한 반응)</li> <li>• 반복됨에 따라 회수율이 낮아짐</li> <li>• 전체 조사과정 시간이 오래 걸림</li> <li>• 직접 토의를 통한 상호 작용 효과가 없음</li> </ul>

본 연구의 핵심인 ‘표준’ 또는 ‘적정’ 기준의 보육서비스 질은 일반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주로 프로그램, 보육비용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져 델파이조사 방법에 의해 전문가(현장, 학계 전문가)적인 직관을 객관화하는 예측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2) 델파이 방법 및 추진과정

델파이 방법은 먼저 전문가를 선정, 개방형 설문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1차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2차, 3차 설문지는 1차, 2차 조사결과에 대한 우선순위나 중요도 또는 내용분석 타당도 검증을 통해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진행하였다.

두고 있음. 직접 면담식 토론은 소수의 의견이 포기되거나 권위 있는 사람의 영향, 사전 조율, 한번 취한 입장의 고수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이종성, 2001).

표 I-2 델파이 조사방법 과정

델파이 조사 과정	내용
전문가 선정	참여자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능력, 참여자의 성실성, 참여자의 수 등을 신중하게 고려
1차 설문지	탐색 단계로 개방형 설문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1차 설문시 구조화한 설문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개념을 주입하여 타당성의 문제가 생김
2차 설문지	통계 처리한 1차 설문 결과를 참여자에게 제시하며,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조화한 2차 설문 작성함.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따라 항목을 평가하며 2차 설문 결과로 참여자 간의 합의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음.
3차 설문지	2차 설문지의 참여자의 집중 경향 및 통계적 집단 반응을 피드백하여 합의 점에 도달하기 시작함. 4, 5차 반복조사의 필요성 검토

이러한 계획 하에 본 연구에서 델파이 방법은 먼저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진행하였다. 전문가위원회는 보육 학계, 현장전문가의 추천 및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력을 토대로 14인을 선정, 실시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 전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 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10명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방형 질문지 기입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변의 공통점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반구조화된 질문지 작성방법으로 전환하였다.

그래서 1차 델파이조사지를 개발하여 먼저 전문가 4인에게 서면자문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고 학계 및 현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2차 조사는 ‘적정’ 보육서비스의 원칙에 따른 기준(standard)(대분류)을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작성하고 이 또한 전문가 서면자문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질문지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3차 조사는 선정된 원칙 및 기준 그리고 구성요소를 토대로 세부준거(criteria)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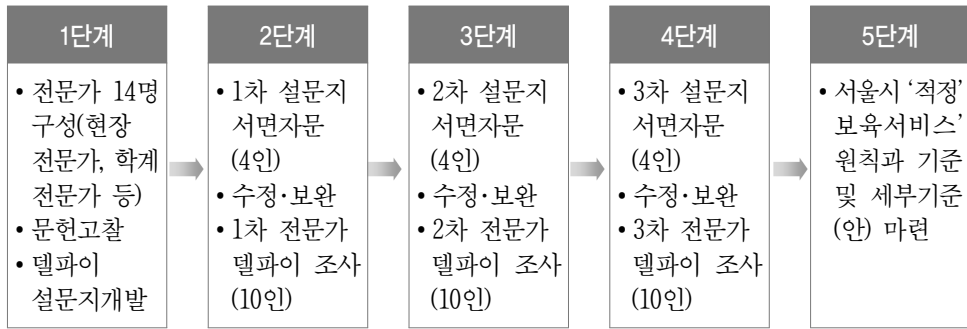


그림 I-1 | 델파이 조사방법 절차 및 단계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보육관련 전문성은 아래와 같다. 델파이 조사 참여자 선정은 보육관련 전문가 중 해당 연구와의 관련성, 즉 보육 이념과 철학, 가치, 보육 서비스 질적 기준 및 이와 관련한 정책분석연구, 평가 지표개발 등의 참여 경력이 있는 연구자 및 교수와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로 선정하였다.

표 I-3 |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전문성

참여자		참여자 전문성
학계전문가	A	•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돌봄 그리고 공공성 연구 참여 • 서울시 보육 전문가 자문위원 등 다수
학계전문가	B	• 보육 및 아동학 전문가 • 델파이 방법을 통한 공공성 연구 등
시민단체(전문가)	C	•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관련 토론회 개최, 자료집 발간 등 • 보육정책 공약 제시 등
학계전문가	D	• 보육정책 전문가 • 보육정책 연구 다수
학계전문가	E	• 보육 전문가
현장전문가	F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집 조력 등 개선방안 마련 등 다수
현장전문가	G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보육과정, 누리과정 교육자료집 발간, 안전 등 지침 가이드 마련 등 다수
현장전문가	H	• 20년 이상 구립어린이집 원장 경력 • 맞춤형선택, 전문가 자문단, 평가인증 자문, 누리과정 설계 참여 등 다수

참여자		참여자 전문성
현장전문가	I	•보육교사와 원장 경력 20년 이상, 회계 교육 등
보육교사	J	•구립어린이집 20년 경력
보육교사	K	•구립, 민간,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 20년 이상
보육교사	L	•구립, 민간 어린이집 경력 15년 이상
회계 및 현장전문가	M	•보육전문가, 평가인증 설계 및 실행 등 다수

## 2) 현장전문가 중심의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을 활용한 조사

델파이 방법을 토대로 개발한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그에 따른 준거가 현장 적용가능한 모델인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조사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견수렴 결과, 개방형 질문이 많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고, 1:1 면접보다는 토론을 통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장전문가 중심의 PMI와 어피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을 혼합한 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PMI(Plus Minus Interest) 기법은 드 보노(De Bono, 1973(2005))<sup>2)</sup>가 개발한 CoRT(Cognitive Research Trust) 프로그램에 포함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제안을 할 때 보다 열린 생각을 하게 하여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특정한 사물 혹은 사건, 정책 등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흥미로운 것을 각각 기록한 다음 이들 각각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별력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주로 쓰인다.

플러스(Plus)는 장점, 좋은 점, 편리한 점 등의 긍정적인 면을 의미하고, 마이너스(Minus)는 단점, 고칠 점, 불편한 점 등의 부정적인 면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Interest)은 새로운 점, 흥미로운 점, 기발한 점 등의 창의적인 면을 의미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합되어 작용하는 사고의 절차를 하나, 하나씩의 단계를 걸쳐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집단 간의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유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범주 설정을 위한 활발한 토의가 가능하며, 다양한 사고력을 기를 수 있으며 주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찾고

2) 80850\_CoRT1\_Introduction\_Section.pdf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하여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PMI 활동 방법은 개인활동, 모둠활동(4~6명), 대집단 활동 모두 가능하다. 특히, 모둠 활동시에는 브레인 스토밍의 절차를 참고하여 리더와 기록자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 한 가지씩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찾는다. 그리고 토론활동은 매우 효과적이며 장단점을 찾되 까닭이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레스팅은 1차적으로 주제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점 기발한 점을 찾는 활동을 하며 2차적으로 단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PMI 기법에 의해 의견을 순차적으로 적어 지면에 붙이게 하고, 그 의견에 대해 모둠 내 토론을 하여 모아질 수 있는 의견은 모으고 그렇지 않은 의견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모둠 활동이 마무리되면 대집단 활동으로 각 모둠의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고 전체 의견을 모으는 방법인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 기법을 함께 적용하였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은 방대한 데이터를 얻게 되었을 때, 개별 데이터의 '의미론적 연관성, 상호 의존성, 종속성' 등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그룹핑하여 구조화해 가는 방법이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 완성되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거나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 정리에 아주 유용하기에 이를 적용하였다.

그래서 현장전문가 원장 그룹 30명과 보육교사 그룹 19명을 대상으로 5인 1조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조사지를 미리 주어 기록하게 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은 서울시 국공립 모델로서 사전에 마련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 제 4절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는 연구기획 및 착수단계로 연구목적에 따른 방법의 적절성, 조사내용,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델파이조사를 위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하고 각각 3차례에 걸쳐 자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현장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현장전문가 간담회형식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를 토대로 한 국공립 모델(안)을 마련, 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I-4】 연구 추진과정 및 내용

단계	주요내용
1단계: 연구 기획 및 착수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계획서 준비를 위한 사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개방형 델파이조사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착수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학계 및 현장전문가, 서울시 담당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단 내부 전문가</li> <li>- 논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방향 및 설계 적절성</li> <li>2. 연구방법 타당성</li> <li>3. 연구내용의 적절성</li> <li>4. 연구범위에 대한 의견</li> <li>5. 전문가위원회 및 델파이조사를 위한 구성 적절성</li> </ol> </li> </ul> </li> </ul>
2단계: 조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착수결과보고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델파이 조사지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li> <li>델파이 조사지 개발(1차안) : 전문가위원회 서면 검토 후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적정’보육서비스 개념, 보육서비스 철학적 가치, 적정보육서비스 구성요소</li> <li>- 전문가위원회 구성 총 13인: 학계전문가 4인, 현장전문가: 총 7인 (원장 3인, 보육교사 2인, 센터장 2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델파이 조사지 개발(2차안): 적정보육서비스 구성요소에 따른 세부기준</li> </ul>
3단계: 적정보육서비스 정착화 방안 마련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델파이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용가능한 ‘서울시 국공립 모델’ 개발(안)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방법: 현장전문가 (원장, 보육교사) 중심의 PMI 기법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기법을 적용한 조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국공립 모델 정착화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li> </ul>
4단계: 최종심의 및 최종보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 심의 및 최종보고</li> <li>연구보고서 발간</li> </ul>





# III

## ‘적정’보육서비스 개념과 서비스 준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절 보육서비스의 원칙과 준거(standard)에 관한 쟁점  
제 2절 보육서비스 수준에 관한 쟁점: ‘표준’, ‘적정’, ‘최저’ 수준  
제 3절 보육서비스 질의 영향요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II

## ‘적정’보육서비스 개념과 서비스 준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제 1절 보육서비스의 원칙과 준거(standard)에 관한 쟁점

#### 1. 보육서비스 기준과 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보육이념’에 대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은 크게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자격 및 교육, 어린이집 운영 기준, 건강·영양·안전, 관리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 조항을 보면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 2 놀이터 설치, 15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제23조, 제23조 2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제25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제25조의 2 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 제26조 2 취약보육 및 일시보육서비스, 제29조 보육과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31조~제33조의 2 건강·영양·안전, 제41조 지도와 명령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기준이 갖는 한계는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 세부 내용 및 기준, 서비스 수준의 정도(level)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 표 II-1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 준거

특성	영유아보육법 구분	세부항목
보육이념	보육이념	제3조(보육 이념)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보육인력	보육교직원 자격 및 교육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기준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29조(보육과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건강·영양·안전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3조(급식 관리)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관리감독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 제49조의2(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 영유아보육법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제공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이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출한 표준보육비용과 아동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중심의 표준보육과정에 준해서 제공되고 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근거한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과정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교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Ⅱ 표 II-2 Ⅱ 표준보육과정과 표준보육비용 법적 근거 및 내용

구분	근거	세부항목
표준 보육 과정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보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li> <li>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보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ul>
표준 보육 비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무상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이상은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li> </ul>

구분	근거	세부항목
	범위 등	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 • 3세 미만은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 영유아보육법

## 2. 아동 최우선 원칙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근거는 아동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에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항에 당사국은 아동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sup>3)</sup>에 근거하여 유니세프는 발달권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이 마련, 제공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9년 UN에서 제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91개국이 비준한 이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생존과 보호, 발달

3) 1. 당사국은 휴식이나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출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유니세프([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과 참여의 권리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천명하고 있다.

EU에서는 2002년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EU 2020 전략, 즉 여성 고용율 75% 달성을 위해 보육시설의 접근이 중요하며, 3세 이상 아동은 의무보육을 적어도 90% 이상을, 3세 이하 아이들 중 적어도 33% 공급 필요성을 권고하였다(EU, 2013a). 더 나아가 최근 EU는 2012년 목표를 ‘인간존엄존중’을 창립가치로 천명하고, 그들의 목표는 인간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아동의 권리보호’, ‘사회적 배제와 차별 방지’, ‘사회정의와 보호 증진’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 노력하고 있다. 특히, EU는 유럽 2020 전략 내에서 핵심문제로써 아동빈곤과 사회적 배제 해결을 위해 예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전략으로는 첫째, 아동 최우선 이익 및 독립적인 권리 보유자로서 아동을 인식, 둘째, 충분한 자원에의 접근, 양질의 서비스 접근, 참여권 모드 통합적 개발 및 접근, 셋째, 관리, 실행, 모니터링 방식의 개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EU, 2013b).

표 II-3 EU의 인간존엄 존중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b>목표</b>	① 아동의 권리보호 ② 사회적 배제와 차별 방지 ③ 사회정의와 보호 증진	
<b>원칙과 전략</b>	1. 수평원칙	• 아동 최우선 이익 및 독립적인 권리 보유자로서 아동을 인식
	(1) 충분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	• 노동시장에서 부모참여 지원 • 혜택(benefits)들의 결합을 통한 충분한 생활기준 제공
	(2)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조기아동교육과 돌봄에 투자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불평등 감소 • 기회균등에 영향을 주는 교육시스템의 개선 • 아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건강시스템의 책임 개선 •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주거와 생활 환경 제공 • 가족지원과 돌봄환경의 질적 향상
	(3) 참여할 아동의 권리	•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 활동에 모든 아이들의 참여를 지원 •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아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mechanism)
	2. 통합적 접근 및 전략	

3. 필요한 관리, 실행, 모니터링 방식 개발 및 강화	• 부문들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강화와 거버넌스 구조 개선
	• 강점근거기반 접근방법의 사용 강화

출처: EU(2013b)

이러한 국제기구 등의 보육서비스 제공 원칙과 기조는 “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이념과도 동일하다. 특히, EU에서 제시한 원칙과 전략의 경우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일정 수준의 보육시설의 확충, 양질의 서비스 접근성, 참여권 그리고 관리, 실행,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강화 등의 방법은 “표준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보육철학과 목표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보육과정은 보편적 보육내용을 국가차원에서 마련, 제공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임영심 외, 2013).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우리 문화에 적합한 내용을 일관성 있고 연계적으로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 전국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표준보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첫째,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둘째,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셋째,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넷째, 자연과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다섯째,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과정의 목표는 아래 <표 II-4>에서 볼 수 있는데 6가지 목표 달성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느냐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는 이 6가지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즉, 6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은 보육과정을 넘어선 인간상인 반면 목표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보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표 II-4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개념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의 만 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
목적	<p>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우리 문화에 적합한 내용을 일관성 있고 연계적으로 실천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 전국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p> <p>※ 추구하는 인간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li> <li>•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li> <li>•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li> <li>• 자연과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li> <li>•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li> </ul>
목표	<p>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지식·기술·태도와 습관을 가진다.</p> <p>나)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능력을 기른다.</p> <p>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 또래, 공동체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지며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습득한다.</p> <p>라) 기초적인 언어능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른다.</p> <p>마) 탐구 능력을 토대로 수학적,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기른다.</p> <p>바) 주변의 친근한 환경과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적 요소를 즐겁으로써 감성과 창의성을 기른다.</p>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보센터(2013)

## 제 2절 보육서비스 수준에 관한 쟁점: ‘표준’, ‘적정’, ‘최저’ 수준

보육서비스는 수준에 따라 ‘최소’, ‘표준’, ‘적정’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차이는 동일한 개념일지라도 차이가 있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연구자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또한 학문영역에 따라서도 서비스 수준을 명명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ECEC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은 ‘적절한(adequate)’ 또는 ‘양호한(good enough)’ 질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요건(inputs)을 의미한다(OECD, 2012:32). 구조적인 요건은 물리적 환경(건물, 공간, 실외, 교구 등의 질, 교직원의 훈련수준, 교사 대 아동비율, 근무조건 등을 의미한다. 즉,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적합한 서비스 질의 최소기준을 의미하는데 그 구성요소의 포괄범위까지 기준하고 있지만 중요함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 주법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위한 ‘최저인가기준(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sup>4)</sup>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설의 자격기준 및 보육교직원 채용, 보육 프로그램, 건강과 영양, 돌봄, 안전과 환경, 기관의 관행, 기록·보고 및 게시 등의 세부적인 기준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한 예로 ‘건강’에 대해 최소인가조건은 아픈 증상에 따라 대응 또는 부모연락 및 집으로 돌아가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구급상자에 있어야 할 물건, 쓰레기 처리 과정, 손씻기, 식수대, 화장실, 기저귀 가는 공간, 배변훈련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sup>5)</sup> 심지어는 연령에 따른 우유의 종류와 지방함량 기준, 손씻기를 교사와 영유아

4) Chapter 170-295 WAC: 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S ((170-295)(2013.10.22일 업데이트 자료)(<http://apps.leg.wa.gov/wac>)

5) ① 영아의 돌봄에 대한 내용에서는 영아가 섭취할 음식과 식자재의 보관과 기기의 세척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변활동에 사용되는 간이화장실의 사용과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② 안전과 안전한 환경구성, 위생 상태, 오물처리, 실내 온도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약 및 살충제의 사용 시 학부모에게 어떤 종류의 약품을 어디에 살포했는지를 알리고, 살포지점에 특정한 표식을 해둘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③ 기관의 운영에서는 차별과 아동학대, 방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교직원의 음주 혹은 흡연의 금지구역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④ 마지막으로 기록의 보관과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아동의 출결관리를 전자문서로

가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하는지까지도 명시되어 있다.<sup>6)</sup> 특징적인 점은 영아와 유아를 구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기관운영금지 등의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강력한 지침임을 알 수 있다.

보육 이외에 사회복지영역에 있어서 최저수준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윤상용 외(2010)는 공공사회서비스제도의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방과후제도의 경우 아동권리협약의 권리조항을 기준으로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최저수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만을 제언할 뿐 최저수준의 구체적 명시나 제시한 방향성이 권리기준과 어떤 관계성을 띄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최저표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최저’ 기준은 당사자들로부터 기대(요구)되는 혹은 이해당사자들이 수용할만한 성과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적(prescriptive)이기보다는 다소 일반적(general)인 특성(nature)이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기도 한다(Mattson, 1992:29-60; 김통원 외, 2006 재인용).

다음으로, ‘최저’수준과 달리 서비스의 ‘표준’은 주로 측정가능한 지수화 또는 비용 등의 연구들에서 제시된다. 대표적으로 표준보육단가와 표준보육비용에서의 ‘표준’의 개념은 모호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서비스 비용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승희·박지은(2006)은 ‘표준’의 개념을 첫째, 현재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현실적인 비용, 둘째, 영유아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제법령, 시행령, 규칙과 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수준, 셋째,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일정정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등을 고려한 단가를 의미한다. 김현숙·서병선(2008)은 표준보육비용에서 ‘표준’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을 감안하고, 영유아 보육법령의 준수와 사회기준 충족,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사회가 합의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표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과 측정의 준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이 다르게 책정됨을 제시하고 있다. 김혜금(2010)은 표준보육비용이 보

관리하여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과 일정, 식단표 및 차별금지포스터가 직원 및 학부모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함을 정해두고 있다.

6)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인증 기준에 제시되어 있음

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면서 표준보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제로 투입하는 제반비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중심의 연구에서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표준보육서비스’에 대한 합의 없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실제 ‘비용’을 측정하여, 표준이라는 것으로 결정하기에는 편차가 크고, 단일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소에서의 법적 규정에 따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제45조의 최저기준을 유지하기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에게 투입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비용 기준을 명명하는 개념만으로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육서비스 이외에 양적방법론에 의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토대로 ‘표준화’ 노력을 한 조성연 외(2011)의 연구에서는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타당도 연구를 토대로 보육교사 직무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이는 모든 기관의 보편적인 수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척도의 질문이 갖는 현재 교사의 환경적 요인의 만족도를 토대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구성요소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나 기준선 설정 방식으로는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즉, 직무만족도를 표준화하는 것보다는 직무분석을 토대로 보육교사 직무 표준화를 선정하는 경우 ‘표준화’의 의미가 적절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적정’서비스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척도 등의 기준을 토대로 평가방법을 통해서 적정수준을 제시하였다. 서원석 외(2009)는 보육시설의 입지적 정성을 보육수요, 이용편리성, 환경쾌적성,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GIS공간분석기법에 의해 서비스 적정 기준을 지수화하여 양적방법론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양적 데이터를 통해서 ‘적정’수준을 제시하는데 ‘박능후(2002)의 경우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제도별 장기 재정 추계치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추구되어야 할 사회복지재정의 적정기준이 제시되기 보다는 한국의 복지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호·최병호(2011)의 국민 부담과 공공사회지출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적정’의 의미를 OECD 선진 국가들의 거의 평균적인 추세가 후발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적절하다는 의미에서의 ‘적정’을 사용하고 있다. 안종범(2010)은 복지지출과 조세부

담의 걱정 조합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복지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조세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의 걱정 복지지출수준 제시하고 있어, 걱정은 국민부담이 되지 않는 선으로 연구자 자의적 기준하에 책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비스 품질의 구성요인을 기준으로 한 척도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수준과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유형의 틀로 평가되고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SERVQUAL 평가<sup>7)</sup>는 많은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경일 외(2009) 연구는 <표 II-5>에서 볼 수 있듯이 SERVQUAL 5가지 척도를 보육시설의 특징에 맞게 재구성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 보육서비스의 안전성,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추가하여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안현미·박소영, 2010). 지은구 외(2013)의 연구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품질관리<sup>8)</sup>척도 개발을 위해 SERVQUAL 모델에서 제시한 품질구성요인들을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응답성, 접근성 그리고 권리성이라는 7개의 품질 영역으로 재구성,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7) SERVQUAL 평가는 Parasuraman, Zeithaml & Berry(1988)등 세 사람의 학자(PZB)에 의해 개발된 서비스 품질 측정도구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고객의 기대와 평가를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문항 척도임. 이들은 SERVQUAL에 관한 서비스 품질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차원, 즉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보증성, 공감성으로 서비스 품질을 구분하고 이들은 이와 같은 각 차원에 대한 개인의 기대된 서비스 수준과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음.

8) 서비스의 우수한 성과에 관련한 제공자의 전반적 판단이나 태도라 정의하고 있음.

표 II-5 | SERVQUAL 모델을 적용한 보육서비스 척도

변인	내용
보 육 서 비 스 의 질	유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환경 구비(최신 장비 구비)</li> <li>• 물리적 시설 구성 및 배치</li> <li>• 보육교사 태도·용모</li> <li>• 보육시설의 물리적 시설과 서비스 일치성</li> </ul>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약속 수행정도</li> <li>• 문제 발생시 보육시설의 적극적 태도</li> <li>• 보육 서비스 기획과 실제 서비스 제공간 일치성</li> <li>• 보육내용의 정확한 기록</li> <li>• 아동 및 학부모의 시설에 대한 신뢰성</li> </ul>
	응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서비스 실시에 대한 정보공개여부</li> <li>• 보육교사의 신속한 서비스 응대여부</li> <li>• 보육교사의 조력자로서 역할 여부</li> <li>• 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부</li> <li>• 보육서비스의 개별성 여부</li> </ul>
	확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의 높은 신뢰성</li> <li>• 보육교사와의 안전감 있는 소통과 서비스 공급</li> <li>• 보육교사의 정중한 매너</li> <li>•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지원 가능</li> </ul>
	공감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의 아동에 대한 욕구파악 여부</li> <li>• 보육교사의 아동 이익(육구, 서비스)에 대한 관심여부</li> <li>• 보육교사의 모든 아동들에 대한 보육시간의 편리성 고려여부</li> </ul>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등의 재교육 참여기회</li> <li>• 신규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오리엔테이션 실시여부</li> <li>• 현 시설에서의 보육교사 3년 이상 경력자 비율이 전체 교사의 1/3이상</li> <li>• 연간, 월간, 보육계획안의 계절, 영유아의 연령, 흥미를 고려하여 수립</li> <li>• 대집단 활동과 소집단 및 개별활동, 정적 활동과 동적 활동의 균형 있는 계획</li> <li>•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적절하게 반응</li> <li>• 보육교사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사용</li> <li>• 보육교사는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li> <li>• 보육교사는 영유아 간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개입,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li> </ul>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외시설·설비가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정기 안전점검 실시</li> <li>• 실내시설·설비가 안전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적절히 개보수</li> <li>• 보육실의 설비와 놀잇감 위험요소가 없으며 안전과 파손 여부를 매일 점검</li> <li>• 약품이나 교사용 가위, 세척제 등의 위험한 물건 안전관리 철저</li> <li>• 보육교사는 영유아들에 대한 예측불허 상황 주시</li> <li>• 영유아의 인계과정의 규칙준수</li> <li>• 영유아의 등하원용 차량 안전설비와 안전성</li> </ul>

변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영유아는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여부와 부모 공지</li> <li>• 비상재해대피시설 설비와 안전성 확보, 대처방안 마련됨</li> <li>• 종사자와 영유아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실시(소방훈련 월 1회 이상)</li> </ul>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 공간의 영유아의 연령, 발달특성을 고려한 배치 적절성</li> <li>• 영유아가 혼자 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과 안전성</li> <li>• 자료, 비품, 활동 자료 보관과 정리 체계적</li> </ul>

출처: 박경일 외(2009)

앞서 언급한 ‘최저’, ‘적정’, ‘표준’ 각각의 접근이외에도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2013)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등을 포괄하는 ‘사회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회권의 보장정도에 따라 최저기준과 적정기준별로 다르게 적용, 함께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최저기준’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이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비용’에 기반하고 있다. ‘적정기준’은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적정기준은 앞서 언급한 기존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총 복지대상(시민)의 정규분포상 일정 가이드라인, 즉 양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념정의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표준’은 국가수준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서비스 내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의 만 0-5세 영·유아들에게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보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표준’의 의미를 영유아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제법령, 시행령, 규칙과 사회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 또는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일정정도 이상, 즉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이승희·박지은, 2006; 김현숙·서병선, 2008). 다시 말해, 현실적인 비용 또는 기준이 되는, 즉 법적 등의 기준에 의한 서비스(비용) 총량, 또는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을 의미한다.

‘최저’기준은 그 수위가 국가마다 내용마다 매우 상이한데 ECEC에서 보육서비스

에 대한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은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또는 운영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영유아의 발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OECD, 2012:33). 하지만 적절한 최소기준은 모든 기관에 적용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안전, 공간, 직원 대비 아동 비율, 직원의 자격 등을 포함한 국가규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공평한 조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OECD, 2012:79). 반면,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연구에서 ‘최저’기준은 당사자들로부터 기대(요구)되는 혹은 이해 당사자들이 수용할만한 성과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적(prescriptive)이기보다는 다소 일반적(general)인 특성(nature)을 의미하기도 한다(Mattson, 1992:29-60; 김통섭 외, 2006 재인용). 그리고 일본의 경우 국가의 지침이 ‘최저기준’임을 명시하기도 한다. 즉, 절대적 개념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기대(요구) 혹은 필요로 하는 최저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가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적정’개념은 목적 지향적, 방향성 등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의 입지적정성을 목적으로 적정성은 보육수요, 이용편리성, 환경쾌적성, 안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의미한다(서원석 외, 2009). 또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품질관리<sup>9)</sup>척도를 SERVQUAL 모델의 품질구성요인, 즉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확신성, 응답성, 접근성 그리고 권리성이라는 7개의 품질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즉, ‘적정’은 상대적 개념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 또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중위의 일정 수준(상, 중, 하)을 의미한다. 반면, 공급자 입장에서의 적정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위의 세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기보다는 그 수위에 따라, 국가 특성에 따라 중첩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육이 목적하는 아동발달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적정보육서비스’개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sup>10)</sup>

9) 서비스의 우수한 성과에 관련한 제공자의 전반적 판단이나 태도라 정의하고 있음

10)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착수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음



Ⅱ 표 Ⅱ-6 Ⅰ 개념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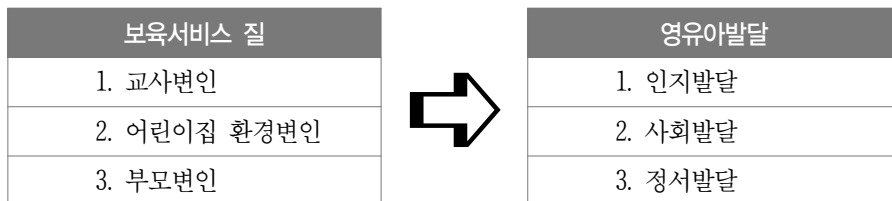
표준	적정	최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등의 제도적 기준에 의한 기준</li> <li>•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 그 내용과 수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지향적 개념</li> <li>• 시민의 일정 삶(주거와 소비 생활 등)을 유지하고 교육, 돌봄,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민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적 개념</li> <li>• 당사자들로부터 기대(요구) 혹은 필요로 하는 최저 수준</li> <li>• 기관 인가 등의 공통의 최저 통과 기준</li> </ul>

### 제 3절 보육서비스 질의 영향요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육의 질은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언어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Helburn & Howes, 1996: 62), 보육서비스의 질은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보호와 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의미한다(이은주·양성은, 2012). 박찬옥 외(2007)도 질 높은 보육교육을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에 더하여 영유아와 그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가족지원 및 가정-기관 연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OECD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사업에 있어 질 제고를 위한 핵심 주제로 ‘보육교육 서비스’ 질에 대한 목표와 규칙 설정, ‘교과과정과 학습기준 설계 및 실행’, ‘교사 자격기준 향상’, ‘교육 및 근무여건 개선’,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자료 수집, 연구 및 모니터링’등으로 5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3: 15).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사변인, 어린이집 환경 변인, 부모관련변인 등으로(이경선, 2000; 박찬옥외, 2013)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변인과 변인간 유기적 관계, 예를 들면 유아의 신체적 활동에 있어 물리적 공간, 즉 쉬는

시간 활용 가능한 놀이공간, 보육교사의 격려, 쉬는 시간 활동촉진 방법 등이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침으로서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다(Greet et al., 2008: 5).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구,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집단의 크기, 교사대 영유아의 비율, 적절한 실내외 공간, 보육 및 발달에 관한 관계자의 교육 및 훈련 등이 보육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Scarr, Eisenberg & Derter-Deckard, 1994)으로 상호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1. 보육교사 변인

보육서비스 질에 주요한 요소로 아동 및 부모 관련 변인보다 보육교사 변인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등과 같은 구조적 측면이외에도 보육교사 개인의 태도까지 다양한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OECD(2012, 2013)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이직률, 전문성을 위한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이 같은 비금전적 혜택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경선(2000)은 교사의 전공분야, 학력, 경력, 직무만족도, 발달 및 보육 관련지식, 민감성, 보육 태도 등 다양한 변인이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사의 경력 및 교육 관련 요인 역시 교사생활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이미정 외, 2011). 특히,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중요성은 많은 연구 등을 통해서 제시되었다(이연승·조미나, 2005; Helburn & Howes, 1996).

그리고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은 보육교사 전문성 발휘 및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이는 결국 보육서비스 질에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표갑수·백선희, 1999; Howes, Phillips & Whitebook, 1992: 450). 특히, 집단 크기가 작을수록 영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높으며, 긍정적인 발달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owes 외, 1985; 이미화외, 2013 재인용).

이외에도,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즉 근무시간, 보수, 휴가, 상벌 등 근로조건과 복무규정 고지, 보수교육 등이 보육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희

정 외, 2012; 이순애 외, 2012). 특히, 시설유형별로 차이나는 평균 근무시간은 보육 교사 이직요인으로 작용하며,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이은주·양성은, 2012). 따라서 최효정·석은조(2013)는 영유아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2. 어린이집 환경 변인

어린이집 환경 변인으로는 보육과정 및 프로그램(김인, 2004; 한유미·권정윤, 2005; 최경애, 2004), 물리적 환경, 영양 및 위생 등의 중요성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질의 보육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습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적절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 등 교육의 내용, 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김인(2004:158)은 보육과정을 교육운영 및 평가로 보고 하위영역으로 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계획수준은 교육계획안 수립 및 운영의 충실성 정도, 교육활동 구성의 균형성 정도를 통해 측정하였고, 교육과정 운영수준은 아동 참여 유도 정도, 대화시 아동의 발달수준 고려정도, 아동의 질문과 요구에의 반응성, 긍정적 지도 정도,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른 교육정도, 협동성 육성정도, 교재와 교구의 다양성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보육과정과 프로그램 평가는 연령별, 보육시설 유형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육의 특성, 영아의 연령, 학부모 및 교사의 요구,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실정 등을 반영하여 발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한다(함기남, 2007). 이뿐 아니라 부모와 가정,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은 프로그램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장명림 외, 2009).

다음으로 물리적 환경으로 영유아 발달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보육환경 구성

또한 매우 중요한데(최은아, 2007), 최선화·고순생(2009)은 보육현장에서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영역 배치 등의 환경 구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미화 외, 2013, 재인용). 영유아의 발달 특성상 주변 환경 인식에 대한 인식과정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아동이 활동하는 공간은 영유아 보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최목화 외 역, 2009).

이러한 물리적 환경 이외에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상호작용과 같은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유희정, 1998; 정옥분, 2004: 135), 균형잡힌 식사와 간식제공, 연령에 맞는 영양요구량 및 제공뿐 아니라 위생적인 급간식과 관리 등도 서비스 질에 주요한 영향 요인이다(한유미·권정윤, 2005; 최경애, 2004; 정옥분 외, 2004).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적합성, 통합, 균형, 연속성과 융통성, 안전성의 구성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White & Coleman, 2000).

### 3. 부모변인

보육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의 총소득, 부모교육의 참여도, 부모의 최종학력 등과 같은 부모변인을 꼽고 있다(Scarr, Eisenberg & Deater-Deckard, 1994; Dunn, Beach & Kontos, 1994). 이와 달리 부모 태도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연구도 있는데 이경선(2000)은 부모교육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3, 4세 아동의 부모가 많은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세 이상의 부모에게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충분히 이전 육아 경험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정보와 교육이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교사 간의 협력(partnerships)관계, 즉 부모와 교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조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정계숙, 2011), 이러한 가정연계효능감은 보육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정, 2012). 특히, Nishikawa(2011)는 보육 및 돌봄 노동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 및 그의 가족 사이

에 돌봄 상황에 대해 공유가 잘 될수록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는 두 요인 간의 연구 가설을 입증하였다. 돌봄에 대한 상황공유가 돌봄노동자(교사)에 대한 돌봄관리자(부모)의 신뢰로 이어졌고, 그것은 돌봄의 양(서비스 제공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 된 결과이기도 하고, 부모만의 중요성 보다는 양육자의 태도가 중요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 III

## 국내·외 보육서비스 기준(standards) 분석 및 시사점

- 제 1절 한국 보육서비스 기준 및 근거
- 제 2절 아일랜드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제 3절 스웨덴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제 4절 호주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제 5절 일본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제 6절 소결 및 '적정'보육서비스 틀





# III

## 국내·외 보육서비스 기준(standards) 분석 및 시사점

### 제 1절 한국 보육서비스 기준 및 근거

한국 보육서비스 기준의 근거는 먼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법,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한 보육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주로 어린이집 운영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달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의 경우 근거가 없어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준하지만 구체적인 세부기준안이 없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법간 상충하는 경우 모법에 따라 적용됨으로써 현장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예: 영유아보육법과 소방법 등)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을 1차적 준거로 하지만 세부기준안이 없는 경우 평가인증에서의 기준을 마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영유아보육법 이외에 세부기준안이 불명확한 경우 평가인증 기준을 준거로 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의 재무회계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분류되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재정구조, 운영규모, 보조금 지원 형태 및 부모자부담 등의 구조가 상이하여 회계처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달리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과 운영체계가 또한 상이하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단가와 지역아동센터의 단가,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등의 단가구조가 상이하여 회계원칙은 동일하지만 집행하는 구조가 상이하다.

구체적으로 보육서비스 기준과 근거를 살펴보고 보육서비스 적정기준안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1. 보육서비스 법적 기준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보육서비스 기준에 관한 세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 2 놀이터 설치, 15조의 3 비상재해대비시설,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제23조, 제23조 2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제25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제25조의 2 부모 모니터링단, 제26조의 2 취약보육 및 일시보육서비스, 제29조 보육과정, 제30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31조~제33조의2 건강·영양·안전, 제41조 지도와 명령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1>에서 볼 수 있다.

표 III-1 한국 보육서비스의 법적 근거

구분	법적근거	내용
설립 기준 및 설립 주체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동법령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준수 :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면적: 4.29㎡ 이상(놀이터제외)</li> </ul>
		필수시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 및 해당 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층에 설치</li> <li>• 영유아 1명당 2.64㎡ 이상</li> <li>• 침구, 놀이기구 및 필요한 교재·교구 구비</li> <li>• 바닥난방시설</li> </ul>
		조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창정환 실내 환경·방충망 설치</li> <li>• 식기 소독,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li> </ul>
		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미끄럼방지 장치</li> <li>• 샤워실비, 세면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li> <li>•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li> </ul>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 미끄럼 방지장치</li> <li>•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온도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li> </ul>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시설: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 옥외놀이터: 모래밭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3종 이상 설치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li> <li>• 옥내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li> <li>•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간격을 최소 1.5m 이상으로 설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 치수는 80mm 이하로 하여야 함</li> </ul> </li> </ul>



구분		법적근거	내용
			<p>필수시설</p> <p>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의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li> <li>• 간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제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함</li> </ul>
			<p>급배수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li> <li>•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li> </ul>
			<p>비상제해 대비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용 기구, 비상구 설치 등 비상제해대비시설 법적기준 준수</li> <li>•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 대피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11)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li> <li>•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함</li> </ul>
보육 과정 운영	환경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 기준) 동법령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원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함</li> <li>• 표준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li> </ul>
	보육 과정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동법령 시행규칙 제30조 별표8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함</li> <li>•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li> </ul>
	총사자 자격 및 임면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 의 임면 등)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 의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	
운영 관리	영유아 관리	영유아보육법 제2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이용대상은 만0~5세의 취학전 아동이 원칙</li> <li>• 어린이집은 가능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li> </ul>

구분	법적근거	내용
안전 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li> <li>• 소방계획을 작성, 매월 소방훈련 실시</li> <li>• 「아동복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보육종사자에게도 실시)</li> <li>•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구비</li> </ul>
건강· ·음식· 위생 관리	<p>&lt;건강&gt;</p> <p>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p> <p>동법령 시행규칙 제33조(건강진단)</p> <p>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여부의 확인)</p> <p>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p> <p>&lt;음식&gt;</p> <p>영유아보육법 제33조(음식관리)</p> <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음식관리)</p> <p>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p> <p>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p> <p>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p> <p>&lt;위생&gt;</p> <p>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실시</li> <li>•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li> <li>•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취함</li> <li>•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제공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 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li> <li>•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li> <li>•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 조리사를 배치</li> <li>• 농수산물이거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li> <li>•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li> <li>• 음용수 관리</li> <li>• 동물관리: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통지,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 세안</li> <li>• 실내공기질관리: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일 경우</li> </ul>

구분	법적근거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1항의10의2호(적용대상)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일반 (보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 아동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어린이집은 배상보험,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li> <li>• 차량운행시 자동차보험에 가입</li> <li>• 어린이집 종사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li> </ul>
지도 점검	영유아보육법 제41(지도와 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2조(보고와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li> <li>•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li> </ul>
평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li> <li>•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실시함</li> </ul>
	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li> </ul>
재무 회계 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도 규정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li> </ul>

1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권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3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할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dB 이하로서 공동주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dB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3. 기타 사업계획확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 2. 평가를 목적으로 한 보육서비스 기준

### 1) 중앙정부의 평가인증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한 6개 영역 70개 항목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으며, 39인 이하 시설에 대하여는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 5개 영역 55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지표가 따로 있는데,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의 6개 영역 7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환경,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보육인력 및 보육지원 환경, 가족들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조, 교사의 상호작용, 교수법,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 실내외 시설의 안전, 영유아의 안전 보호 등에 대해서는 분석 및 함의점을 제시하지만,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과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과정에 준하여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범주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표 Ⅲ-2 | 평가인증 지표 구성(40인 이상)

영역		항목
영역1. 보육환경	어린이집 환경	보육실의 공간 배치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
	보육활동 자료	신체활동 자료 언어활동 자료 자연탐구활동 자료 예술활동자료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



영역		항목
	보육지원 환경	비품과 활동자료의 보관 보육교사를 위한 공간 보육교사용 참고자료
영역2. 운영관리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어린이집의 운영방침 및 정보 안내 원아에 대한 관리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보육인력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 보육교직원의 교육 원장,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가족들과의 협력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어린이집에서의 부모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지역사회와의 협조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영역3.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계획안의 수립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자유선택활동 시간과 운영 실외활동 시간과 운영 일과의 통합적 운영 일상생활 관련 활동 보육과정 평가 및 영유아 활동 관찰
	보육활동	신체활동 언어활동 기본생활 관련 활동 사회관계 증진 활동 자연탐구활동 예술활동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영역4. 상호작용과 교수법	일상적 양육	즐거운 식사(수유)와 간식 편안한 분위기의 낮잠 자연스러운 배변 경험
	교사의 상호작용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대한 민감한 반응 긍정적인 방법의 행동지도 또래 간 긍정적 상호작용의 격려 자유놀이에 교사 참여 영유아 간의 다툼이나 문제 상황 개입

영역		항목
	교수법	교수법의 효과적인 사용 동기유발과 호기심의 장려
영역5. 건강과 영양	청결과 위생	살내 공간의 청결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놀잇감의 청결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개별 침구의 사용과 관리
	질병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급식과 간식	영유아를 위한 급식 영유아를 위한 간식
영역6. 안전	실내외 시설의 안전	보육실의 안전관리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실외시설의 안전관리 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영유아의 안전 보호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비상사태를 대비한 시설 및 설비와 대처방안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 2) 아동복지시설 평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3)<sup>12)</sup>에서 제시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영역을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어린이집 평가기준인 평가인증과 달리,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시설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 관련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에 있어서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

12) 이는 김통원 외(2006). 사회복지시설서비스 최소기준개발과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2010). 사회복지시설유형별 최소기준(안)과 대동소이함

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대한 평가가 구체화되어 처우나 근무환경, 고충 및 갈등 등의 문제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앞서 제시하였던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보육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경선, 2000; 이은주·양성은, 2012; 최효정·석은조, 2013)를 통해서도 이 지표 또한 포괄할 필요가 있다.

표 Ⅲ-3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영역	아동지표
1. 시설 및 환경	시설구조, 외관 및 주차장 생활공간의 개별성 및 적절성 편의시설의 적절성 위생상태의 적절성 안전관리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상담실 및 사무실
2. 재정 및 조직운영	보조금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보조금 대비 사업비 비율 보조금 대비 후원금 비율 기관의 미션과 비전 사업(운영) 계획의 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및 활동 법인이사회 비품관리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관찰일지 입·퇴소 관련 기록
3. 인적자원관리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 충원율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직원의 이(퇴)직률 직원 교육 활동비 직원의 외부교육참여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직무분담의 적절성 직원인사평가

영역	아동지표
	직원교육 신입직원교육 직원복지 직원의 고충처리 프로그램 기획회의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직원 및 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초기적응 프로그램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자립지원(취업지도)프로그램, 퇴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욕구조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아동상담, 가족·연고자 상담 사례관리 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실시, 질적수준 성교육 프로그램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5. 아동의 권리	아동의 비밀보장 아동의 고충처리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 음식제공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 건강검진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자치활동 보장 체벌금지
6. 지역사회관계	자원봉사자의 활용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관리 실습교육 후원금(품) 사용 및 관리 지역사회 연계, 홍보

### 3. 보육·교육서비스 비용 산출에 근거한 표준보육서비스

우리나라 보육과 교육 지원 서비스의 기준인 비용중심의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는 서비스 기준에 대한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용 산출에 의한 표준보육교육서비스는 실질적인 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으로서 서비스 총량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 1)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이란 공식적인 보육시설을 통해 만 0~5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일정기준으로 보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김현숙·서병선(2008)의 연구에 따르면 표준보육비용에서 ‘표준’은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현실적 비용을 감안하고, 영유아 보육법령의 준수와 사회기준 충족,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사회가 합의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혜금(2010)은 현 시점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현실적인 비용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의 구성내용은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5개 항목이며<sup>13)</sup>, 시간유형별(종일제, 연장제), 시설종류별(국공립, 민간, 가정 등), 지역별, 아동특성별(장애아) 등 다양한 경우의 표준보육비용을 고려,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비용은 단일 규모(97인)의 연령별 표준보육비용만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표준보육비용은 서비스 수준을 아래 <표 III-4>와 같이 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설 규모별로 각각 산정되며 현실적인 비용투입수준을 고려하는 1안(국공립 보육시설 수준)과 현재보다 질적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수준인 2안(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김현숙·서병선, 2008).

13) 정부의 1999년 표준보육단가는, 2005, 2008년 표준보육비용 산정을 위한 항목 구성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 5개 항목(\* 99년에는 시설관리운영비로 4개 항목)은 공통이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산정은 하였지만 표준보육비용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음

【 표 III-4 】 2009년 표준보육비용 산출 기준

구성항목	'09년 표준보육비용
종사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 6호봉 1,518,530원</li> <li>• 시설장 : 13호봉 2,305,830원</li> <li>• 취사원 : 3호봉 1,155,030원</li> <li>• 영양사, 간호사(100인 이상시설, 시설당 1/5)</li> </ul>
교재교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교실설비와 관련된 설비비, 교육관련 재료비, 소모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안 : 국공립 어린이집</li> <li>- 2안 : 국공립유치원 수준</li> </ul> </li> <li>※ '05년에 비해 교구교재 항목 확충</li> </ul>
급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일제 :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구성</li> <li>월~금) 점심 및 간식 2회</li> <li>토) 점심 및 간식 1회</li> <li>- 1안 : 중품 국산 재료 사용</li> <li>- 2안 : 유기농 국산 재료 사용</li> <li>※ 대형마트 및 도매시장 가격참조</li> </ul>
관리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수용경비</li> <li>- 1안) 보육시설 서베이 결과자료 반영</li> <li>- 2안) 08년 유치원 시설설치비 자료 사용</li> <li>※ 관리운영비 총액을 아동수로 나누어 산출</li> </ul>
시설설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 설치비</li> <li>• 건축비</li> <li>최소) 영유아수 × 4.29/3.3㎡ × 250만원/30년</li> <li>최대) 영유아수 × 4.29/3.3㎡ × 350만원/30년</li> <li>• 건물수선 유지비 : 2005년 계산에 물가상승률 반영</li> <li>• 놀이터 설치비 : 52인 이상시설, 아동1인당 2.5㎡</li> </ul>

하지만 이러한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대한 한계점은 첫째, 보육교사 평균급여 산정과 이를 포함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인건비의 과대지출이 운영비의 과소지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이집 지출체계와 투입산정 기준간 격차가 발생하는데 종사자 인건비는 위의 <표 III-4>에서 제시한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 이외 사무원, 차량기사 등의 추가 인력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출은 실제 표준보육비용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혜금, 2010).<sup>14)</sup> 둘째,

14) 김혜금(2010)은 2009년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시 사회보험 시설부담금과 퇴직적립금 제외된 점, 낮은 인건비 책정, 시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 지적함. 또한 현장학습비 제외, 표준보육과정의 의거한 교재교구비와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재교구 및

관리운영비의 경우 규모를 고려 하지 않는 점과 시설설치비를 운영비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유희정 외, 2006).

이렇게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급간식비의 경우 1인당 1745원 보다는 연령별로 영영아, 영아, 유아로 나누고 열량은 영아의 경우 칼로리 계산이 어려워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와 이유식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구분하고, 영아는 하루 필요량(영양학회 권장사항) 1,000칼로리, 유아는 1,400칼로리를 기준으로 주식 1회, 부식(간식) 2회로 나누어 산정한다는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른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안현미, 2012 미발간).

표 III-5 서울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가이드라인 산출 기준

급간식비 가이드라인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 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중기이유식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산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로리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400 kcal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과 활동량을 고려하여 전체의 50% 제공.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하루동안 필요한 700kcal를 기준으로 +50 kcal, -50kcal의 범위내에서 제공</li> <li>• 식단구성시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밥은 잡곡을 기준으로 함</li> <li>② 국과 반찬 식단의 구성은 첫째, 단백질 1회/1일, 둘째, 반찬은 칼슘 1~2회/주, 셋째, 야채찬은 제철기준으로 매일, 김치, 매일로 구성</li> <li>③ 간식 중 오전간식은 과일, 유산균, 우유 중 선택 하여 구성</li> </o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식단</th> <th>기준</th> <th>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점심</td> <td>밥</td> <td>잡곡</td> <td>매일</td> </tr> <tr> <td>국 &amp; 반찬</td> <td>단백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td> <td>매일(국이 동물성단백질 기준이면 주반찬은 식물성단백질로 구성)</td> </tr> <tr> <td>반찬</td> <td>칼슘</td> <td>주 1-2회</td> </tr> </tbody> </table>	식단		기준	횟수	점심	밥	잡곡	매일	국 & 반찬	단백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	매일(국이 동물성단백질 기준이면 주반찬은 식물성단백질로 구성)	반찬	칼슘	주 1-2회
	식단		기준	횟수											
점심	밥	잡곡	매일												
	국 & 반찬	단백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	매일(국이 동물성단백질 기준이면 주반찬은 식물성단백질로 구성)												
	반찬	칼슘	주 1-2회												

소모품 별도 구비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식단		기준	횟수
	야채찬	제철기준	매일
	김치		매일
간식 2회	오전, 오후 간식	과일	주2-3회
		유산균	주2-3회
		우유	매일 200ml

출처: 안현미(2012) 미발간

## 2) 표준유아교육비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병설 공립 유치원 이외에 사립 유치원의 경우 전체예산 중 유아학비가 76.7%, 인건비가 11.4%, 운영비 등 기타항목이 1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원아 1인당 연간 공립은 9,252천원(월 771,000원), 사립 2,681천원(월 223,416원) 으로 공립이 사립보다 3.45배로 격차가 크다(문무경 외, 2012).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시 적용기준은 유아연령, 학급규모, 유치원 규모, 운영시간 등이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기준이 없어 문무경 외(2012)는 사립 유치원을 기준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국 700여개 사립 유치원 표본을 대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하여 표준교육비 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항목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활동경비, 수익자부담경비, 시설비를 표준유아교육비 구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익자 부담경비의 경우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준의 의미는 선택에 의한 비용보다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서비스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유치원(공립, 사립 모두 포함)의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을 한 우명숙 외(2012) 연구는 표준 학급 수, 표준 원아 수, 표준 교직원 수를 연령별 학급 수에 따라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표준인건비, 학교운영비, 표준교육활동경비, 공동운영경비로 구성하고 각각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한 비용을 제시하였다.



**Ⅲ 표 Ⅲ-6 Ⅲ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안)**

구성항목		표준유아교육비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전제	표준 학급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당 표준 학급의 규모를 1학급부터 10학급까지 분류하고, 유치원 학급규모별 3,4,5세반 편성기준을 정해 표준 교직원 및 표준 원아 수 산정과 표준교육비 산출의 기초자료로 이용함</li> </ul>		
	표준 원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별 학급당 원아 수는 3세 15명, 4,5세 각각 20명씩을 기준으로 표준학급 원아수 모형을 정함</li> </ul>		
	표준 교직원 수 <sup>15)</sup>	구분	배치기준	
		원장	규모에 상관없이 1명	
		원감	중규모 이상에 1명	
		교사	학급당 1명, 부장교사(주임교사)는 중규모에 1명, 대규모에 2명, 극대규모에 연령별 배치	
		학습보조	만3세 학급당 1명, 만4,5세 2학급당 1명	
행정원		대규모 이상에 1명, 중규모 이하는 시간제 배치		
청소원	대규모 이상 2명, 중규모 이하 1명			

출처: 우명숙 외(2012)

표준유아교육비는 <표 Ⅲ-7>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인건비, 표준교육활동경비, 공통운영경비로 구성하고 각각 항목별 산출기초에 의해 산출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Ⅲ 표 Ⅲ-7 Ⅲ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기준(안)**

구성항목	개념	산출방법
표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원과 직원의 인건비에 소요되는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인건비는 교원과 직원의 기본급, 제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법정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산정</li> </ul>
표준교육 활동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 교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명시된 모든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설비와 재료를 구입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구·설비비: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교재 및 교구로서 보통 유치원의 비품으로 1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지닌 물품이고 이를 구매·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학교, 학급, 학생단위로 구분)</li> </ul>

15) 시,도교육청의 교직원 배치기준(우명숙 외, 2012)과 기존 연구(김은영 외,2011)의 유치원 인력배치 기준을 참고하여 표준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력배치기준을 제시함. 소규모는 60인 미만, 중규모는 60~12인 미만, 대규모는 120~180인 미만, 극대규모는 180명 이상 등을 의미함

구성항목	개념	산출방법	
		공립 <sup>16)</sup>	사립
표준공동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이라는 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유치원 고유의 목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비</li> </ul>	인적자원 운용비, 학생복지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일반운영비	보조인력인건비,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재무활동비, 학생복지비

출처: 우명숙 외(2012)

결국, 표준보육비용, 표준유아교육비는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이 상이하지만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항목은 인건비, 교육활동경비, 운영비 등으로 공통적이다. 하지만 동일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1인당 단위면적, 급간식비, 교재교구 등의 차별적 구성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유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아동별 적정보육서비스 공통 기준과 그에 따른 서비스 내용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기관의 특성에 따른 운영비 등을 유형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16)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함

## 제 2절 아일랜드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아일랜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서비스는 20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목적, 기준 및 구체적인 준거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성은 정보, 계약, 부모 또는 보호자와 협의 사항, 기록, 조직 및 관리, 평가, 불만, 양육, 놀이 그리고 학습, 양육 및 복지, 행동, 어린이 보호, 건강관리, 급·간식 위생 및 관리, 수면(Sleeping), 장애아동, 동등한 기회, 안전, 교재교구 등의 안전성 및 적절성, 물리적 환경(시설), 건축 부지 및 시설 건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I-8】 아일랜드 국가수준의 보육서비스 목적 및 기준

구분	목적	기준
정보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본인이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정보 내용</li> <li>• 보육시설이 지향하는 서비스의 목표와 그 기능에 대한 안내문</li> <li>• 주요 정책과 서비스의 절차</li> <li>• 아동: 보살필 수 있는 아동의 숫자와 연령</li> <li>• 성인: 아동과 성인 사이의 적절한 비율, 이용가능시간, 비용, 개방하는 시설, 일과</li> <li>• 각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맞춰주는 방법</li> <li>• 직원의 숫자와 직원 자격과 같은 관리 체계의 세부 사항</li> <li>• 아이들을 위해 제공하는 활동의 세부 사항</li> <li>• 어린이집과 부모 또는 보호자간에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의 세부 사항</li> <li>• 각 자녀에 대한 세부 기록 사항</li> <li>• 보육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 처리 방식</li> <li>• 국립 육아 표준서</li> <li>• 그 외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외 정보</li> </ul>
계약	부모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합의된 서면 계약을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 계약은 다음을 포함</li> <li>• 아이를 인솔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li> <li>• 아이가 아플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한 처리방법</li> <li>• 응급상황 발생시 처리방법</li> <li>• 아이에게 약을 투여할 때 처리 방법</li> <li>• 음식 알레르기와 같이 아이마다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li> </ul>

구분	목적	기준				
		<p>(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운영시간 (문 여는 시간, 닫는 시간)</li> <li>• 재정문제 (보증금, 비용, 비용 지불 연체비)와 관련된 재정문제 세부사항</li> <li>• 휴무 일정</li> <li>• 정보 자료로써 보육시설 정책 및 운영과정에 대한 부모/보호자 동의서</li> </ul>				
부모 또는 보호자와 협의 사항	<p>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 발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는다. 어린이가 참가하는 활동, 성과, 발달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함께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좋은 협력 관계 형성 및 유지, 참여독려, 부모의 주요 책임 존중</li> <li>• 아이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이는 하루 동안 아이의 활동, 아이의 행동변화나 특이점에 대해 부모에게 설명</li> <li>• 해당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별 아동양육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어려움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모 또는 보호자와 상의</li> <li>• 어린이와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기밀 유지(아동 보호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li> <li>•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이 종교 활동 및 관련 행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를 존중.</li> <li>• 부모나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에 언제든지 방문가능함(실천 가능한 곳에 해당)</li> </ul>				
기록	<p>서비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록과 각 아동의 출석기록을 포함한 기록사항은 규제를 바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학 전 세부사항</li> <li>• 서비스 관련 서면기록 보관</li> <li>• 부모열람 가능</li> <li>• 데이터보호법 규정에 따라 유지 및 관리(개별기록 보안 유지)</li> <li>• 사고 및 부상을 기록하고 빨리 보호자에게 통지(사전 합의 서류 서명 등)</li> <li>• 건강관리 서류 업데이트</li> </ul>				
조직 및 관리	<p>부모 또는 보호자와 어린이는 잘 조직되고 계획한 서비스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과 같은 기록을 포함 하여 관리</li> <li>• 18 세 이상 신분 증명서</li> <li>• 범죄 경력 조회서, 필요에 따라 국제 신분증명서</li> <li>• 추천서 2부(추천서1부는 가장 최근 근무지에서 받는다.)</li> <li>• 자격 증명서</li> <li>• 경력 공백에 대한 조사</li> <li>▶ 아이들을 돌보는 직원 중 최소 50%는 미취학 아동 보육과 발달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 외 직원들은 동의한 시간 내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li> <li>▶ 교사대 아동비율 <table border="1" data-bbox="573 1595 1170 1667"> <thead> <tr> <th data-bbox="573 1595 872 1624">아동 나이의 범위</th> <th data-bbox="875 1595 1170 1624">아동 대 성인의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573 1628 872 1667">0-1 세</td> <td data-bbox="875 1628 1170 1667">1:3</td> </tr> </tbody> </table> </li> </ul>	아동 나이의 범위	아동 대 성인의 비율	0-1 세	1:3
아동 나이의 범위	아동 대 성인의 비율					
0-1 세	1:3					

구분	목적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아동 나이의 범위</th> <th>아동 대 성인의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1-2세</td> <td>1:5</td> </tr> <tr> <td>2-3세</td> <td>1:6</td> </tr> <tr> <td>3-6세</td> <td>1:8</td> </tr> </tbody> </table>	아동 나이의 범위	아동 대 성인의 비율	1-2세	1:5	2-3세	1:6	3-6세	1:8	
아동 나이의 범위	아동 대 성인의 비율										
1-2세	1:5										
2-3세	1:6										
3-6세	1:8										
평가	<p>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재검토 하고 평가를 통해 어린이들이 얻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 시켜 나갈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li> <li>평가내용으로 어린이, 직원, 학부모/보호자, 관리운영 및 지역 사회를 연계 등을 포함함</li> </ul>									
불만	<p>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불만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 불만에 대해 보육 시설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가 자신의 불만사항이 반영되어 수정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를 따른다.</li> <li>• 불만 접수 서비스는 간담 명료하게, 접근하기 쉽도록 관리. 처리 형태는 서면 기재의 형태.</li> <li>• 접수된 불만이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되는 지 해당 학부모/ 보호자에게 공지.</li> <li>• 모든 불만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가능하면 그 기밀보장. 기밀 정보제공자의 사생활 보장</li> <li>• 불만이 접수 된 후 그 결과로써 어떤 아동도 벌칙을 받아서는 안되며 그 불만과 관련된 사항에 벌칙을 부과해서는 안됨.</li> <li>▶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모든 불만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 관리.</li> <li>• 서비스 신청인의 이름, 불만의 성격, 불만 접수 일자 및 시간, 조사 기록, 조사 결과, 조사 이후 불만을 접수한 이에게 제공한 정보</li> </ul>									
양육, 놀이 그리고 학습	<p>아이들은 학습과 행복감을 자극하는 있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접할 수 있다. 더불어 전체 아동 관점(the Whole Child Perspective)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전체아동 관점이란 어린이를 가운데 두고 각 어린이 발달 상황에 대해 어린이가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을 일컫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서비스는 아이들의 개별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그들의 복지와 행복을 추진함. 실내와 실외 활동 및 놀이를 통해 아이들은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지적, 언어와 창조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음.</li> <li>• 어린이가 전 영역에 걸친 놀이, 학습,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보육시설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장난감과 놀이 교구를 사용하고 이에 걸맞는 활동을 실시함.</li> <li>- 아동 발달단계에 고려, 공평한 기회 제공, 문화적 인식 고려한 활동과 놀이 구성</li> <li>• 아이들은 환경을 통해 독립심, 자신감, 자아 존중감 향상 가능.</li> <li>▶ 아동과 학부모/보호자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 노력</li> <li>• 아동 가정환경 파악</li> </ul>									

구분	목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은 아동의 말, 행동 집중과 관심</li> <li>• 아동의 모든 가능성 탐색 가능하도록 격려</li> <li>• 직원은 아동이 무엇을 하는 지 관찰 및 기록 → 어떤 놀이와 학습, 발달 상태를 어떻게 구성할 지 자료로 활용</li> <li>•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함. 보육프로그램에 반영</li> <li>▶ 자원(Resources)를 체계화: 직원은 어린이의 놀이와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적절한 곳에 배치. 어린이는 실내/실외에서 활동할지, 아동의 상황에 따라 휴식을 취할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li> <li>▶ 계획된 보육 프로그램은 유연하게 운영.</li> </ul>
양육 및 복지	각 아동은 보육 환경 내에서 보육 관리자를 통해서 안전함, 행복감, 편안함을 느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은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 결과 자아 존중감도 향상.</li> <li>▶ 직원과 아이들은 서로 신뢰하고 안정감을 느낌.</li> <li>▶ 직원은 해당 아동과 아동의 가족들을 대할 때 항상 세심하고 따뜻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li> <li>▶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듣고, 의사소통 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을 맞춤. 직원은 비언어적 신호에 적절한 반응과 태도를 취함.</li> <li>▶ 각각의 어린이는 특정 직원 마다 배정하여 관리 받음.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어린이를 담당하는 해당직원의 신원정보에 대해 고지 받음. 해당 직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아이가 즐거운 일과를 보내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더불어 아이에 관한 정보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로 공유.</li> <li>▶ 아이들의 존엄성 존중. 이는 각 아동을 개인적으로 보살피 줄 때(예: 용변, 음식 먹이기, 옷입히기) 특히 중요.</li> <li>▶ 직원은 특정 아동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을 표현하지 않음.</li> <li>▶ 직원이 아이를 달래거나 아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은 직원에게 편안한 좌석을 준비</li> </ul>
행동	아동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격려해 준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을 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은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지 행동 관리에 대한 서면 지침을 마련함. 모든 직원은 이 정책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실천해야 함.</li> <li>▶ 아동이 해당 보육시설에 등록하기 전에 보육시설은 아동의 보호자/학부모에게 행동 관리에 대한 서면지침을 알려 줌.</li> <li>▶ 육아시설은 시설 내 방 구조와 놀이 교구 및 놀이자료를 이용함. 이를 통해 아동은 보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li> <li>▶ 아동의 행동에 대해 교육할 때, 직원의 일관성, 아동의</li> </ul>

구분	목적	기준
	<p>려해준다.</p>	<p>눈높이, 아동별 수준 고려하여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로 신체 체벌 및 위협, 무안주기, 소외, 무시, 방치 등 금지</li> <li>▶ 직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결코 어떠한 형태든 신체적 중재(아동을 붙잡고 막는 등의 행동)를 할 수 없음</li> <li>▶ 아동의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록을 남김. 특정 아동이 지속적으로 또는 특정 사건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직원과 보호자/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검토함. 그리고 나서 모두가 동의하는 계획을 실시함.</li> </ul>
<p>어린이 보호</p>	<p>어린이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보육 시설 내 또는 바깥에서 어린이가 활동을 하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할 시, 이는 Children First (어린이 보호 및 건강에 대한 국가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시설 내 근무하거나 보육 시설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은 규제 8에 따라 적절한 신분 확인절차를 거침.</li> <li>▶ 보육 시설 근무자 및 아동을 돌보는 성인은 입사시 아동 보호 규정에 대한 교육(필수교육, 긴급시 연락방법 및 체계,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로서 의무 등)을 받고 충분히 숙지.</li> <li>▶ 근무자 모두는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요구하는 복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경각심 유지</li> <li>• 아동의 학대 당한 흔적 또는 그 증상</li> <li>• 지체없이 어떤 문제를 보고 하여야 하는 책임</li> <li>• 다른 근무직원이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시 직속 상사나 당일 해당 근무자에게 보고할 책임</li> <li>• 위 모든 경우에 대해 비밀유지</li> </ul> </li> </ul>
<p>건강 관리</p>	<p>보육시설은 각 아동마다 필요한 건강관리 목록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가 보육 서비스에 등록할 때, 보육시설은 해당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아동 건강관리와 관련한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은 부모/아동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행정 처리 방법이나 의학적인 대처법(서면작성)에 확인 서명 받음.</li> </ul> </li> <li>▶ 보육기관은 아프거나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아동과 직원에 관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부모/보호자는 아동이 등록할 때 이 정책에 대해 고지 받음.</li> <li>▶ 서비스 제공자가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만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자는 의사 또는 지역 보건부에 알려야 함.</li> <li>▶ 건강관리서비스는 약물 투여 절차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명확한 절차를 세워 둬. 항생제 투여, 다시 말해 체운을 낮추는 약물 투여 또한 이에 포함됨. 이 정책과 처리절차에 대해 모든 관계자는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li> </ul>

구분	목적	기준
		<p>실시해야 함. 또한 아동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육시설은 해당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중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지정된 보호자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연락함.</li> <li>▶ 의사가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지시하지 않는 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은 어린이에게 투여하지 않음.</li> <li>▶ 처방 의약품을 관리 할 때 기술적이나 다른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li> <li>▶ 모든 의약품은 아동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보관.</li> <li>▶ 전염성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직원은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 및 교육 이수.</li> <li>▶ 직원은 하루종일, 특히 주요 활동시간에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숙선수범하여 실천.</li> <li>▶ 서비스의 전염성 질병 발생시 보육시설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li> <li>▶ 아이들은 하루 일과에서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또 그 유지방법을 배움.</li> <li>▶ 보육 시설 내에 구급 상자를 구비 및 규칙적으로 관리, 구급상자는 실내용, 야외활동용 준비.</li> <li>▶ 어린이 응급 처치를 할 줄 알고 응급처리 최신 방법을 익힌 직원은 전체 직원당 최소 한 명 이상 있어야 함.</li> <li>▶ 보육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li> </ul>
급간식 위생 및 관리	<p>보육시설은 아동 인원수에 맞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한다. 음식과 음료는 영양적으로 적합하고 종교적 요구사항에 맞게 준비한다. 아동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한 상태일 때 음식을 제공하며, 식사시간은 아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은 아동이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제공. 보육시설은 해당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식탁, 의자, 식기를 사용. 유아의 경우, 안전하고 적합한 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li> <li>▶ 식사 시간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함.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음식을 빨리 먹기를 재촉하기 보다는 아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함. 아동이 음식을 먹으면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육교사는 이에 맞는 도움 제공.</li> <li>▶ 직원이 매우 영아에게 식사를 먹여줄 경우, 직원은 아이의 식사시간 동안 아이와 계속 눈을 맞추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나눔.</li> <li>▶ 음식 메뉴를 계획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메뉴에 반영함.</li> <li>▶ 부모 또는 보호자가 종교적, 문화적인 근거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이를 수용.</li> </ul>



구분	목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어린이의 음식 알레르기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부모/보호자를 통해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함.</li> <li>▶ 음식은 각 아동의 발달 상태와 연령에 맞아야 함.</li> <li>▶ 아동은 식사 시간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li> <li>▶ 식사 시간 전에 식탁을 반드시 깨끗하게 닦음.</li> <li>▶ 아동이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둠.</li> <li>▶ 주간 메뉴 계획은 아침, 오후에 반드시 간식을 먹고, 점심시간에는 아동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어야 함</li> <li>▶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건강 서비스 경영자의 환경 보건 부서 또는 기타 공공 기관 중 하나에 등록 된 업체에서 구입해야 함.</li> <li>▶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관계자는 건강관리 집행 부내 건강 환경 부(Health Services Executive's 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s)에 음식업종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함.</li> </ul>
수면 (Sleeping)	아동이 자고 싶어하거나 쉬고 싶어 할 때 이를 들어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 수면’정책을 실시함. 보육 시설은 아동마다 자고 싶어하거나, 쉬고 싶어할 경우 이를 들어줌. 아이들이 피곤하거나 정해진 수면 시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자거나 쉴 수 있음.</li> <li>▶ 아이들의 수면 공간은 일반 놀이 공간에서 떨어져 있고 수면을 취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어야 함.</li> <li>▶ 아기를 위한 수면 공간이 아기 방 안에 마련된 경우, 아기방 전체 크기는 (어린이 1 인 기준) 4.2 m<sup>2</sup>, 관찰가능한 환경, 햇빛이나 조명 등의 밝기, 온도(섭씨 16-20도) 유지 필요.</li> <li>▶ 수면 일지를 기록. 일지 작성시, 아기를 확인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서명, 확인 시간을 기록. 검사는 10 분마다</li> <li>▶ 수면 시설은 관련 지역 기관 기준에 따라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을 반드시 준수</li> </ul>
장애 아동	보육시설에 장애 아동을 돌볼 때, 해당 아동의 부모/보호자 또는 관련사람들과 협력하여 장애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향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기준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li> <li>▶ 보육시설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더 많은 활동 및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줌.</li> <li>▶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때 이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직원이 해당 아동을 담당하여 돌보아야 함.</li> <li>▶ 인력 배치 및 업무배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계획함. 이러한 조치와 업무배치는 정기적으로 검토</li> <li>▶ 물리적 환경은 장애 아동이 사용할 수 있고 아동에게 적</li> </ul>

구분	목적	기준
		<p>절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해당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위해서 다른 아동과 동일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활동 및 놀이에도 참여함.</li> <li>▶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장애아동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해당 보육시설과 상담할 수 있음.</li> <li>▶ 보육 프로그램 내용이나 장애 아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 및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li> </ul>
<p>동등한 기회</p>	<p>해당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동등한 기대와 존중을 받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 모든 종류의 차별은 적절하게 다루어짐.</li> <li>▶ 어린이는 한 개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li> <li>▶ 케어 프로그램, 책, 포스터, 장난감 및 다른 재료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사회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반영되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li> <li>• 1) 성차별주의자 또는 인종 차별주의적인 행동이나 언급, 2) 고정관념을 강화 시키는 언급이나 행동 3) 그 외에 개인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어떤 행위나 언급에 대해 이를 제기 해야 함.</li> <li>▶ 직원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li> </ul>
<p>안전</p>	<p>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를 형성해야 함.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주의사항을 지킴.</li> <li>▶ 보육시설 내에 있는 아동을 항상 관리 감독(supervise) 함.</li> <li>▶ 직원은 관련 건강 법규 및 안전 법규를 숙지함.</li> <li>▶ 보육시설 실내/실외에 확인된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한 상태로 개선</li> <li>▶ 위험평가는 주기적으로 확인함.</li> <li>▶ 건축 부지와 야외 놀이 공간은 안전해야 함. 어린이는 보육시설 구역 내에서 반드시 관리, 감독(supervise)을 받아야 함. 보육시설 구역 내 방문을 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문자 기록을 관리해야 함.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은 보육시설 구역 또는 야외활동 공간에 접근할 수 없음.</li> <li>▶ 어린이는 실내 및 실외 놀이 영역 내에서 도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배움.</li> </ul>
<p>교재교구 등의 안전성 및 적절성</p>	<p>어린이는 가구, 장비 및 장난감에 접근할 수 있다. 가구, 장비, 장난감은 아이에게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장비, 장난감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디자인, 안전 기준에 승인을 받은 상품이어야 함.</li> <li>▶ 가구 및 장비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li> <li>▶ 아이들이 함께 놀고 음식을 먹을 때, 아이들이 함께 자연</li> </ul>

구분	목적	기준
	<p>합하며, 안전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사용하고 싶어할 만한 것으로 구성한다</p>	<p>스럽게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및 연령에 맞는 식탁과 의자를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이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li> <li>▶ 아이들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의 낮은 선반에 아이 놀이 도구를 둠.</li> <li>▶ 아이들의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장소에 보관함이나 옷걸이를 둠.</li> <li>▶ 깨끗한 침구류, 수건, 여벌의 옷 등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li> </ul>
<p>물리적 환경 (시설)</p>	<p>보육 내 시설에서 아이들과 직원들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의 디자인, 시설 구조 및 물리적 환경은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건물 내에서 어린이와 성인이 위생 시설과 야외 놀이 공간에 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야 함.</li> <li>▶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은 난방을 유지. 모든 방 (수면실 제외)은 18-22℃로 난방, 온도계 설치로 확인</li> <li>▶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위생 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함. 위생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사용 방법을 훈련받은 아동 10명마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배치</li> <li>• 아이용 화장실과 세면대는 돌보는 아동 연령에 적합한 크기이거나 아동이 살짝 뛰어 닿을 수 있을 만한 높이여야 함. 개인 보호를 위해 개인 칸막이 설치.</li> <li>• 직원 8명당 화장실1개, 세면대 1개 배치</li> <li>•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 화장실 1개 (휠체어용 화장실이며 이 화장실은 직원 대상 변기 비율에 포함)</li> <li>• 기저귀를 차는 10명 아이당 1개의 기저귀 변경할 수 있는 공간 배치</li> <li>• 모든 세면대에는 냉, 온수 모두 나옴. 어린이용 세면대에 온수는 43℃ 또는 그보다 낮은 온도가 나오도록 온도를 관리.</li> <li>• 물비누와 손을 닦을 수 있는 위생 도구가 반드시 비치</li> </ul> </li> <li>▶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 주방 및 음식 저장 공간과 분리된 곳에 직원용 방/공간을 마련. 직원 휴식, 직원 회의 또는 학부모 면담할 때 이 공간을 활용.</li> </ul>
<p>건축 부지 및 시설 건축</p>	<p>설비가 위치한 건물은 건설하고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보육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시설 위치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결정. 보건 서비스 내 보육 서비스 담당자, 도시 또는 구내 육아위원회 및 국가 지원 기관은 위치 선정 선발 과정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li> <li>▶ 계획, 건축 규제, 화재 안전, 보건 및 안전 법규뿐만 아니</li> </ul>

구분	목적	기준														
	안전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에게 친밀한 시설이어야 한다.	<p>라 다른 모든 관련 법규모두 요구 사항에 맞게 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은 안전하고 시설 목적과 맞게 지어져야 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공간이 필요함.</li> <li>▶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이 보육 시설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편히 맞아 줄 수 있을 공간이어야 함.</li> <li>▶ 놀이 공간은 아동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하기에 충분해야 하고, 이동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환경 조성</li> <li>▶ 시설 운영시간 동안에는 건물 내 방이 보육 시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li> <li>▶ 건물은 수리를 하고 장식을 하여 원내 시설이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li> <li>▶ 건물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리 정돈되어 있음.</li> <li>▶ 건물은 적절한 자연 채광을 이용하고 인공 조명으로 보충하여 적절한 조도를 유지. 시설은 충분히 환기.</li> <li>▶ 실내 놀이 공간은 한 아이 당 최소 아래와 같은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ll time / Part-time services</li> </ul> <table border="1" data-bbox="569 888 1166 1072"> <thead> <tr> <th>연 령</th> <th>한 아이당 확보 공간</th> </tr> </thead> <tbody> <tr> <td>0-1</td> <td>3.50 m<sup>2</sup></td> </tr> <tr> <td>1-2</td> <td>2.80 m<sup>2</sup></td> </tr> <tr> <td>2-3</td> <td>2.35 m<sup>2</sup></td> </tr> <tr> <td>3-6</td> <td>2.30 m<sup>2</sup></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ssional services / Drop-in Centres</li> </ul> <table border="1" data-bbox="569 1120 1166 1207"> <thead> <tr> <th>연 령</th> <th>한 아이당 확보 공간</th> </tr> </thead> <tbody> <tr> <td>0-6</td> <td>2.00 m<sup>2</sup></td> </tr> </tbody> </table> <p>각 연령 그룹에 대한 공간 요구 사항은 어린이 1 인당 바닥 면적(주방, 화장실, 수면실, 그 외 외부 지역 제외)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장소에 아이들이 오랫동안 밀집해 있지 않도록 한다. 이 조항은 콘서트, 파티, 테이블 탑 운동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함께 참가하는 활동은 예외이다.</li> <li>▶ 어린이는 야외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보육 시설 자체의 야외 놀이 공간은 안전과 보안을 잘 유지해야 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li> </ul>	연 령	한 아이당 확보 공간	0-1	3.50 m <sup>2</sup>	1-2	2.80 m <sup>2</sup>	2-3	2.35 m <sup>2</sup>	3-6	2.30 m <sup>2</sup>	연 령	한 아이당 확보 공간	0-6	2.00 m <sup>2</sup>
연 령	한 아이당 확보 공간															
0-1	3.50 m <sup>2</sup>															
1-2	2.80 m <sup>2</sup>															
2-3	2.35 m <sup>2</sup>															
3-6	2.30 m <sup>2</sup>															
연 령	한 아이당 확보 공간															
0-6	2.00 m <sup>2</sup>															

출처: Department of Health, 2011. 'NationalStandardsforPre-SchoolServices.' accessed2014.05.15  
 (http://www.dohc.ie/publications/national\_standards\_preschool2010.html)

아일랜드 보육서비스 기준이 본 연구 기준마련에 주는 시사점은 보육서비스의 20개 기준과 각각의 목적,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며 목적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의 명확성은 서비스 제공 기준의 명확성 이외에도 이후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 마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아일랜드 가이드라인을 보면 부모에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하고 그 내용 또한 명시하고 있다는 점, 상호 계약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불만에 대한 처리과정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결과처리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수면 공간의 크기, 온도, 밝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재(책 등), 장난감, 재료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화장실 변기 기준 등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준 마련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제 3절 스웨덴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스웨덴 보육은 ‘아동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소양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려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취학전 교육과정에서 어린이집(피르스콜라)에서 가르쳐야 할 기본가치, 피르스콜라의 과제, 목표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교육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만을 제시한다는데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Skolverket, 2010). 뿐 아니라 원장 및 교사의 역할과 지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국가차원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5가지 목표와 지침<sup>17)</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 1. 규범 및 가치

보육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첫째, 어린이마다 다른 요구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의 내적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민주적 참여방법을 시행하고, 셋째, 어린이의 참여와 이를 발전시킬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보육교사 이외 다른 교원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민주적 분위기 조성 및 아동의 소속감 및 책임감 고양, 둘째, 소통 자극 및 갈등시 타협 등의 지도, 셋째, 인종적 딜레마, 생명에 대한 문제 강조, 넷째,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다른 행동 인지 지도, 다섯째,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와 유치원 내에서 규칙과 태도상의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다.

17) 유아학급 및 레저타임 센터와 협력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제외함

18) Skolverket. ‘Curriculumforthepreschool Lpfö 98 revised 2010’. 1-16.를 번역, 재구성한 것임

## 2. 발달 및 학습

발달 및 학습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지침으로 첫째, 배움의 기회와 함께 아동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둘째,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가능성 제공, 셋째, 타인으로부터의 지지와 자극을 통한 사회관계 발전, 넷째, 의사소통 능력 개발, 다섯째, 수학적 능력 개발, 여섯째,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자극, 일곱째, 유아 발달(예: 유연성, 이동 통제 등)을 위해 아동은 이에 대한 적절한 지지와 자극, 여덟째, 아동은 적절한 보살핌과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힌 리듬을 갖도록 한다.

## 3. 아동의 영향력 (Influence of the Child)

교사들은 모든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교육방식과 내용을 통해 영향을 받는데 책임이 있다.

이외에도 젠더간 차이가 활동 및 참여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영향력을 끼치고 활동 영역 또한 같아야 한다는 지침과 함께 아이들이 민주 사회에 적용되는 책임,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 4. 피르스콜라와 가정(부모)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동의 정보 및 발달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교육 활동에 대한 계획을함에 있어 목표들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직접 활동에 대해 평가과정에도 참여할 수 해야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5. 관리, 평가 및 개발

첫째, 각 아동의 학습과 발달 사항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후속조치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이 교육 과정의 목표와 그 의도에 따라 어린이에게 교육 방법과 개발을 제공하는지 평가 할 수 있다.

둘째, 문서화, 후속 조치, 평가 및 분석은 커리큘럼의 목표가 교육 내용과 어떻게 서로 관련 있는지 설명한다.

셋째, 어린이집을 전체 조직으로서 조건, 조직, 체계, 교육 내용 및 교육 활동, 교육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며 추적관찰 및 평가를 해야 한다.

넷째, 기록, 후속 조치 및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의 능력과 지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설명해준다. 이때 목표는 어린이집 내에서 제공된 학습과 발전의 전제 조건이 내포하고 있는 전제조건과 관련 있다.

다섯째, 평가 방법은 기록과 평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한 기록과 분석평가가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교육 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집의 품질을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문서화 작업의 결과, 후속 조치 및 평가의 결과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가 학습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6. 어린이집 총 책임자(원장)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의 책임으로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다음과 같이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원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평가 및 발전을 모색한다.

둘째,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및 기타 직원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 품질 관리를 한다.



셋째, 원장은 작업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넷째, 학습 환경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좋은 학습환경을 이용할 수 있고 아동 능력계발과 학습을 이끄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원장은 어린이집을 체계화 하여야 한다.

여섯째,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내 수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수행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후속처리를 하고 평가한다.

일곱째, 가정과 어린이집 사이에 협력 체계를 개발하고 부모는 어린이집의 목표와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여덟째, 어린이집 내 학급, 학교, 여가 활동 센터와 협력의 형태를 개발한다. 긴밀하게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때 협력할 수 있으며 협력을 신뢰한다.

아홉째, 직원이 전문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얻어야 한다.

원장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지침에 있어서도 ‘적정’ 보육서비스 구성요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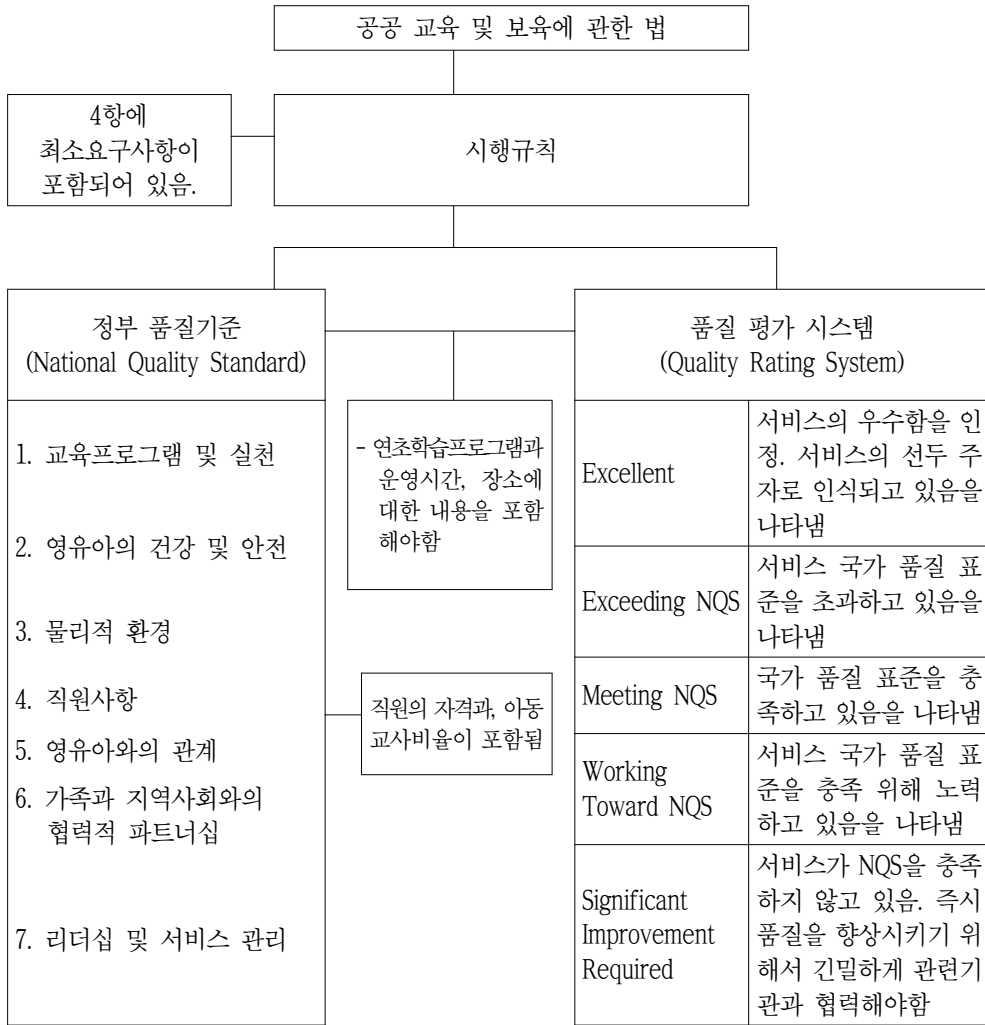
## 제 4절 호주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 1. 호주 국가수준의 질적 프레임워크 (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

호주 국가수준의 질적 프레임워크는 교육·보육서비스법(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과 시행규칙(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Regulations)에 근거하고 있고, 그 목적과 기준에 대한 원칙으로 다음 6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ACECQA3, 2013:8).

-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 아이들은 성공적이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학습자이다.
- 형평, 통합(포괄) 그리고 다양성은 프레임워크를 뒷받침한다.
-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문화 또한 평가된다.
- 부모와 가족의 역할은 존중 및 지원되어야 한다.
- 우수사례는 교육과 보육서비스의 공급에서 확산 가능하다.

그리고 호주 NQF는 <그림 III-1>에서 보는바와 같이 질적 기준과 그에 따른 질적 수준에 따른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질적 기준은 표준 기준이고 그 수준이 못 미치는 곳과 그 기준을 넘어서서 우수한 수준 등의 체계까지 관리,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 따라 교사가 취해야 할 가이드 또한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단순히 평가만이 아닌 견인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Ⅲ-1 | 그림 Ⅲ-1 | 호주의 NOF와 QRS 체계 구성

구체적으로 호주 국가수준의 질적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교육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물리적 환경, 교직원 사항,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 7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목적과 원칙은 <표 Ⅲ-9>와 같다.

【 표 III-9 】 호주의 국가적 차원의 질적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

질적 영역	준거(Standard)(구성요소 수)
1.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1-1. 영유아 개개인의 학습과 발달의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6) 1-2.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의 전달과 결정에 있어 적극적인 교육자와 조정자(3)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2-1. 영유아의 건강증진(4) 2-2. 건강한 식사 및 신체적 활동(2) 2-3. 위험으로부터 보호(4)
3. 물리적 환경	3-1.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보육실의 위치와 환경의 적정성(3) 3-2. 역량 증진 및 놀이와 학습의 공간 분리(2) 3-3. 보육환경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지속성(2)
4. 직원사항	4-1. 교직원들은 영유아의 안전 및 안녕을 유지하고, 학습, 발달을 위한 수행(1) 4-2. 모든 교직원의 존경심과 윤리성 내포(3)
5. 영유아와의 관계	5-1. 영유아와의 신뢰적이고, 적합한 관계유지(3) 5-2. 또래와 어른과의 민감하고, 정서적인 관계유지(3)
6.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6-1. 가족과의 지지적인 관계유지(3) 6-2. 보육에 대한 부모 역할과 믿음, 가치에 대한 존중(2) 6-3. 영유아의 학습과 건강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4)
7.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	7-1. 효율적인 리더십(5) 7-2. 지속적인 개선(3) 7-3. 경영시스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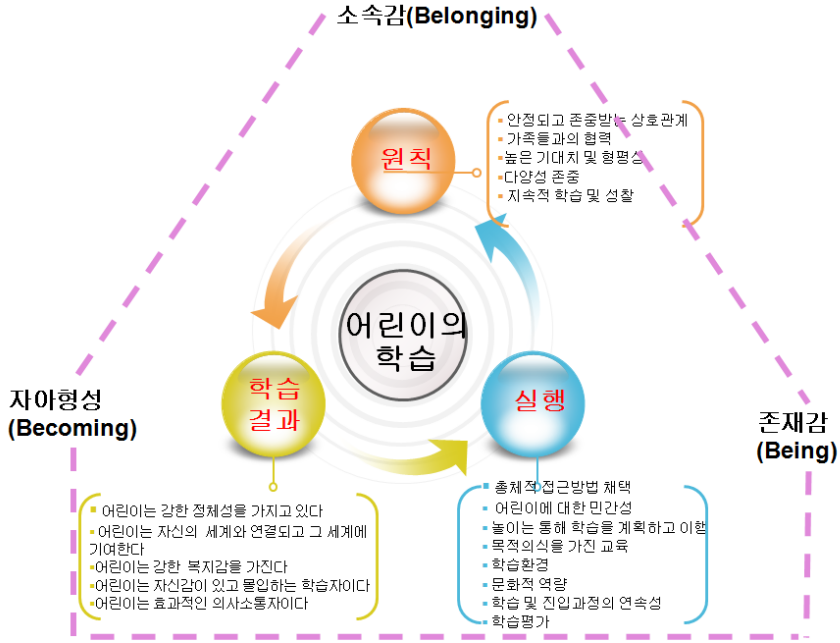
출처:ACECQA3(2013:10-11)

호주는 2012년 1월부터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승인된 표준보육과정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조기교육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은 소속감, 존재감, 자아형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영유아 학습의 원칙, 실행, 학습결과 등의 Framework<sup>19)</sup>으로 세

19) ACT\_Childcare\_Services\_Standards\_200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9)에서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http://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belonging\\_being\\_and\\_becoming\\_the\\_early\\_years\\_learning\\_framework\\_for\\_australia.pdf](http://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belonging_being_and_becoming_the_early_years_learning_framework_for_australia.pdf))

호주의 경우, 2009년 양질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하여 국가수준의 질 기준을 제고하고자 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간소화된 법 규정, 평가 및 등급 시스템, 국가수준의 학습기준을 포함하여 질 관리 개혁을 시도하였음. 보육과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기관인 ACECQA(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를 설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교육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과 규제 시스템을 갖추어 유아들의 학습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과정(Belonging, Being, Becoming)을 운영함.

부 기준안을 마련하였다(〈그림 Ⅲ-2〉 참조).



Ⅲ  
Ⅲ-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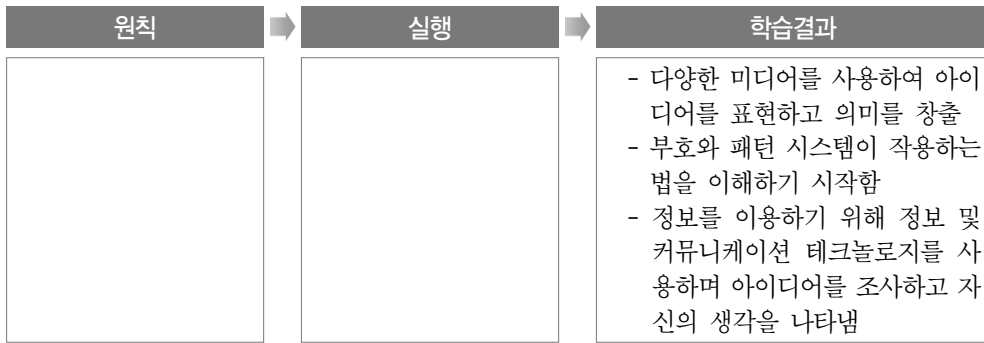
Ⅲ-2 Ⅲ 호주 조기학습 비전과 프레임워크

호주는 어린이 학습에 대한 표준보육·교육의 원칙을 안정되고 존중받는 상호관계, 협력, 높은 기대치와 형평성, 다양성 존중, 지속적 학습 및 성찰 등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 접근, 어린이에 대한 민감성, 놀이를 통한 학습, 목적의식을 가진 교육, 학습환경, 문화적 역량, 학습과 진입과정의 연속성, 학습평가 등을 통해서 아래〈표 Ⅲ-10〉과 같은 학습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Ⅲ-10 호주의 어린이 학습 원칙, 실행 그리고 학습결과

원칙	실행	학습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되고 존중 받은 상호관계</li> <li>▶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관계는 서로의 기대치와 태도에 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체적 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적 학습 및 신체적,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복지를 비롯한 자</li> </ul> </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고 보호받고 지원되고 있음을 느낌</li> <li>- 자율성, 상호의존, 회복력 및 주체성이 새롭게 발달함</li> </ul> </li> </ol>

원칙	실행	학습결과
<p>한 이해가 지지를 이루며 서로의 견실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p> <p>▶ 높은 기대치 및 형평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는 자신들과 부모, 교육자들이 자신에게 높은 기대치를 유지할 때 좋은 진보를 이룸</li> </ul> <p>▶ 다양성 존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내에서 가족들의 행동과 가치 그리고 신념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반영함을 의미</li> <li>- 호주에서는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지식과 존재방식에 대한 이해를 더욱 고양</li> </ul> <p>▶ 지속적 학습 및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 및 학습 공동체를 구축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구</li> <li>- 정보를 수집하며 어린이의 학습에 관한 의사 결정을 지원, 통보 및 강화하는 통찰을 얻게 하는 것이 성찰의 의도</li> </ul>	<p>연세계와의 연결도 초점</p> <p>▶ 어린이에 대한 민감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의 강점과 능력, 관심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놀이에도 반응</li> </ul> <p>▶ 놀이를 통한 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의 탐험, 창의성, 즉흥성 및 상상력을 키우며 학습할 기회를 제공</li> </ul> <p>▶ 목적의식을 가진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도적이고 목적을 띠고 시려 깊은 교육</li> </ul> <p>▶ 학습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및 실외 환경은 모든 측면의 어린이 학습을 지원</li> </ul> <p>▶ 문화적 역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문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며 효과적인 상호작용하는 능력</li> </ul> <p>▶ 학습 및 진입 과정의 연속성</p> <p>▶ 학습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가 알고 수행할 수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정보 수집과 분석 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과 자신감에 기초한 자아 정체성이 발달함</li> <li>- 타인과의 관계에서 돌봄과 공감과 존중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배움</li> </ul> <p>2. 어린이는 자신의 세계와 연결되고 그 세계에 기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를 위해 필요한 상호권리 및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킴</li> <li>- 다양성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로 반응</li> <li>- 공정성을 인식하기 시작함</li> <li>- 사회적으로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환경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li> </ul> <p>3. 어린이는 강한 복지감을 가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 복지에서 강해짐</li> <li>- 자신의 건강과 신체적 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시킴</li> </ul> <p>4. 어린이는 자신감이 있고 몰입하는 학습자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기심, 협동, 자신감, 창의성, 노력, 열의, 인내, 상상력 및 성찰 등 학습을 위한 기질을 발달시킴</li> <li>- 문제해결, 문의, 실험, 가정설정, 연구 및 조사와 같은 다양한 기술과 절차를 발달시킴</li> <li>- 한 상황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으로 이동 적용시킴</li> <li>- 사람과 장소, 테크놀로지 및 자연적 가공적 재료와 연결시켜 자신의 학습 자원을 제공</li> </ul> <p>5. 어린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자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목적을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 함</li> <li>- 다양한 텍스트에 관여하고 이들 텍스트에서 의미를 파악함</li> </ul>



이러한 호주의 조기학습 비전과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표준보육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이 연구대상이 아니더라도 <표 II-4>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아동발달 중심, 즉 기본생활습관 향상, 사회적 지식과 태도 학습, 의사소통 능력 배양, 탐구능력, 창의성 등의 목표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 중심의 내용이라면, 호주의 프레임워크는 원칙에 따라 실행방법을 구체화하고 발달에 있어서도 자신의 정체성 확립, 자아 존중감, 사회속의 자신(아동)의 중요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 2. 호주 어린이집(center-based) 운영의 핵심 기준(standard)

호주의 보육(아동보호)서비스 기준법에는 보육서비스의 핵심기준과 보육기관의 특성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서비스의 책무성이 각 아동을 위한 최상의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은 종일보육, 방과후보육, 가정보육 등에 적용되는데, 각각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모든 인가된 기관은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 <표 III-11>과 같은 기준 및 내용의 최소(minimum)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각 기관별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최소 운영기준이라고 하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세부기준까지 명시하고 있고 내용은 한국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최소 이상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11 | 호주의 core standards와 centre based standards

standards		core standards	centre based standards					
운영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 유지</li> <li>- 부모의 접근권</li> <li>- 면허</li> <li>- 부모/보호자를 위한 정보</li> <li>- 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경영자에게 정보제공</li> <li>- 건강검진기록</li> <li>- 철학</li> <li>- 직원을 위한 정보</li> <li>- 다른 법 및 규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 허가</li> <li>- 사고/부상, 관련기록, 개인투약기록, 응급절차 및 기록</li> <li>- 정책</li> <li>- 정채 보고서</li> <li>- 일반 인증서 및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사람</li> <li>- 보육 교사의 역량</li> <li>- 직원 채용조건</li> <li>- 집단 크기</li> <li>- 직원 자격요건</li> <li>- 직원간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대상</li> <li>- 감독</li> <li>- 직원 대 아이 비율</li> <li>- 하급/부하 직원</li> <li>- 의무보고요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을 갖춘 직원</li> <li>- 대체인력(단기, 장기)</li> <li>- 서비스 책임자, 책임자의 자격요건, 책임자 부재시 대적</li> <li>- 청소업무를 맡은 직원</li> </ul> <p>※ 직원집단을 위한 설명 표</p>					
직원	<p>staff : child ratios</p> <table border="1"> <tr> <td>아동 나이</td> <td>비율</td> </tr> <tr> <td>3세 이하</td> <td>1:5</td> </tr> <tr> <td>3세 이상</td> <td>1:7</td> </tr> </table> <p>group siz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세의 경우 최대 15명</li> <li>- 2-3세의 아이의 경우 최대 20명</li> <li>- 3-5세의 아이의 경우 최대 35명</li> <li>- 혼합 연령 집단은 최소연령 아이의 최대 그룹 크기가 허가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한 것과 달리한 경우이외에 는 준수되어야 함</li> </ul>	아동 나이	비율	3세 이하	1:5	3세 이상	1:7	<p>아동 수 (3세 이하)</p> <p>집단 크기에 따른 인력(최대 20명)</p> <p>10명                      정교사(리더): 아동 서비스의 수료증 또는 동등한 요건 또는 유아교육학사(3년과정포함)+ 한명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p> <p>15명                      정교사(리더): 자격을 갖춘 팀 리더는 유아교육학사 (3년과정포함)                      + 보조인력(1명): 아동서비스 자격증 III (또는 동등한 요건의 자) +한명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                      또는 정교사(2인: 1인 리더+1인)+한명의 자격 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p> <p>20명                      - 정교사(2인 리더): 아동 서비스(Children's service)의 수료증 (diploma) 또는 동등한 요건 또는 유아교육학사(3년과정포함) + 2명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p>
아동 나이	비율							
3세 이하	1:5							
3세 이상	1:7							



standards	core standards	centre based standards
	<p>staff qualificat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는 갖추어야 함 : community services(children's services)의 수료증 또는 동등한 요건</li> <li>- 유아교육 학사, 3년 전문대학, 이와 동등한 자격</li> </ul>	<p>3세 이상 최대 22명 집단 크기에 따른 인력(최대 33명) 상동</p> <p>자격을 갖춘 팀 리더(1인): 유아교육학사(3년과정포함) + 보조 인력(1인)은 아동의 서비스 자격증 III 또는 동등한 요건 +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1인) 또는 2명의 정교사+ 자격 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1인)</p>
프로그램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설 계획</li> <li>- 행동지침사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과 의식</li> <li>- 프로그램 지원 용품(도구)</li> </ul>
안전, 건강 및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 절차</li> <li>- 안전환경</li> <li>- 비상 절차</li> <li>- 위험물</li> <li>- 응급처치 키드</li> <li>- 질병 및 사고</li> <li>- 음식/영양</li> <li>- 동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서비스가 운영되는 날 그리고 눈에 띄게 오염된 경우 매일 적어도 한번 청소되어야 함</li> </ul>
건물과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결 및 유지보수</li> <li>- 화재 안전 요구사항/연기 감지기</li> <li>- 전기제품</li> <li>- 아이들의 장난감과 용품</li> <li>- 전염성 조건</li> <li>- 사건</li> <li>- 수면 용품</li> <li>- 식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놀이 공간</li> <li>- 가구 및 부품들</li> <li>- 저장고</li> <li>- 기저귀 교환시설</li> <li>- 음식준비시설(부엌)</li> <li>- 냉난방</li> <li>- 폐기물 처리</li> <li>- 관리(행정) 공간</li> <li>- 출입구</li> <li>- 수면공간</li> <li>- 화장실과 세면대</li> <li>- 세탁시설</li> <li>- 전화</li> <li>- 실외 놀이 공간</li> <li>- 자연광</li> <li>- 유리</li> </ul>



standards	core standards	centre based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 놀이 용품</li> <li>- 실외 놀이 저장고</li> </ul>
현장학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타리</li> <li>- 모델밭</li> <li>- 그늘</li> <li>- 수상 안전</li> </ul>

## 제 5절 일본 보육서비스 기준 및 시사점

일본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후생노동성 시행령 제63호) 제35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 내용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해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기준을 통합적으로 마련, ‘보육소운영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다. 보육 지침에 규정하는 범위는 어린이집에서 서비스 실천을 조직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이의 건강과 안전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를 만드는 것, 육아 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이다. 보육지침의 지향점은 아동복지이념에 근거한 보육의 질 향상이며 이 지침은 이를 위한 보육내용의 기본이나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과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육소지침은 아래 <표 III-12>과 같이 총칙과 아동의 발달, 보육의 내용, 보육의 계획 및 평가, 건강과 안전, 보호자에 대한 지원, 직원의 자질향상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칙에 보육소의 역할, 보육의 원리,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사업 안내(지침)와 비교해 보면 어린이집 운영의 내용은 반별구성, 입소순위 등을 핵심으로 한 일반원칙과 예·결산 관련 내용 그리고 건강·급식·위생 관리, 안전, 아동학대예방, 지도·점검 등 관리방안, 정보공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 전반의 목표와 방법,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일본 보육소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III-12 | 일본 보육소지침

보육지침 구성		내용 및 준거
I. 총칙		
1. 보육소의 역할	(1) 보육소 보육의 목적	① 아동 최선의 이익 ② 아동발달에 적합한 생활의 장
	(2) 보육소의 특성	① 전문성을 가진 직원에 의한 보육 ② 가정과의 연계 ③ 발달과정: 아동발달과정을 고려한 보육 ④ 환경을 통해 이루어진 보육: 환경 속에서 돌봄과 교육이 통합적으로 제공

보육지침 구성		내용 및 근거
		⑤ 돌봄과 교육의 일체성: 교사 등이 영유아를 하나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생명을 지키며 정서안정을 도모, 유아기에 걸맞는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 의미
	(3) 자녀양육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양육자 이외의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과의 연계 및 지원, 어린이집 자원 활용(놀이터 등)뿐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 주체로서 역할
	(4) 보육사의 전문성	① 아이의 발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긍정적 발달을 견인하는 기술 ② 아이의 발달 과정이나 의욕을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힘을 섬세하게 돕는 지식, 기술 ③ 어린이 집 안팎의 공간과 물적 환경, 여러 기구들과 소재, 자연 환경과 인적 환경을 살려 보육 환경을 구성하는 기술 ④ 아이의 경험이나 흥미·관심에 맞춰 다양한 놀이를 풍부하게 전개해 나가기 위한 지식·기술, ⑤ 아이들끼리의 관계나 아이와 학부모의 관계 등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필요한 원조를 하는 관계 구축의 지식, 기술 ⑥ 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조언에 관한 지식과 기술
2. 보육의 원리	(1) 보육의 목표	<p>• 보육은 어린이가 현재를 가장 좋은 삶,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 힘의 기초를 쌓기 위해 다음 목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충분히 양호한 환경 아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명의 유지 및 정서의 안정을 도모할 것. ㉡ 건강, 안전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길러, 심신의 건강의 기초를 기를 것 ㉢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 그리고 인권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함께 자주 자립 및 협조의 태도를 기르고 도덕성을 기초를 기를 것 ㉣ 생명, 자연 및 사회사상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키우고, 이들에게 풍부한 심정과 사고력의 기초를 만들 것 ㉤ 생활 속에서 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얘기도 듣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 하는 등 말의 풍요를 기를 것. ㉥ 여러가지 체험을 통해, 풍부한 감성과 표현력을 길러, 창조성의 기초를 기를 것</p> </div> <p>① 돌봄과 교육의 목표: 학교교육법과 유치원의 목표와 공통의 것으로 건강, 인간관계, 환경, 언어, 표현 등의 보육과정 목표와 같음 ② 보호자 지원의 목표: 아동최우선원칙하에 보호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계도모 및 대응</p>

보육지침 구성		내용 및 근거
	(2) 보육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황 파악과 주체성 존중</li> <li>② 건강, 안전한 환경에서의 자기 발휘</li> <li>③ 개개인과 집단: 개별적 특성과 집단으로서의 성장 촉진</li> <li>④ 생활과 놀이를 통해 종합적인 보육</li> <li>⑤ 보호자의 지원방식: 보호자와의 파트너십, 보호자의 육아 장벽 해결 지원</li> </ul>
	(3) 보육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환경에는 보육교사 등의 인적환경, 시설이나 놀이 등 물적 환경, 나아가 자연이나 사회의 현상 등이 있음.</li> <li>① 환경을 통해 이루어진 보육의 중요성</li> <li>② 아이 스스로 환경 관련,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li> <li>③ 안전 보건의 환경</li> <li>④ 따뜻한 분위기와 생생한 활동의 장</li> <li>⑤ 다른 연령집단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보육환경 구성</li> </ul>
3.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	(1) 아동의 인권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인권에 충분히 배려, 개개인의 인격 존중해 보육 실시</li> </ul>
	(2) 지역교류와 설명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교류: 지역의 다양한 사람, 장소, 기관 등과 제휴, 필요로 하는 자원 요구, 학교 등의 체험학습 교류, 고령 자원 교류 등 사업 전개, 필요시 어린이집은 공적시설 역할</li> <li>②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어린이집에 대한 역할과 기능 성명 책임: 정보제공, 어린이집 연간 행사 등의 일정, 보육방침, 지역사회 협력 및 교류 도모 설명, 제3자에 의한 평가 실시 및 결과 공표</li> </ul>
	(3) 개인정보의 보호와 고충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개인정보보호</li> <li>② 불만해결: 보호자의 불평등 해소</li> </ul>
II. 아동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아기 발달의 특성</li> <li>(2) 연령별 발달과정</li> </ul>
III. 보육의 내용		<p>보육 내용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총칙)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내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하는 사항” 및 “아이가 원하는 심정, 의욕, 태도 등의 사항을 의미함. 내용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 환경 관련 경험을 의미함.</li> <li>• 돌봄(care)이란 “아이의 생명유지 및 정서안정을 위해 교사 등이 실시하는 원조와 관련 된 것”</li> <li>• 교육(education)이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 활동이 더욱 풍부하게 전개되기 위한 발달의 원조로, “건강”, “인간 관계”, “환경”, “말” 및 “표현”의 5영역+“생명의 유지” 및</li> </ul>

보육지침 구성		내용 및 근거
		“정서 안정”과 관련된 보육 내용은 어린이의 생활과 놀이를 통해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전개되는 것임.
1. 보육목적 및 내용	(1) 돌봄의 내용	① 생명존중 ② 정서안정
	(2) 교육의 내용	① 건강 ② 인간관계 ③ 환경 ④ 언어 ⑤ 표현
2. 보육실시시 배려사항 (연령별)	(1) 전반적인 배려사항	① 아동의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 ② 아이의 건강은 생리적 신체적 성장과 함께 자율성과 사회성, 풍부한 감성의 발육이 맞물려 초래됨을 유의 ③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활동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지원. ④ 아이의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배려하는 것. ⑤ 아이의 입소시 보육에 있어서는 가급적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자녀가 안정감을 얻어 점점 어린이 집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도록 하고 이미 입소한 자녀들에게 불안과 동요를 주지 않도록 배려. ⑥ 성차이가 성차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배려
	각 연령별 배려사항	
IV. 보육의 계획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육의 기본이 되는 보육과정을 편성, 이를 구체화한 지도계획을 작성</li> <li>• 계획, 평가, 개선(사후관리)라는 일련의 보육과정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 노력</li> </ul>
	(1) 보육계획	① 보육과정 ② 지도계획 ③ 지도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등
	(2) 보육 내용의 자기평가	① 보육교직원 등 자기평가 ② 보육소 자기평가
V. 건강 및 안전	(1) 아동의 건강지원	① 자녀의 건강상태 및 발육 및 발달 상태 파악 ② 건강 증진 ③ 질병 등에 대한 대응
	(2) 환경 및 위생관리 그리고 안전관리	① 환경 및 위생 관리 ② 사고 방지 및 안전 대책

보육지침 구성		내용 및 준거
	(3) 식생활(급간식)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생활 교육의 목표는 ‘식생활의 힘’으로 식생활 교육 5가지 목표 즉 음식과 건강, 음식과 인간관계, 음식과 문화, 생명의 소중함과 음식, 요리와 음식 등에 관한하여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li>• 급간식 기본, 계획, 환경, 특히 배려가 필요한 아동별 대응</li> </ul>
	(4) 건강 및 안전의 실시체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원장의 책무와 조직적인 지원</li> <li>② 직원간 연계의 중요성</li> <li>③ 가정과 연계</li> <li>④ 전문기관·지역과 연계</li> </ol>
VI. 보호자에 대한 지원	(1) 보육소에 있어서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의 기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 최선의 이익</li> <li>② 보호자의 공감</li> <li>③ 보육소의 특성과 실질적인 지원</li> <li>④ 보호자의 양육력 향상 기여</li> <li>⑤ 상담 및 조언</li> <li>⑥ 프라이버시 보호 및 비밀유지</li> <li>⑦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li> </ol>
	(2) 보육소 입소하는 아동의 보호자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의 보육과 밀접한 보호자 지원</li> <li>② 보호자와의 상호이해</li> <li>③ 보호자의 일가족양립 등의 지원</li> <li>④ 장애 또는 발달상 특수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지원</li> <li>⑤ 보호자에 대한 개별지원</li> <li>⑥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이 의심되는 경우 지원</li> </ol>
	(3) 지역에 있어서 자녀양육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의 육아지원 내용</li> <li>② 지역 육아지원의 지역과의 연계</li> <li>③ 지역에서의 관계 만들기 및 문제발생 예방과 조기대응</li> </ol>
VII. 직원의 자질향상	(1) 직원의 자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어린이 집 직원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인간성</li> <li>② 직원의 공통 이해와 협동성</li> <li>③ 기쁨이나 의욕을 갖고 일하기</li> </ol>
	(2) 시설장의 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설장의 책무와 그 전문성 향상</li> <li>② 직원의 자기평가와 기관의 자기 평가와 연동을 통한 보육 개선</li> <li>③ 연수 체제의 확립과 자기 연구에 대한 지원·조언</li> </ol>
	(3) 직원 연수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문성을 높이고 연수</li> <li>② 배우는 환경 조성하고 어린이집의 활성화</li> </ol>

출처: <http://www.mhlw.go.jp/bunya/kodomo/hoiku04/pdf/hoiku04b.pdf>

## 제 6절 소결 및 ‘적정’보육서비스 틀

적정보육서비스 설계를 위해 국내외 보육서비스 가이드라인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스웨덴의 경우 궁극적인 보육목표만을 제시하고 세부 준거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 및 이외 교직원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한 지침과 원장의 구체적인 책무 등에 대한 기준은 본 연구에서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는 한국과 유사하게도 보육과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립보육 시설 비율이 높다. 차이점은 호주는 시장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한국은 무상보육과 공공성 확충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호주의 경우 한국의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비용, 영유아보육법 등이 간과하고 있는 보육·교육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체계가 기준 및 준거, 실행, 아동성과까지 구체적인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기관보육 중심의 가이드라인도 구분하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아일랜드의 경우는 보육서비스 기준에 따른 목적과 그에 따른 세부 준거들이 구체적이다. 또한 어린이집 입소, 계약에서 불만사항 처리 등까지 아동 및 학부모 중심의 서비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일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내용과 이와 관련해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른 보육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육소의 역할, 즉 보육소 보육의 목적, 특성, 자녀양육지원, 보육교사의 전문성 등을 명시하고, 보육의 원리, 보육소의 사회적 책임 등을 토대로 한 보육내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수정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II-13 국가별 어린이집 중심 운영 및 평가기준 비교

	한국		호주		아일랜드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	기관운영기준	평가기준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	건물 및 물리적 환경(설치기준)	보육환경 (어린이집 환경, 보육활동 자료, 보육지원 환경)	건물과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	건축 부지 및 시설 건축 물리적 환경(시설)
인력의 적정성	종사자 자격 및 임면관리	운영관리 (보육인력,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가족들과의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조)	직원	직원사항	조직 및 관리 부모 또는 보호자와 공동 사항
양육, 놀이, 학습	영유아관리			영유아와의 관계	양육, 놀이, 학습 양육 및 복지 행동 어린이 보호 수면 동등한 기회
급간식 위생 및 안전	안전관리 건강·급식·위생관리		건강과 영양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 안전 (실내외 시설의 안전, 아동보호)	안전, 건강 및 위생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운영 관리	보험		운영절차	-	정보 계약 기록 불만
보육프로그램 기획 및 실천	보육과정-표준 보육과정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 상호작용과 교수법 (일상적 양육, 교사의 상호작용, 교수법)	프로그램 및 기획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 및 실천	교재교구 등의 안전성 및 적절성
운영 및 평가	지도점검				
	평가				평가
	재무 회계관리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	장애 아동발달과 복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정’ 보육서비스 프레임(<표 III-14> 참조)에 따라 원칙과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 적용 가능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준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델파이조사에 의해 제기되는 기준 등도 포함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표 III-14 | ‘적정’ 보육서비스 프레임

Standards	criteria	국공립 적용 모델
1) 운영절차	1-1) 기록 관리(출석, 사고, 투약, 서류 등) 1-2) 정보제공(경영자, 부모/보호자, 직원에게 제공) 1-3) 복무규정과 지침에 의한 채용 및 근로절차	
2) 조직관리	2-1) 사명, 핵심가치, 비전 2-2) 운영위원회 2-3) 운영계획 및 평가(인사평가 포함)	
3) 재무관리		
4) 적정인력 및 구성	4-1)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4-2)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4-3) 교사 대 아동 비율	
5)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5-1) 직무교육과 재교육(보수교육포함) 5-2) 자율장학 5-3) 역량강화	
6) 보육교직원 행동관리	6-1) 올바른 교수법 및 상담기법 6-2) 아이들과의 관계설정 6-3) 부모와의 관계설정	
7) 보육과정 운영 (계획 및 실행, 평가)	7-1) 보육프로그램 계획 7-2) 보육프로그램 실행 7-3) 보육프로그램 평가 7-4) 교재교구 조성 7-5) 행동지침사례(부적절한 행동관리, 아동행동계획 수립 및 검토, 정서적 지원)	
8) 아동보호정책 (안전, 건강, 위생)	8-1)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 수립 8-2) 안전 환경 조성 8-3) 위생 환경 조성 8-4)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8-5) 사고예방 및 처치 8-6) 아동건강관리 8-7) 교직원의 건강관리	
9) 급간식(음식)과 식수	9-1) 영유아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특별식 포함)	

Standards	criteria	국공립 적용 모델
	9-2) 식자재 보관 및 적절한 조리과 관리 9-3) 친환경 식자재 사용	
10) 건물과 물리적 환경	10-1) 적합한 부지 10-2) 아동에 맞게 설계된 건물 10-3) 아동에 적합한 시설설비 구비 10-4) 부지와 시설설비는 안전규정 및 표준 준수 10-5) 청결과 유지보수 10-6) 권한이 있는 사람만 출입 허락	
11) 부모(양육자)와의 파트너십	11-1) 부모의 참여 11-2)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협의구조 형성 11-3) 아동의 정보 제공 및 공유 11-4) 권한 있는 사람만 아이 데려감 11-5) 부모교육 필요성 인식 및 의무화	
12) 동등기회제공과 아동의 특수육구 충족	2-1) 인종, 문화, 종교 존중 2-2) 기회의 공평성	
13) 특정 아이들(예:장애아, ADHD아동 등)의 특별한 육구와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적극적 접근		
14) 지역사회 연계	14-1)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 14-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공동체 인식	





# IV

## ‘적정’ 보육서비스 델파이 조사 및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 결과

제 1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결과

제 2절 ‘적정보육서비스’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제 3절 국공립어린이집 정착화 방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조사  
결과



# IV

## ‘적정’ 보육서비스 델파이 조사 및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 결과

### 제 1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결과

앞서 제시하였듯이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어린이집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를 위해 현장전문가 원장 31명, 보육교사 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PMI 기법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Affinity Diagram)기법을 활용하였다.

제 1회 조사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원장은 25개 자치구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였고, 규모는 현원 평균 104인 규모로 최소 44인에서 최대 168인까지 다양하였다. 원장경력은 평균 10.8년으로 최소 4년에서 27년까지 다양하였다. 평가인증 점수도 아직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 1개소를 제외하고 평균 98점이었다.

표 IV-1 |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 대상자 현황(어린이집 규모)

(단위: 명, 개소)

규모	21~49	50~99	100이상	평균	합계
응답자 현황	1	14	16	(104명)	31
(전체 국공립 수)	162	423	153		730

주: 전체 국공립 수는 2013년 12월 기준이고, 20인 이하(12개소)는 제외함

제 2회 조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5개 자치구별 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참석자는 19명이었다. 참석자 중 교사 총 경력은 5~10년 마만이 가장 많았고, 경력 중 국공립어린이

집 경력은 5년미만이 7명, 5~10년 미만이 9명, 10년 이상은 3명이었다.

■ 표 IV-2 ■ 현장적용 가능성 조사 참여자 보육교사 총 경력 및 구립 교사 경력  
(단위: 년, 명)

규모	5년 미만	5~10년미만	10년 이상	평균
교사 총경력	4	12	3	7
국공립 교사 경력	7	9	3	6.4



## 제 2절 ‘적정보육서비스’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결과

### 1. 델파이 1차 조사개요 및 결과분석

#### 1) 조사개요

적정보육서비스 델파이 1차 조사는 ‘적정’보육서비스 개념정의, ‘적정’보육서비스 수준, ‘적정’보육서비스 철학, ‘적정’보육서비스 철학에 포함될 원칙, ‘적정’보육서비스 구성요소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1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내용을 직접 기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2) 1차 조사 결과

##### (1) 서면자문을 토대로 한 조사 수정

1차 서면자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표준보육서비스의 기준 산정 시 표준/적정/최소 중 적합여부에 대한 문항에는 ‘표준’이라는 개념보다는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적정한 돌봄이 가능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의견과 누구나 보편 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수준을 적정이라고 볼 때, ‘누구나 보편타당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기준이 모호하지만, 표준에 제시한 어린이집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한 서비스가 적정 서비스라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표준’보육서비스보다는 ‘적정’보육서비스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선택한 ‘적정’이라는 용어의 수준에 관한 문항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가는데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평균수준일 경우 하향 평준화의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최고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아동권리적 차원에서 모든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보통수준

은 현재 기관에서 제공하는 범위, 최소수준은 적정보육서비스 수준에서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설정하였다.

‘적정’보육서비스의 철학의 기준에는 권리의 관점(EU), 인간상 중심의 관점(표준보육과정), 교육적 차원에서의 소속감·자아형성·존재감의 관점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수정없이 진행하였다. 추가사항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고려한 관점과 교사-아이-부모의 관계 설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적정’보육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운영절차, 조직관리, 재무관리, 적정인력 및 구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보육교직원의 행동관리, 보육과정 운영(계획 및 실행, 평가), 아동보호정책(안전, 건강, 위생), 급간식(음식)과 식수, 건물과 물리적 환경, 부모(양육자)와의 파트너십, 동등기회제공과 아동의 특수육구 충족, 지역사회 연계가 포함되어 13개 영역, 47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수정없이 조사가 진행되었다. 추가사항으로 지역사회에 맞춘 보육 프로그램과 부모(양육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개입과 상호작용을 추가하였다.

## (2) 조사결과

‘적정’보육서비스 개념정의에 관한 문항은 영유아 발달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로서 전문가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의 서비스라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과 가구특성, 아동특성에 따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적정’ 보육서비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적정’보육서비스의 수준은 아동권리적 차원에서 모든 아동이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적정’보육서비스의 철학적 이념 설계에 관한 문항에는 권리의 관점(EU), 인간상 중심의 관점(표준보육과정), 교육적 차원에서의 소속감·자아형성·존재감의 관점이 모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아동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주거와 생활환경 제공은 중요성에서 가장 낮게 선택을 하였다.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이념에는 영유아 각자의 특수성을 수용·존중해주며, 아동중심 관점에서 추진 될 수 있는 점검체계와 현재 필요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인간상 중심의 관점’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적정’보육서비스의 구성요소로는 운영절차, 조직관리, 재무관리, 적정인력 및 구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보육교직원의 행동관리, 보육과정 운영(계획 및 실행, 평가), 아동보호정책(안전, 건강, 위생), 급간식(음식)과 식수, 건물과 물리적 환경, 부모(양육자)와의 파트너쉽, 동등기회제공과 아동의 특수육구 충족, 지역사회 연계가 포함되어 13개 영역, 47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친환경 식자재 사용,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은 가능 낮게 선택을 하였다. 추가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교사-아동-다른 성인들 간의 상호작용, 재무관리(예결산 작성 및 공개, 정부지원금 예산편성 및 사용의 타당성),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원장의 리더쉽, 보육교직원 복지 규정 보유 및 지원), 보육과정 운영(보육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활용), 부모(양육자)와의 파트너쉽(가정과의 교류), 영유아당 면적비율 등으로 나타났다.

【 표 IV-3 】 1차 델파이 조사결과

1. 적정 보육서비스를 개념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개념정의	선택표시
①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한 서비스 총량	2
② 영유아보육법 등의 제도적 기준에 의한 서비스 총량	1
③ 영유아 발달에 필요로하는 충분한 양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의 서비스	1
④ 영유아 발달에 필요로하는 충분한 양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로서 전문가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의 서비스	5
⑤ 영유아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서비스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평균수준의 서비스	3
⑥ 영유아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타당한 서비스 이외 다양성, 형평성 등을 고려한 특수서비스까지 포함한 수준의 서비스	6
2. 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가 담아야하는 철학적 이념을 어디에 기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적정보육서비스 철학적 이념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아동최우선 이익 원칙	5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상 확립을 위한 적정 지원 원칙 (예: 표준보육과정이 지향하는 인간상 등)	4
교육적 차원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소속감, 자아형성, 존재감 확립 원칙	0

2. 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의 철학적 이념을 설계한다면, 아래와 같은 세 관점의 원칙들 중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구 분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권리의 관점 (EU)	수평원칙	1) 아동 최우선 이익 및 독립적인 권리 보유자로서 아동을 인식	9	
	충분한 자원 접근권	2) 일가정양립 또는 적극적인 부모참여 지원	9	
		3) 아동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생활기준 제공	6	
	적정한 양질의 서비스 접근권	4) 조기아동교육과 돌봄에 투자함으로써 영유아기 불평등 감소	8	
		5) 기회균등을 위한 양질의 교육혜택 보장	9	
		6) 아동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	6	
		7) 아동에게 안전하고 충분한 주거와 생활환경 제공	5	
	참여권	8) 가족지원과 돌봄환경의 질적 향상	8	
		9) 놀이,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문화 활동에 모든 아동의 참여를 지원	7	
		10)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제(mechanism)	7	
인간상 중심의 관점 (표준 보육과정)	1)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8		
	2)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8		
	3)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9		
	4) 자연과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9		
	5)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적인 사람	9		
교육적 차원에서의 소속감, 자아형성, 존재감의 관점	1) 안정되고 존중받는 상호관계 형성	8		
	2) 가족들과의 협력	8		
	3) 부모와 교육자의 높은 관심과 형평성	7		
	4) 아동의 다양성 존중	9		
	5) 교육자들의 지속적 학습 및 성찰	8		

2. 『적정보육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성요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 분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1) 운영절차			
1-1) 기록 관리(출석, 사고, 투약, 서류 등)		9	

구 분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1-2) 정보제공(경영자, 부모/보호자, 직원에게 제공)	8	
1-3) 복무규정과 지침에 의한 채용 및 근로절차	7	
2) 조직관리		
2-1) 사명, 핵심가치, 비전	8	
2-2) 운영위원회	9	
2-3) 운영계획 및 평가(인사평가 포함)	8	
3) 재무관리	7	
4) 적정인력 및 구성		
3-1)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9	
3-2)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8	
3-3) 교사 대 아동 비율	9	
5)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5-1) 직무교육과 재교육(보수교육포함)	9	
5-2) 자율장학	7	
5-3) 역량강화	9	
6) 보육교직원 행동관리		
6-1) 올바른 교수법 및 상담기법	7	
6-2) 아이들과의 관계설정	9	
6-3) 부모와의 관계설정	8	
7) 보육과정 운영(계획 및 실행, 평가)		
7-1) 보육프로그램 계획	9	
7-2) 보육프로그램 실행	9	
7-3) 보육프로그램 평가	9	
7-4) 교재교구 조성	8	
7-5) 행동지침사례 (부적절한 행동관리, 아동행동계획 수립 및 검토, 정서적 지원)	7	
8) 아동보호정책(안전, 건강, 위생)		
8-1)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 수립	9	
8-2) 안전 환경 조성	8	
8-3) 위생 환경 조성	9	
8-4)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9	
8-5) 사고예방 및 처치	9	
8-6) 아동건강관리	9	

구 분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8-7) 교직원의 건강관리	8	
9) 급간식(음식)과 식수		
9-1) 영유아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특별식 포함)	9	
9-2) 식자재 보관 및 적절한 조리과 관리	9	
9-3) 친환경 식자재 사용	6	
10) 건물과 물리적 환경		
10-1) 적합한 부지	8	
10-2) 아동에 맞게 설계된 건물	7	
10-3) 아동에 적합한 시설설비 구비	9	
10-4) 부지와 시설설비는 안전규정 및 표준 준수	9	
10-5) 청결과 유지보수	9	
10-6) 권한이 있는 사람만 출입 허락	8	
11) 부모(양육자)와의 파트너십		
11-1) 부모의 참여	9	
11-2)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협의구조 형성	8	
11-3) 아동의 정보 제공 및 공유	9	
11-4) 권한 있는 사람만 아이 데려감	9	
11-5) 부모교육 필요성 인식 및 의무화	8	
12) 동등기회제공과 아동의 특수육구 충족		
12-1) 인종, 문화, 종교 존중	9	
12-2) 기회의 공평성	9	
13) 특정 아이들(예:장애아,ADHD아동 등)의 특별한 육구와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적극적 접근	8	
14) 지역사회 연계		
14-1)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	6	
14-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공동체 인식	9	

## 2. 델파이 2차 조사개요 및 결과분석

### 1) 2차 조사개요

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2차 델파이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아동의 발달권 증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에 대한 개념과 세부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 2) 2차 조사결과

#### (1) 서면자문을 토대로 한 조사 수정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설문지를 11개 영역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서면자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적정’ 보육서비스란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편적인 양질(적정)의 서비스를 의미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역, 부모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의 개념과 동일하다. 또한 보편적인 적정보육서비스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와 양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적정’보육서비스의 설계 원칙을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의하였고, 11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의 다양성 및 특수성은 세부내용에는 가구, 지역, 사회적 특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아동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아동의 특성 및 가족의 요구’로 조정하였다. 그 외 항목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사회적 돌봄 책임성 확대를 위한 공동체의식 강화, 아동 발달권 중시,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아동의 균형적 발달을 위한 지역적 특수성 및 자원 네트워크, 아동 보육의 윤리성, 공보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의 내용은 모두 필요하나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 수정하였다.

수정된 완료된 영역으로는 아동의 발달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안전하고 위생적이 보육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의 7개 원칙으로 정리하였다.

## (2) 조사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동 발달권 중시의 7개 문항(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아동의 연령 및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비, 교사 대 아동비율, 연령별 발달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환경 제공,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은 모두 포함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시간연장형보육·일시보육의 포함여부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중 10개 문항(아동관리, 기관 관리감독, 운영 절차, 기록관리,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재무회계, 예산 및 지출의 적정·타당성, 기관정보 공개·제공)은 모두 포함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자율장학의 포함여부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조성의 9개 문항(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아동 급간식 관리, 위생환경 조성,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부지·시설설비 기준 준수, 안전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아동의 안전보호,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수립, 사고예방 및 처치)은 모두 포함한다고 응답하였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중 6개 문



항(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보유 및 지원, 직무교육, 원장의 리더쉽, 아동의 행동지도, 아동과의 관계서정, 욕구에 따른 대응)은 모두 포함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역량강화 교육의 포함여부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의 2개 문항(기관의 공평성, 기관평가 강화),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의 2개 문항(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설정, 부모(보호자)의 선택이 가능한 믿고 맡길만한 기관 확충),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4개 문항(돌봄문화 구축, 체험학습, 상호작용, 지역사회 자원연계)는 모두 포함한다고 응답하였다.

추가사항으로 부모와 질적인 상호관계 도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모 양육의 보충적 기능으로서의 보육, 표준보육과정의 적절한 적용, 보육과정운영에 있어서의 교수실제의 전문성, 보육내용(예: 창의성 등)에 추가 필요, 관련서비스가 중복되거나(예 : 인사관리, 부지),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부모의 선택이 가능한 믿고 맡길만한 기관 확충 등)되거나 하나의 서비스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재조정하고, 교사와 원장의 직무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연장형보육·일시보육을 부모의 접근성 문항의 세부문항으로 이동, 보육교직원의 자격·채용·인사의 문항을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영역으로 이동을 제시하였다.

Ⅰ표 IV-4Ⅰ 2차 델파이 조사결과

구분	개념 정의	관련 서비스	선택여부	
			포함	미포함
1. 아동 발달권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전인적 성장 발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li> <li>• 열린마음, 존중심, 연대감 및 책임감 발달 중심의 프로그램</li> <li>• 아동의 특성 및 가족의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의 다양성 및 특수성</li> <li>• 지역적 특수성을 고</li> </ul>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 (시설설계, 영역구성의 적절성, 한명당 확보 면적)	9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	9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계획, 실행, 평가 및 조치)	8	1
		아동의 연령 및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비	8	1
		교사 대 아동비율 (연령별, 그룹사이즈별)	9	
	연령별 발달특성과 개인차를 고려한 환	8	1	

구분	개념 정의	관련 서비스	선택여부	
			포함	미포함
	려한 아동의 균형적 발달	경제공 (공간 확보, 교재교구, 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보육인력풀 등)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 (사례관리, 자원연계)	8	1
		시간연장형보육, 일시보육 (시간연장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시간제보육, 긴급보육)	6	3
2. 신뢰를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신뢰성 있는 보육환경 구축</li> <li>• 투명한 운영관리를 통한 안심 보육체계 강화</li> </ul>	아동관리 (아동 개인정보, 부모/보호자와의 의사소통, 개입방법 논의)	9	
		자율장학 (교육프로그램 개발·평가 등을 위한 교직원 회의, 상사·동료 간 슈퍼비전)	6	3
		기관 관리감독 (평가인증,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안심보육모니터링, 운영위원회 구성·계획·운영 및 평가·조치)	8	1
		운영절차 (내부규정 마련,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	8	1
		기록관리 (운영·보육일지, 급간식 관련 등)	9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경력, 학력, 자격증)	7	1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고용방법, 급여, 근무시간, 대체인력)	7	1
		보육교직원 인사관리 (복무규정, 근로계약, 인사평가)	7	2
		재무회계 (회계지침, 서류, 평가)	8	1
		예산 및 지출의 적정·타당성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한 운영·관리, 조치구별 상한액 준수, 어린이집 운영 관련 업체 선정의 투명성, 인건비 지급 기준의 적정성 및 기준에 따른 지급 등)	9	
		기관정보 공개·제공 (어린이집 정보 공시 준수, 보육료 및 학	9	

구분	개념 정의	관련 서비스	선택여부	
			포함	미포함
		부모부담금 공지, 회계정보 공개, 교육내용, 보육교직원 현황 공개 등)		
3.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아동의 발달과 권리 증진	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정기 건강검진, 전염성 질환 및 질병관리)	9	
		아동 급간식 관리 (식자재 보관, 적절한 조리 관리, 식수제공 및 관리)	9	
		위생환경 조성 (실내외 청결, 정기소독, 공기질 정화)	8	1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청결, 무독성/불가연성, 올바른 사용법 안내)	8	1
		부지, 시설설비 기준준수 (안전규정, 표준 준수)	8	1
		안전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정기 안전점검, 실내외 안전 관리, 놀잇감 안전관리)	9	
		아동의 안전보호 (안전한 인계과정, 차량운행)	9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수립 (응급상황 대처, 비상대피도)	9	
4.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 증진 •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감성 및 아동 욕구에 기반한 대응성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보유 및 지원 (과업수행·휴식 공간 및 시간 확보, 보육활동시간의 적정성, 직원 고충처리)	9	
		직무교육 (보수교육, 직무교육, 신입 교직원 교육)	8	1
		역량강화 교육 (다양한 재교육 참여, 교직원의 자기개발)	6	3
		원장의 리더쉽 (원장의 전문성, 교직원·부모와의 소통)	8	1
		아동의 행동지도 (용인·금지되는 행동지도, 아동행동계획 수립·검토)	9	
		아동과의 관계설정	8	1
		사고예방 및 처치 (비상약 구비, 소방대책, 안전교육, 관련 보험 가입여부)	8	1

구 분	개념 정의	관련 서비스	선택여부	
			포함	미포함
		(발달특성 파악,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육구에 따른 대응 (부모(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7	2
5.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평등성</li> <li>•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상시화</li> </ul>	기회의 공평성 (공평한 기회, 아동의 다양한 활동 참여 기회제공, 참여의 장애물 제거)	9	
		기관 평가 강화 (모니터링, 부모(보호자)의 욕구, 서비스 불만·만족도 파악, 보육품질 평가 결과 공개)	8	1
6. 보육 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욕구와 선택에 용이한 기관 접근성 강화</li> <li>•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확대</li> </ul>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 설정 (적합한 부지, 위험시설과 떨어짐 등)	9	
		부모(보호자)의 선택이 가능한 믿고 맡길만한 기관 확충	7	2
7.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 사회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부모, 보육교직원, 지역사회 등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구현</li> <li>• 아동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적 맥락 고려</li> <li>•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중심의 통합적 보육서비스 제공</li> </ul>	돌봄 문화 구축 (관계자 교육, 다양한 객체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의견수렴)	8	1
		체험학습 (생태체험, 공동체 활동, 견학)	7	2
		상호작용 (동료 교사·가족·지역사회 자원과의 정보공유, 협력, 자문)	8	1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문가, 프로그램, 공간)	9	

델파이 조사지 이외의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으로 포함되어야 할 원칙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수렴되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는 첫째, 맞벌이 부부의 양적 양육시간 감소에 따른 부모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필요, 둘째, 원장 및 보육교사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자발적 준수 체계 마련, 셋째, 표준보육과정의 적절한 적용, 실제 교수방법 및 기술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내용 포함, 넷째, 사회적 전담보다는 부모양육의 보충적 기능으로서의 보육, 다섯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이윤추구 금지 원칙 포함, 여섯째, 아동중심 보육 목표에 있어서 성인중심의 사회문화에서 아동중심 문화 확립 필요, 일곱째, 영유아발달에 있어서 영아, 유아, 방과후 등의 구분 접근 명료화, 여덟째, 보육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에서 양성평등한 성역할 지도 및 민주시민 지도 등의 내용 포함, 아홉째, 보수교육, 승급교육 등의 관리체계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범위 재조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파트1의 다른 원칙과 중복성 조정, 파트2와 4의 재조정, 파트1과 6의 재조정, 파트2와 5의 재조정, 부모파트 별도 구분 등), 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원장의 리더십은 복수 전문가의 질적 평가, 즉 전문성과 소통뿐만 아니라 운영능력, 상황대처능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포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적용상의 불가능성으로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는데 첫째, 운영절차에 있어서 내부규정 마련,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 등의 기준에 있어서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까지는 어렵다는 의견, 둘째,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중 휴식공간 및 휴식시간 등을 마련해주기 어렵다는 의견, 셋째, 기관평가강화(모니터링, 부모(보호자)의 욕구, 서비스 불만·만족도 파악, 보육품질 평가 결과 공개) 등에 있어서 결과 공개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5개 영역 7가지 원칙, 35개 기준을 설정하였다.

표 IV-5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3차 조사 기준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아동 측면	1. 아동 발달 적정성	1.1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설비		
		1.2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		
		1.3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1.4 아동의 연령 및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비		
		1.5 교사 대 아동비율		
		1.6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		
		1.7 시간연장형보육·일시보육		
보육교사 측면	2.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2.1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보유 및 지원		
		2.2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2.3 아동의 행동지도		
		2.4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2.5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보육 서비스 측면	3.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3.1 아동관리		
		3.2 자율장학		
		3.3 기관 관리감독		
		3.4 운영절차		
		3.5 기록관리		
		3.6 재무회계		
		3.7 예산 및 지출의 적정·타당성		
		3.8 기관정보 공개·제공		
	4. 건강·안전·위생	4.1 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4.2 아동 급간식 관리		
		4.3 위생환경 조성		
		4.4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4.5 부지·시설설비 기준준수		
		4.6 안전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4.7 아동의 안전보호		
		4.8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 수립		
		4.9 사고예방 및 처치		
		지역사회 측면	5.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5.1 상호작용
				5.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보육기관 의 공공성	6.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6.1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 을 수 있는 평등성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6.2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상시화
	7. 보육서비스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7.1 부모(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욕구와 선택이 용이한 기관 접근성 강화
		7.2 부모(보호자)의 선택이 가능한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확대

### 3. 3차 조사결과

2차 설문결과 및 자문 내용을 토대로 3차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재조정하였는데, 아동측면, 보육교사 측면, 보육서비스 측면, 지역사회, 보육기관 공공성 측면으로 각각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세부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지침을 기준으로 마련하였고, 구체적인 준거틀이 없는 경우 평가인증 기준과 외국의 사례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 1) 아동측면 : 아동발달의 적정성

아동발달의 적정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첫째, 실내놀이 공간(유희실), 교사실, 수면 및 휴식공간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아일랜드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기준에 있어서 세면대, 변기 수량 및 규격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급간식에 있어서 비용중심보다는 발달에 적합한 영양을 기준으로 한 단가의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보육과정에 있어서는 균형성 취약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적 특수성, 성평등, 장애, 다문화 등의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과정의 부재하여 어린이집에 따라 특수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보육과정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넷째, 보육과정, 보육서비스 전반 등에 대한 자체평가 기준이 취약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평가인증, 서울시의 경우 안심보육모니터링,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등이 있지만 원 중심의 자기평가, 내부평가 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표 IV-6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아동측면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포함	적용가능성 가능	비고 (추가 의견)									
			포함	미포함												
아동 측면	I. 아동 발달 적정성	I.1 아동의 발달 에 적합한 시설설비	영유아용 가구와 실 비/적합한 편의를 제 공하기 위 한 물리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나라별 필수공간                             <table border="1"> <tr> <td>한국</td> <td>모욕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50인 이상)</td> </tr> <tr> <td>영국</td> <td>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무역</td> </tr> <tr> <td>호주</td> <td>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무역, 세탁실</td> </tr> <tr> <td>일본</td> <td>포복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td> </tr> </table> </li> <li>• 권장 공간 구성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li> </ul>	한국	모욕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50인 이상)	영국	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무역	호주	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무역, 세탁실	일본	포복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8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실</li> <li>• 외부놀이공간</li> <li>•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문 제로 신체활동이 가능한 실 내놀이공간 필요</li> </ul>
					한국	모욕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50인 이상)										
영국	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무역															
호주	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무역, 세탁실															
일본	포복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직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 는 공간이 필요함. 보통 지 정교실에서 이뤄지기 때문 에 그 교실의 담임교사는 업 무를 하기 불편함</li> <li>• 낮잠을 자지 않는 영유아들 을 위한 모욕실. (예: 낮잠을 자는 영유아들과 다른 공간 에서 활동할 수 있고, 낮잠 시간외에는 다른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sup>20)</sup>)</li> <li>• 100인 이상이 아닐 경우 양 호실 운영어려움, 식당, 강 당구비 어려움.</li> <li>• 야외신체활동, 체험활동 공 간의 활용가능성.</li> <li>• 교사실 필요</li> <li>• 사무실+교사휴식공간 필요</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추가요건)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연령에 맞는 설비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용 기구 : 책상, 식탁, 의자, 교구장, 침대 등</li> <li>- 영유아용 설비 : 세면대, 변기,</li> <li>- 개인별 소지품 보관 공간</li> <li>- 영아반의 경우, 기저귀갈이·수유·온습도 조절 기능설비 포함</li> </ul> </li> <li>공간 배치 : 흥미영역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보육실 내 흥미영역 구성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만0-1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일상생활영역(수유, 기저귀 갈이 영역 포함)</li> <li>- 영아(만2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음플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영역</li> <li>- 유아(만3-5세) : 언어영역, 수·조작영역, 과학영역, 음플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li> </ul> </li> </ul> </li> <li>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마련</li> <li>보육실 내 영유아의 수면 공간 마련</li> </ul>	9	9	9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반의 경우 전자레인지나 미니냉장고를 필수로 두어야 함(현실적으로 매번 조리실에서 가지고 오는 어려움 있음)</li> <li>• 무유설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간식에 대하여 영양사가 식단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단구성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밥은 잡곡을 기준으로 함</li> <li>② 국과 반찬 식단의 구성은 첫째, 단백질 1회/1일, 둘째, 반찬은 칼슘 1~2회/주, 셋째, 아채잔은 제철기준으로 매일, 김치로 구성</li> <li>③ 간식 중 오전간식은 과일, 유산균, 우유 중 선택하여 구성</li> </ul> </li> </ul> </li> </ul>	8	0	8	7		
	영양사가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	영양사가 작성한 영유아용 식단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추기이견)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과 내 급식 1회와 간식 2회(오전, 오후) 제공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간식: 하루열량의 5~10%</li> <li>- 점심: 하루열량에서 간식을 제외한 1/3</li> <li>- 오후간식: 하루열량의 10%</li> </ul> </li> <li>칼로리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연령</th> <th>하루필요열량</th> <th>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영영아</td> <td>이유식 3회</td> <td>증기이유식</td> </tr> <tr> <td></td> <td></td> <td>후기이유식</td> </tr> <tr> <td>영아</td> <td>1000kcal</td> <td>500kcal</td> </tr> <tr> <td>유아</td> <td>1400kcal</td> <td>700kcal</td> </tr> </tbody> </table> </li> </ul>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증기이유식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6	2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로는 간식의 경우 메뉴 특성상 열량초과의 가능성이 높음</li> </ul>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증기이유식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너무 짜거나, 달거나, 맵지 않아야 하며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한 크기로 제공되어야 함.</li> <li>식품 알레르기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에 반영하도록 함.</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식의 강도도 중요함. 조리 방법에 대한 언급.</li> <li>영유아의 건강상태에 따른 급간식내용의 적절한 제공</li> <li>음도는 측정가능하므로 일정 기준을 주면 좋을 것 같음/ 알레르기 확인반영시 실적에서 별도대체만찬제공 인지 학부모제공인지도 이 슈가 되고 있음/ 아동에게 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습관에 대해 부모와 지속적인 인 교류 포함</li> </ul>															
			<p>급 간식의 배 열량과 배 식량, 제공 횟수</p> <p>조리형태 및 음식의 크기</p>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추기 의견)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 :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li> <li>• 보육계획(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등)에 의거하여 운영</li> <li>•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li> </ul>	9	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 실행, 평가를 모두 기록해야 하는 것처럼 명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전반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허용할 필요도 있음. 평가인중의 경우 보육일지에 대한 허용범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li> </ul>	
	1.3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계획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활동과 집단 활동,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 놀이 활동과 일상적 양육활동, 영유아 주도 활동과 교사 주도 활동의 균형</li> </ul> </li> <li>• 계획된 활동에 대한 실행 및 평가 기록</li> </ul>	8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사회적, 자연적 감수성 발달과 연관된 보육 프로그램 필요</li> <li>• 성평등한 프로그램 및 놀이 지도</li> <li>•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변의 자연탐구를 통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추가</li> <li>•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li> <li>• 공동체 연계 및 공동체 소속감 통한 민주시민 성장 프로그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내용 편성·운영의 적절성 평가</li> <li>•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적합한지 평가</li> <li>• 영유아의 발달수준, 흥미, 요구에 적합한 경험 및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수학습</li> </ul>	9	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영유아의 관찰기록을 기초로 하여 영유아의 지도에 반영함.</li> <li>•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자체</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추기 의견)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법이 계획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평가</li> <li>일과 운영 및 교육활동 구성 시 놀이 활동과 일상 생활 활동의 양과 내용이 영아 및 유아 각 연령의 발달에 적합하게 계획되고 운영되었는지 평가</li> <li>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는지 평가</li> <li>기록과 분석평가가 유치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봐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가 우선되어야함.</li> <li>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가 매우 중요함. 이 부분이 잘 작동하는지 놓아야 할 듯.</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주도적 접근법과 교육교사 주도적 접근법의 효과적 사용</li> </ul>	6	2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좀 더 추가되기를 기대함.</li> <li>매우 필요함. 하지만 기본적인 사례, 가이드가 포함되어야 할 듯. 다소 추상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교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연령 이상 : 24개월 이상의 영유아</li> <li>-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 :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li> </ul> </li> </ul>	8	1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아의 경우는 특별활동을 전면금지하였으면 함. 유아의 경우에도 낮잠이 필요한 만3세의 경우 오전에 특별활동 1시간 이내로 인해 활동이 가능했으면 함.</li> <li>24개월 이하의 영유아는 신체발달이나 오감위주의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li> <li>유아만 가능하게 조정. (만3세부터)</li> <li>보건복지부령이 일부 개정되었음.</li> <li>어린이집 특별활동은 근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 활동</li> <li>적정 관리</li> <li>방안 준수</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추가의견)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되어야하며, 특히 국공립부 터 근절되어야함. • 원장, 교사, 부모의 특별할 동 평가 필요(아동의 발달에 맞는 적절한 관심을 유발하 는지) 단순히 연령과 시간대 를 넘어 질에도 관심을 두어 야 할 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자료의 구비 :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 꿍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악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li> <li>• 활동자료의 충분성, 다양성, 발달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활동 자료 : 대근육·소근육</li> <li>- 언어활동 자료 : 듣기·말하기읽기·쓰기</li> <li>- 자연탐구활동 자료 : 수·과학</li> <li>- 예술활동 자료 : 음악·동작·미술</li> <li>-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li> </ul> </li> <li>※ 평가인증 기준: 각 활동영역별, 연령별(0~1세, 2세, 3~5세) 구분에 따른 필요 교재교구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활동자료 중 실외활동 자료는 보관이나 상태유지 의 어려움이 있음. 평가인증 시에 재구입되는 놀이감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흡할 때 가 더 많을 것이고 이것이 현실일 듯.</li> <li>• 실제 현장에서 과학활동자 료가 많이 미흡한 편이므로 과학활동자료에 대한 교재 교구의 다양성이 필요함.</li> <li>• 평가인증기준이 흥미영역에 따라 연령 및 발달기준에 적 합한 자료를 제시하고 점검 하기 때문에 충분함.</li> <li>• 평가인증 기준만으로 적절함.</li> <li>• 평가인증에서 제시하고 있 는 영역별 놀잇감의 종수에 대한 명시는 불필요함.</li> </ul>
		1.4 아동의 연령 및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비	적절한 프로그램 용품 지원	8	1	7	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추가이견)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1.5 교사 대 아동 비율	<table border="1"> <tr> <td>한국</td> <td>만0세:1:3</td> <td>만1세:1:5</td> <td>만2세:1:7</td> <td>만3세:1:15</td> <td>만4세이상:1:20</td> </tr> <tr> <td>스코틀랜드</td> <td>2세이하:1:3</td> <td>2-3세이하:1:5</td> <td>3세 이상:1:8</td> <td>이상:1:10</td> <td></td> </tr> <tr> <td>영국</td> <td>2세 이하:1:3</td> <td>2세:1:4</td> <td>3-7세:1:8</td> <td></td> <td></td> </tr> <tr> <td>몰타</td> <td>0-12개월:1:3</td> <td>13-24개월:1.5</td> <td>25-46개월:1.6</td> <td></td> <td></td> </tr> <tr> <td>아일랜드</td> <td>0-1세:1:3</td> <td>1-2세:1.5</td> <td>2-3세:1.6</td> <td>3-6세:1.8</td> <td></td> </tr> </table>	한국	만0세:1:3	만1세:1:5	만2세:1:7	만3세:1:15	만4세이상:1:20	스코틀랜드	2세이하:1:3	2-3세이하:1:5	3세 이상:1:8	이상:1:10		영국	2세 이하:1:3	2세:1:4	3-7세:1:8			몰타	0-12개월:1:3	13-24개월:1.5	25-46개월:1.6			아일랜드	0-1세:1:3	1-2세:1.5	2-3세:1.6	3-6세:1.8		9	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국: 4인 택</li> <li>•아일랜드: 2인 택</li> <li>•한국: 1인 택</li> <li>•스코틀랜드인 택(주교사1인 에 보조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낮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인건비 고려한 정책적 판단 필요</li> </ul>
한국	만0세:1:3	만1세:1:5	만2세:1:7	만3세:1:15	만4세이상:1:20																																	
스코틀랜드	2세이하:1:3	2-3세이하:1:5	3세 이상:1:8	이상:1:10																																		
영국	2세 이하:1:3	2세:1:4	3-7세:1:8																																			
몰타	0-12개월:1:3	13-24개월:1.5	25-46개월:1.6																																			
아일랜드	0-1세:1:3	1-2세:1.5	2-3세:1.6	3-6세:1.8																																		
		반별최대정원제 이내	<table border="1"> <tr> <td>한국</td> <td>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td> </tr> <tr> <td>영국</td> <td>한 그룹의 아이들의 수는 절대 26명을 넘지 말아야 함</td> </tr> <tr> <td>호주</td> <td>2세의 경우 최대 15명 2-3세의 경우 최대 20명 3-5세의 경우 최대 35명</td> </tr> </table>	한국	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	영국	한 그룹의 아이들의 수는 절대 26명을 넘지 말아야 함	호주	2세의 경우 최대 15명 2-3세의 경우 최대 20명 3-5세의 경우 최대 35명	8	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4인 택(보조교사 필요)</li> <li>•호주: 1인</li> <li>•영국: 1인</li> </ul>																								
한국	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																																					
영국	한 그룹의 아이들의 수는 절대 26명을 넘지 말아야 함																																					
호주	2세의 경우 최대 15명 2-3세의 경우 최대 20명 3-5세의 경우 최대 35명																																					
	1.6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호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호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li> </ul>	7	1	4	3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추기어견)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한국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시간연장 보육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일랜드: 4인 택</li> <li>• 시간연장반은 혼합연령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고려해야함.</li> <li>• 동일연령, 혹은 혼합연령에 따라 예산과 연계하여 정해져야함. 일반적으로 외국사례를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음.</li> <li>• 특수교육의 범위가 필요함.</li> </ul>
			스코틀랜드	3세 이상이거나 그 이상 아이들이 4시간 보다 적은 시간으로 돌봄 제공 1:10	8	0	5	1	
			아일랜드	분기별 서비스 혹은 잠깐 맡기는 보육서비스 0-1세 1:3 / 1-2.2세 1.5 / 2.5-6세 1:10					
		1.7 양질의 특수 보육 및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계획-실행-평가 계획서 작성 및 실행</li> <li>• 부모의견 수렴</li> </ul>	6	2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인력 배치</li> <li>• 특수교육 특성에 맞는 물적환경(음간식, 장애아동의 경우 환경구성, 수면실, 샤워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1:3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수 아동의 경우 가장 낮은 연령의 교사대 아동비율 처럼 1:2가 되기를 희망함.</li> <li>• 치료실의 공간이 필요함.</li> <li>• 시간연장, 24시간 경비시스템</li> <li>• 시간연장의 경우 시간연장 반아동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매우 중요(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이유로)</li> </ul>
				인적 물적 환경 구성의 적합성	7	1	6	2	

20) 원문: 낮잠을 자지 않는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실(예를 들면 평소 책놀이터 등 다른 공간으로 활용가능)

## 2) 보육교사 측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를 위한 세 부기준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어린이집 복무지침 마련 및 그에 따른 인사관리 적정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준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등에 대한 기준 마련도 제기되었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이외 교육 다양화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사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령별 교수방법 노하우,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현장 적용가능한 교육과 인권 그리고 철학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행동지도 및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령별, 핵심적인 이상 및 문제행동 등에 대한 지침 및 대응 방안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보육교직원 체계 개편이다. 교사의 경우 승진체계가 없이 교사에서 원장이 되는데 3년 경력과 승급교육만 받으면 되는 구조라든가, 교사 이외에 승진구조가 없음으로 인한 정체감 등의 개선을 위한 교사-주임교사 또는 원감-원장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 교육 기준과 서울시 공인(안)을 토대로 서울시 구립 원장이 될 수 있는 체계 개편안 마련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담임교사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담임교사의 경우 일정 자격 이상의 자로 3급 담임교사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교사일 지라도 시험제도에 의한 담임교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섯째, 보육교사의 인사체계 공공성 확립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원장, 주임교사, 보육교사의 직무 분담 명확화와 교사간, 원장-교사간 소통체계 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표 IV-7 |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교사 측면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보육교사 측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 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2.1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마련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의 구비, 별도의 공간 마련</li> <li>보육교사용 참고자료(구비, 활용) 지원</li> <li>직장의 고충처리 이행절차 마련 및 이행</li> <li>법적 보수교육 이외 다양한 교육 기회 지원</li> <li>복무규정지침 마련</li> <li>교사회 구성</li> </ul>	9	0	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들이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도입 필요.</li> <li>보육교사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의 구비, 별도의 공간 마련 → 불가능한 요인은 시설 여건이 추분하지 않아 마련하기 어려움.</li> <li>교사용 화장실</li> <li>근로계약서 필요.</li> <li>채용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상 불합리한 조항 검토(근거없는 정년조항 등)</li> </ul>
		2.2 보육교직원 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복지(자조직운영, 근무시간, 근로환경 개선, 직원의 고충처리 등)</li> </ul>	8	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력교사가 함께 참관, 첫 직장인 경우 타 시설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함.</li> <li>연령별 교수방법의 노하우</li> <li>영유아권리보장</li> <li>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기본 메뉴얼 만들면 좋을 듯.</li> <li>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역량에 대한 교육, 위기 가정에 대한 안내 등.</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㉗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반드시 기록,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직원들은 직장에서 첫 주에는 건강, 안전 그리고 아동보호정책과 절차에 대한 신규훈련을 받아야함</li> <li>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직무교육: 3년마다 40시간</li> <li>특별 직무교육: 40시간</li> <li>승급교육 :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li> <li>2급 승급 80시간, 1급 승급교육 40시간</li> <li>원장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 80시간</li> </ul> </li> <li>원장과 보육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승급교육을 받은 후 관련 행정기관의 증빙서류(예정서류 포함)를 비치</li> </ul>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8	0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급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고 승급교육은 따로 자격에 관한내용임. 교육이나 시험 절차 등으로 배정되어야 함.</li> <li>보수교육의 양보다는 질 평가가 중요하므로 보수 교육 후 테스트 실시(보육현장 참관 등).</li> <li>영아반 교사의 특별직무교육 의무화</li> <li>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 모르나, 일정한 시간 동안 집합교육 이수만 허용하는 것으로부터의 융통성이 필요함./ 기간분할선택허용/ 기타교육과의 연계 인정/ 보수교육기관의 과목선택 허용</li> <li>대부분 보수 승급교육 시간이야간이나 주말에 운영 중이어서 교사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받</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생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off상태를 보장해야함.
			보수교육 외 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 아동발달, 교수방법 등 보육관련</li> <li>다양한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어린이 집 내부 교육, 외부 교육·워크숍·세미나, 지역별 모임 등</li> <li>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 제공</li> </ul>	5	4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수교육이 질이 향상되는 것이 우선임. 재교육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li> <li>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수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동지침사례 작성</li> <li>용인되는 행동 규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적인 지도, 분명한 한계 설정, 자기 훈련이 되기 위한 아이의 능력 촉진,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칭찬, 방향 수정</li> </ul> </li> <li>금지되는 행동 규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의 체벌 또는 위협, 음식·휴식·화장실 사용기회의 철회 또는 위협, 욕설,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치·굴욕, 학대(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다른 형태 학대 포함)</li> </ul> </li> </ul>	6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의 행동 교유시 직원은 일관된 태도 취함</li> <li>아동을 소외·무시·방치·고립 시키면 안됨, 신체적 중재는 안됨</li> <li>아동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으로 기록 남김</li> </ul>
		2.3 아동의 행동지도	적절한 개입과 대처방안 (공정적 방법의 행동지도)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가능 불가능	비고
				포함	미포함		
		2.4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li> <li>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이어야 함</li> <li>관리자는 보육현장에서 적어도 2년의 경험</li> </ul>	8	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자의 경력(2년)은 짧은 것 같음.</li> <li>관리자는 보육현장에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경험(있어야).</li> <li>‘관리자’범위가 모호함.</li> <li>가정 원장의 보육경력 상향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li> <li>국공립 보육교사 국가고시를 통한 보육전문가 임용</li> </ul>
		2.5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 이하: 그룹사이즈 10명 - 유아교육 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 하는 3년의 경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li> <li>그룹사이즈 15명 - 유아교육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자격있는 보조인력,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li> <li>그룹사이즈 20명 - 아동관련자격증 또는 유아교육 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 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두명의 자격요 건이 없는 보조 인력</li> <li>3세 이상: 그룹사이즈 20명 - 아동서비 스 수료증 또는 동등한 요건 또는 유아</li> </ul>	5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어린이집을 연령을 2그 룹 이상으로 만들기에는 현 보육시설들의 규모나 물리적 인 상태의 어려움이 큼. 보조 인력에 대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li> <li>보육교사 3급 등의 자격요건이 있는 보조인력이 필요.</li> <li>담임교사 기준_유아교육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전문에 해 당하는 3년의 경험/ 보조교사 기준_고등학교 졸업 후 교육기 관에서 관련교육 수료자로 구 분하여 급여 체계 개선 필요.</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교육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인데 유아교육학사라고 해도 될지요, 보조인력은 학급내의 보조교사역할일텐데 자격요건이 필요</li> <li>•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요원고육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자격, 근무기간 다른 급여기준, 퇴직금, 4대보험, 휴가, 휴직, 사직절차, 직무내용을 포함</li> <li>• 근로계약은 문서화(제출서류: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자격증 사본)</li> <li>• 직원 모집 자격기준(나이, 경력, 자격, 자격증 종류) 포함</li> <li>• 범죄경력조회서 포함</li> </ul>	9	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샘플링 조사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적정성을 파악해야함.</li> <li>• 보육교사의 자격별, 학력별 임금체계 확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은 전체를 조직하고 관리</li> <li>• 보육교사는 원장 운영방식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 수행</li> <li>• 원장과 보육교사는 반드시 업무분장된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 문서화 되어 있음</li> <li>• 비품관리, 도서관리, 실외시설 관리 등</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임교사의 역할도 정확하게 명시되기를 바람.</li> <li>• 원장-교직원간 소통체계 마련 (고충처리, 이행절차에 앞서 교사회 구성 및 의견이 합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li> </ul>	
			보육교직원 의 근로계약, 채용의 공정성						
			보육교직원 의 직무분담 적절성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과 같은 공동업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들 에게 분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지 • 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을 나눌 수 있음					

### 3) 보육서비스 측면-3.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기준안 마련 3차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원아뿐 아니라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율장학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율장학은 경력별, 영역별, 지자체간 등의 다양한 체계와 수위를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기준간 차이에서 오는 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등에 있어서 영아와 유아 규모에 따른 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비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이다. 뿐 아니라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있어서 개선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인건비, 시설설치비와 관리운영비의 연령별 차등 등).

넷째, 어린이집 운영절차 마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평가체계 마련과 공개 등도 고려한 방안 또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표 IV-8 |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서비스 측면-운영의 투명성 】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비고
			포함	미포함	적용가능성	가능		
보육서비스측면	3.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3.1 아동관리	원아에 대한 관리	9	0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원아 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철저한 오리엔테이션 필요(해야할 것과 하지말아야 할 것)</li> </ul>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위한 기본교육	5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전문가의 구체적인 컨설팅 지원.</li> <li>• 복지부에서는 보육과정컨설팅이라는 용어예정.</li> <li>• 자율장학이 어린이집상황에서 적실성 가지기 위한 조건 마련 필요</li> </ul>	
		3.2 자율장학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 간 자율적인 워크숍	5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학급 협의회 운영</li> <li>- 교사 상호간의 수업참관 및 협의 기회 확대</li> <li>- 교수·학습 계획안 공동 협의 및 자료 공동 개발</li> </ul> </li> </ul>	
			어린이집 자체연수	4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초임-경력교사간) 장학 및 우수사례 지자체간 교류 및 확산</li> <li>• 자율장학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있는 주체가 필요함/자율장학으로 인해 교사업무부담의 과한 증가는 없어야함.</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자가관리 및 정부 등의 지속적인 관리	3.3 기관 관리감독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자가 관리 및 정부 등의 지속적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마다 정부의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 (인증)</li> <li>매년 1기관 1 모니터링 실시</li> <li>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구비하고 매월 실시(필요시 매일)</li> <li>운영방침(유무, 내용, 실행), 운영방침에 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지, 부모 안내</li> <li>정책과 절차 설명서에 내우고발자 정책을 포함하여 시설 안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보장</li> <li>보육 정책 이행(응급절차/안전, 건강과 위생/운영/직원/아동)을 위한 계획 수립</li> <li>공공법적 책임(보험) 보증</li> <li>기타 법률 및 규칙 준수</li> </ul>	7	1	6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만으로 구비할 수 있는 자가 점검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다.</li> </ul>
			어린이 집의 운영방침 수립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 집의 운영방침 수립 및 안내</li> </ul>	9	0	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식적인 자가점검체크리스트가 되지 않게 꼭 필요한 항목으로만 구성/ 관리 감독 결과공개</li> </ul>
		3.4 운영절차	운영위원회 계획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li> <li>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li> <li>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함</li> <li>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예산 및 결산,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어린이집 운영, 보육환</li> </ul>	9	0	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개최 전 연령대표학부모는 해당 연령 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함. 원장의 지정에 의한 소통 없는 참여는 실효성 없음/ 운영위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 및 개선 스케줄을 반드시 알림.</li> </ul>



평가항목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3.5 기록관리	어린이집 운영 기록 관리	어린이집 운영 기록 관리	경 개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기록 보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기록부(신체발달상황, 감염병 예방접종)</li> <li>접근 가능한 개인 기록(직원이름, 주소, 위원구성, 모집 정보, 훈련, 자격 등)은 건물 내 보관</li> <li>간물에 중요한 변경, 운영계획 변경, 직원·봉사자의 학대 혐의, 다른 중요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통보해야함</li> </ul>	8	1	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관리의 3부분의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재분류해야할 듯.</li> </ul>	
			어린이집 운영 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아 입·퇴소 관리서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li> <li>어린이집 운영일지 작성 관리 (영유아 출결상황 포함)</li> <li>재무회계 관련 서류</li> <li>보육과정 운영 : 영유아 보육일지 작성 관리</li> <li>사고발생 등록 및 보고 : 사고보고서</li> </ul>	8	0	7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출결관리-출석부와 운영일지 또는 출석부와 보육일지 중 택1.</li> </ul>	
			영유아 개별 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li> <li>영유아 관찰 기록 관리</li> <li>투자 기록 관리 :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자를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투자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 (투자의뢰</li> </ul>	7	1	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서, 투약보고) 유지 ※ 투약의뢰서의 필수 기재사항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및 시간, 의뢰자 • 응급처치동의서 및 귀가동의서 기록 관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 재무회계 관련 서류 구비	8	1	8	0		
		3.6 재무회계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운영비와 시설 설치비가 연명별로 달라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생김2).</li> <li>시설 설치하는 영아의 경우에 더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li> <li>인건비 부분 상향조정 필요함. 어린이집에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하루 12시간보육) 시간외 수당을 책정할 비용이 없음.</li> <li>시설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li> <li>적절한 표준보육비용의 기</li> </ul>
		3.7 예산 및 지출의 적정·타당 성	이동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지출	7	1	7			

평가항목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비고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포함	미포함	적용가능성		불가능	
			인건비	80%	71%	70%	51%	45%	45%					준을 산출할 수 있다면 그 적용은 매우 필요함. 적정 비용 산출 및 공개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우려가 있음. 급식비, 인건비, 교재교구비와 같은 직접비의 비율만 규정하는 것도 방법임.
			교재교구비	8%	11%	11%	18%	18%	18%					
			급간식비	4%	8%	9%	13%	18%	19%					
			관리운영비	5%	7%	9%	13%	13%	13%					
			시설설치비	3%	3%	3%	5%	6%	5%					
			표준보유비용	711,300	512,800	409,200	296,400	283,400	284,200					
	3.8 기관정보 공개·제공	부모/보호자를 위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는 책자의 형태로 제공</li> <li>① 서비스 목표와 그 기능에 대한 안내문</li> <li>② 주요 정책과 서비스 질차</li> <li>③ 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주는 방법, 관리체계의 세부사항</li> <li>④ 아이들의 위해 제공하는 활동 세부사항</li> <li>⑤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의 세부 사항</li> <li>⑥ 자녀에 대한 세부 기록사항</li> <li>⑦ 불만처리 방식</li> <li>⑧ 그 외 보호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li> <li>• 보호시설에 등록하기 전에 부모(보호자)에게 행동관리에 대한 서면지침을 알림</li> </ul>											
			7	2	6	1	• 서울시의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책자 필요(시군구별)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ul>	9	0	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정보공시_보육통합시스템(이용) 운영위원회 회의결과공개, 홈페이지 또는 안내문 등을 정보공시로 대체하면 업무간소화됨.</li> <li>지도점검결과 공개 필요./ 지역단위의 어린이집 수급 현황도 공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li> </ul>					

21) 원본: 관리운영비와 시설 설피비는 모든연령이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원지 의문이 생긴.

#### 4) 보육서비스 측면-4. 건강·안전·위생

보육서비스의 건강·안전·위생 측면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보육지침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이러한 기준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이 기준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국가에서 제기된 조도, 온도 등에 있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한 후 기준안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IV-9 |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서비스 측면-건강·안전·위생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영양적 균형 및 다양한 식품 제공	양질의 신선한 식자재	포함	미포함	가능	
보육서비스측면	4. 건강·안전·위생	4.1 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li> <li>• (장애) 영유아 투약 약물 관리 및 보관 : 상온, 냉장보관 등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은 정기적(연1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li> <li>•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 및 관리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li> </ul>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li> </ul>	8	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직접조리를 회피 하기 위한 편법에 대한 지도 감독 필요(특히 가정어린이 집에서 영아부모에게 이유 식 도시락 강요)</li> </ul>			
4.2 아동 급간식 판리	영양적 균형 및 다양한 식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 (아동발달 기준 서비스 지표에 기 포함)</li> </ul>	6	2	8					
	양질의 신선한 식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재배식하지 않도록 함</li> </ul>	8	1	8					

80 81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사용 및 당일 소모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즉, 보육실은 물론 공유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을 매일 청소하며, 청결상태도 매일 점검</li> <li>•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공유공간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과 대청소 실시</li> <li>• 일과 중 대부분 현관은 잘 정돈되어 있고, 복도와 통로, 계단과 창문 등은 청결 유지</li> <li>• 모든 보육실의 바닥, 천장, 창문과 창틀, 교구장, 책상, 의자, 바구니, 사물함 뒤 편 구석진 곳 등도 청결상태 유지</li> <li>• 모든 보육실의 흥미영역에 깔려 있는 공동매트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일광 소독하여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li> <li>• 청소도구(걸레, 빗자루 등)와 보관함, 휴지통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처리하여 청결하게 유지.</li> <li>•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공유공간 포함)에 바퀴벌레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과 위생관리</li> <li>• 쓰레기 처리·관리</li> </ul>	9	8			
	4.3 위생환경 조성		실내 공간의 청결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는 영유아의 등원 전, 놀이 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 시간 후 등에 창문을 열고 환기</li> <li>채광(자연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 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 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인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한지)를 부착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등 햇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li> </ul> </li> <li>조도(인공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li> <li>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 실내에는</li> </ul> </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광과 조도에 대한 수치적인 측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li> <li>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함</li> </ul>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80 81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필요에 따라 사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미영역에서 책을 읽거나 놀이 활동을 할 때에 어둡거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를 유지</li> <li>- 어린이집 실내에 전반적으로 전등의 수가 부족하거나 조명의 조도가 낮아 어두워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를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온도 및 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li> <li>-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li> <li>-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 등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li> </ul> </li> <li>• 보육실 외 영유아가 사용하는 다른 실내 공유공간(예 : 유희실 등)도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과 세면장이 항상 쾌적하고 건조하며,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과 중 수시로 확인</li> <li>• 변기 사용 후 오물(대·소변 등) 내리기</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배변 후 뒤치리리를 못 하는 원아가 배변완료를 알릴 수 있는 벨을 부착</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등과 같은 후속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변기를 자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과 세면장에는 마른 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함</li> <li>•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li> <li>•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관리를 위해 청소 도구와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되,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li> <li>•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육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li> <li>•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오물(대·소변 등)을 바로 처리하고 변기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li> </ul>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실 바닥, 벽 및 천장 등 전반적인 조리실 공간에 대한 청결관리와 환기.</li> <li>• 조리실의 개수대 및 바닥 하수구에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대, 싱크대, 식기수납장 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li> <li>• 조리실의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등</li> </ul>	9		8			

80 81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에 쪼든 때가 없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실의 냉장고는 내부를 정기정돈하며, 음식물이나 때가 냉장고 안쪽에 묻어 있는지 매일 확인하여 세제와 물로 잘 닦은 다음 소독하고 건조함.</li> <li>•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의 주방 가전도 매일 청결하게 관리</li> <li>• 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li> <li>• 식기류는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li> <li>• 영유아용 물컵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li> <li>• 영유아용 개별 컵을 준비하거나, 청결한 컵을 여러 개 비치하고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영유아들이 물을 마실 때 같은 컵을 쓰지 않도록 함</li> </ul>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소비기한, 식품구입날짜 등을 표기하고, 유통기한을 준수.</li> <li>• 각 식재료별 보관 방법을 확인 후, 그에 맞게 냉장, 냉동, 실온 보관하며, 신임선출</li> <li>• 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하고, 우유 등과 같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식품이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함</li> </ul>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식자재 사용의 가능성 검토 필요</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실 물의 경우 영유아들이 원할 때 손 쉽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li> <li>• 영유아들이 마실 물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 꼭지와 필터는 정기적인 위생관리</li> <li>• 위생적인 음식조리</li> <li>• 위생적인 배식 과정</li> </ul>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청결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이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 씻기.</li> <li>• 보육교사는 출근한 후, 영유아의 배변 지도(기저귀 갈이) 후, 식사(수유) 및 간식 전후, 실외활동 후, 투약하기 전, 영유아의 콧물을 닦아준 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li> <li>• 손 씻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 세정제(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위생장갑을 매번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함</li> <li>• 영유아와 보육교사는 점심 식사 이후 이를 닦아야 함.</li> <li>• 어린이집과 보육실 내 설치된 화장실에 영유아가 바르게 손을 씻는 순서와 이 닦는 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하여(예 :</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씻은 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수건이나 일회용 티슈에 관한 규정 필요.</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그립판) 영유아 스스로가 올바르게 손을 씻고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격려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칫솔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영유아가 낮잠을 잘 때에는 개별 침구 사용, 오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 • 개별 침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	8	6	1		• 계절에 맞는 침구 사용 추가	
	4.4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안전하고 청결한 장난감 과 용품 관리	•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등)에 있는 플라스틱 블록이나 인형, 형조 놀잇감, 소꿉놀이 도구 등의 놀잇감을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 • 놀잇감은 재질에 따라 천으로 닦아주거나 비눗물 세척, 일광 소독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하여 관리 • 영유아가 실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놀이기구(예 : 이동식 및 고정식 기구)를 먼지나 찌든 때가 없고 녹이 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 • 영아(만 0~1세, 2세)는 놀잇감을 입으로 탐색하려는 발달 특성이 있으므로 더욱 청결하게 관리	6	1	6	1	• 각 학급별 또는 층별 장난감 소독기 비치요망(시설의 사이즈에 따라 모든 학급이 1~2개의 소독기로 모든 것을 소독하기 어려움.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에 위치</li> <li>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위치</li> <li>보육실 면적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한국</td> <td colspan="3">영유아 1명당 2.64 제곱미터</td> </tr> <tr> <td>영국</td> <td>2세 이하: 3.5 제곱미터</td> <td>2세: 2.5제곱미터</td> <td>3-7세: 2.3제곱미터</td> </tr> <tr> <td>아일랜드</td> <td>0-1세: 3.5제곱미터</td> <td>1-2세: 2.8제곱미터</td> <td>2-3세: 2.35제곱미터</td> <td>3-6세: 2.3제곱미터</td> </tr> </table> </li> </ul>	한국	영유아 1명당 2.64 제곱미터			영국	2세 이하: 3.5 제곱미터	2세: 2.5제곱미터	3-7세: 2.3제곱미터	아일랜드	0-1세: 3.5제곱미터	1-2세: 2.8제곱미터	2-3세: 2.35제곱미터	3-6세: 2.3제곱미터	9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 유해시설에 대한 구체적 제시(필요).</li> <li>공해배출업소와의 거리제한 신설도 필요</li> <li>아일랜드: 3인 택</li> <li>한국: 2인 택</li> <li>영국: 1인 택</li> <li>한국이 나쁜 수준은 아님. 영아의 신체발달을 위한 넓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너무 넓은 공간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음.</li> <li>아일랜드 연령에 따른 면적 기준이 필요.</li> <li>보육실내의 가구설비가 차지하는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좋겠음.</li> <li>우리나라의 국토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야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li> <li>한국은 영아의 보육실 면적이 좁은 것이 문제임. 경기도 0세아 전용시설의 경우 1:2 보육을 하는데 교사 비</li> </ul>
한국	영유아 1명당 2.64 제곱미터																				
영국	2세 이하: 3.5 제곱미터	2세: 2.5제곱미터	3-7세: 2.3제곱미터																		
아일랜드	0-1세: 3.5제곱미터	1-2세: 2.8제곱미터	2-3세: 2.35제곱미터	3-6세: 2.3제곱미터																	
		4.5 부지·시설설비 기준수	<p>입지조건 의 적정성</p> <p>실내외 면적기준</p>	9		7	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면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한국 (놀이터 면적 제외)</td> <td style="width: 50%;">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td> </tr> <tr> <td>물타 (내·외부 시설 포함)</td> <td>아동 1명당 5제곱미터</td> </tr> </table> </li> </ul>	한국 (놀이터 면적 제외)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물타 (내·외부 시설 포함)	아동 1명당 5제곱미터	7	1 (△22)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높이 높은 대신 혼잡비용이 증가한 문제 발생함.</li> <li>놀이터가 없는 시설도 상당히 많음.</li> <li>한국 기준 적용 시 공간면적 부족.</li> <li>장시간 보육특성에 따라 어린이집 면적의 확장이 필요함.</li> </ul>
한국 (놀이터 면적 제외)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물타 (내·외부 시설 포함)	아동 1명당 5제곱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외놀이터 면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면적기준</td> <td style="width: 50%;">비고</td> </tr> <tr> <td>한국</td> <td>영유아 1명당 3.5㎡ 보육정원 50명 이상</td> </tr> </table> </li> </ul>	면적기준	비고	한국	영유아 1명당 3.5㎡ 보육정원 50명 이상	5	1 (△)	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주민들의 소음문제 발생 우려.</li> <li>장시간 보육으로 인해 실외 활동이 중요시되므로 우외 놀이터 면적의 확장이 필요함.</li> </ul>
면적기준	비고											
한국	영유아 1명당 3.5㎡ 보육정원 50명 이상											
	보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명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에 설치</li> <li>바다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함</li> <li>모든 방(수면실 제외)은 18-22도로 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안전 관리 기준 준수</li> </ul> </li> <li>보육실의 자연광 비율</li> <li>조명은 은은한 상태 유지(직원 아동의 상태를 확인 가능한 밝기)</li> <li>수면영역 제공 : 일반 놀이 공간에서 떨어진</li> </ul>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곳' 기준을 맞추기 어려움.</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p>어저 있고, 수면을 취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들은 아이들이 자는 내 수면실에 반드시 머물러야 함</li> <li>• 개인침구</li> <li>• 영아반의 경우, 기저귀 같이 영역의 구비</li> <li>•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는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함</li> <li>• 아이 10명당 1개의 기저귀 같이 영역</li> <li>• 아이/유아방과 가까운 곳</li> <li>• 성인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곳</li> </ul>						
	조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이 잘 되도록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li> <li>•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li> </ul>	9		8			
	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을 하여야 함</li> <li>• 바닥의 미끄럼방지 장치</li> <li>• 샤워설비, 세면설비(영유아가 이용가능하여야 함)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li> <li>•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li> <li>•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li> </ul>	8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욕실의 경우 0.1세 영아반에 필요한 공간.</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다의 미끄럼방지 장치</li> <li>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li> <li>모든 2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최소 하나의 변기와 뜨거운 물과 찬 물이 나오는 세면대가 있어야 함</li> <li>수세식 유아용 변기 설치(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li> <li>아동 10명마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배치</li> <li>직원 8명당 화장실1개, 세면대 1개</li> <li>장애이용 화장실 1개</li> <li>온수는 43도 보다 낮게 설정</li> <li>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li> </ul>	9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10명당 변기1개, 세면대 1개 배치/ 직원8당 화장실1개, 세면대 1개/ 장애인용 화장실 1개=시설규모에 따라 어려움을 수 있습니다.</li> <li>장애이용화장실은 별도건물일 때 해당(하는지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놀이터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의무 설치</li> <li>옥외놀이터 시설설비 :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데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li> <li>놀이터, 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li> </ul>	9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 놀이시설의 보관 및 관리 어려움</li> <li>옥외놀이터: 보육정원 50인 이상인 어린이집 의무설치 =공간문제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시설도 있음. 대체놀이터 인장유(무에 대한 항목이 필요함)</li> <li>채원아동연령에 맞는 놀이기구 구비 여부</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용 기구를 갖춰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함)</li> <li>•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li> <li>•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li> </ul>						
	비상재해대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출입구 확보</li> <li>• 안전한 유리 성분과 설치기준 준수</li> </ul>	9		7	1		
	모든 출입문 및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 내부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함</li> <li>• 모든 자재, 마감, 장난감은 무연으로 인증</li> <li>• 커튼 등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함</li> </ul>	8		7			• 창문의 추락방지설비
	어린이집 내부 마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 내부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함</li> <li>• 모든 자재, 마감, 장난감은 무연으로 인증</li> <li>• 커튼 등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함</li> </ul>	9		7	1		
	실내장식물과 커튼, 키켓의 방염성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튼 등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함</li> </ul>	8	1	6	1		• 커튼 뿐 아닌 꾸밈이나 장식품 등이 아닌 경우가 많음. (ex 모빌 및 환경구성달력 등)

88 89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위험을 사전 평가하고 중요한 변화나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된다면 검토해야함</li> <li>• 보육실은 영유아가 하루일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므로 보다 안전하게 유지, 관리</li> <li>•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li> <li>•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을 짧게 정리</li> <li>• 보육실 내 전기콘센트(이동식콘센트 포함)는 안전덮개를 덮고, 전선, 줄 등은 길게 늘어져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li> <li>• 보육실 내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은 적절한 보호 장치</li> <li>•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li> <li>• 교구장은 영유아가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정적으로 놓여 있으며,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li> </ul>	6	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언급은 어떨지요?</li> </ul>
		4.6 안전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의 안전관리</li> </ul>	8	1	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li> <li>• 보육실 내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li> <li>• 보육실 내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통해 조절하도록 한다.</li> <li>• 보육실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여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고르게 설치</li> <li>• 아이들이 열수 없게 만든 자물쇠, 문, 창문, 서랍장 등</li> <li>• 가구나 벽에 날이 첨가되지 않은 페인트 사용</li> <li>• 실외나 습한 날이 공간을 위한 미끄럼 방지 바닥</li> </ul>							
	실내외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 관리</li> <li>•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예 : 각 보육실 문, 화장실 문, 현관 중간문 등)에는 손 끼임방지 장치 설치 및 관리</li> </ul>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불가를 붙인다해도 글을 읽지 못하므로 의미없음.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까지가 적절함.</li> </ul>		

80 81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창문 보호대를 설치</li> <li>• 실내시설 및 설비에 고장 등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접근 불가’ 혹은 ‘수리중’ 등의 표시를 붙인 후,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즉시 수리</li> <li>• 옥외놀이터 바닥에는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등을 안전하게 설치</li> <li>• 어린이집 건물의 외부에 놓여있는 에어컨 실외기, LPG 가스통 등은 영유아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거나, 영유아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안전덮개 설치</li> <li>• 어린이집의 축대는 안전하고, 맨홀 뚜껑은 잘 덮여 있으며, 웅덩이, 요철, 녹슨 부분, 감전 위험물 등이 없도록 함</li> <li>• 어린이집의 마당이나 구석 등에는 사고 유발 위험이 있는 적재물이 없도록 하되, 만일의 경우에는 영유아가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li> <li>• 영유아의 실외놀이 시 놀이공간에 차량 접근을 차단</li> </ul>					
	조리실 설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분리되어 설치(분리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접근 막을 수</li> </ul>	9		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있는 안전장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잇감은 영유아가 혼자 활동에 몰입하거나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유지·관리</li> <li>•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파손되지 않아야 함</li> <li>• 모든 놀잇감은 유해색소가 첨가되거나 유해색소로 표면이 도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li> <li>• 천장이나 벽에 모빌 등을 부착한 경우, 영유아가 잡아 당겼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li> <li>• 끝이 깨진 사기그릇, 안전 처리되지 않은 깡통 등은 위험하므로 놀잇감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조개껍데기와 같은 식물자료를 제시한 경우 깨지거나 날카롭지 않도록 주의</li> <li>• 놀잇감 보관함이나 바구니 등도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li> <li>• 실내외 놀잇감에 파손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후 즉시 수리</li> </ul>	8	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인증 장난감기준으로 제시</li> </ul>
			<p>안전관리</p> <p>실내외 놀잇감의 안전관리</p>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관리	비상재 해대비 시설 관리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li> <li>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li> <li>소화용기구 관리(소화기 및 스프링클러)</li> <li>비상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시설설비와 달리 실내 기준임</li> </ul> </li> </ul>	6	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의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함. 사용하지 않는 비품이나 기물 등을 자유롭게 폐기하지 못하고 보관해 야하는 어려움도 있음.</li> </ul>
			비상재 해대비 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li> <li>전기 소켓은 가리거나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함</li> <li>매년 전기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함</li> </ul>	9	0	7	1	
			전기제품의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품의 종류별 사용(유효)기한 표기 및 관리</li> </ul>	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봉 후 사용기간 설정, 약품의 경우 개봉기한 표시</li> </ul>
			비상약품의 구비 및 관리	<p>의약품재료 : 붕대, 거즈, 소독수, 삼각봉대, 탄력붕대, 갈, 가위, 핀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p> <p>외용제: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p>	7	1	7	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전염성 질환에 대한 조치 및 예방 관리	투약의 투약이 약 관리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li> <li>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수시로 제공 : 감염병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안내</li> <li>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상온, 냉장보관 등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도록 함</li> <li>약물 치료와 관련된 부모와의 논의</li> <li>의약품은 원봉용기에 보관하고 알기 쉽게 라벨링, 아이들 접근 불가</li> <li>부모는 의약품을 관리 할 수 있는 사전 서면 승인 제공</li> <li>약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li> </ul>	8	1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염병 발생시 등원제한에 대해 학부모에게 충분한 고지</li> </ul>	
	4.7 아동의 안전보호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실의 환경은 보육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li> <li>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도 가능한 보육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li> <li>기동 뒤나 계단 밑과 같이 구석진 곳은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li> <li>영유아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보육실 밖으로 나갈 때는 보육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영유아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li> </ul>	8	1	7	1		



80 81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이를 살펴보아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남겨두고 일정 시간 이상 보육실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우기</li> <li>• 영유아가 실내외놀이터에서 고정식 및 이동식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성인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li> <li>• 산책이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을 위해 영유아와 함께 어린이집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교사의 보호 하에 있도록 주의</li> <li>• 영아(만 0~1세, 2세)는 유아에 비해 성인의 눈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교사는 더욱 주의하여 영아를 보호</li> </ul>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자체 규정(필수 기재사항 :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부모가 희망한다면)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도록 함,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 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포함)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li> </ul>	8	1	7	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 (별수기제사항: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를 받아야 함</li> <li>모든 영유아(차량 이용 영유아 포함)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전화나 서명으로 확인</li> </ul>						
	어린이 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는 적절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li> <li>「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는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li> <li>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li> <li>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있는 성인(원장, 보육교사 등)이 동승</li> <li>보육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li> <li>운전자는 영유아가 안전하도록 서행하며,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운행 중 영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지도</li> <li>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li> </ul>	8	0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구공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li> <li>차량안전점검검실시는? 보육사업안내에 내용 명시</li> <li>차량운행을 안하는 것이 최선임.</li> <li>체중에 맞는 카시트 반드시 착용</li> <li>차량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안 검토 필요</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불가능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 주거나 옷자락이 끼거나 밟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비가 올 때는 유아의 우산을 잡고 펼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활동시 부모의 서면 동의 필요</li> <li>적십자 구조법이나 YMCA 수중 교육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 향시 대기</li> <li>아이들이 사용할 때 어른이 항상 대기</li> <li>직원 대 어린이의 비율: 유치원 및 그 이상 1:8 / 5살 1:5 / 4살 1:3 / 3살 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활동에 대한 부분은 특별활동으로 넣어 그 특별활동을 이용할 시 직원 대 아동비율이 고려되어야 함. 현재의 비율로는 수상활동은 어렵고, 현재 여름캠프 활동시 보면 교사대 아동비율이 1:20인 것이 현실.</li> <li>대체인력 필요.</li> <li>수상활동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li> <li>수상안전에 대해서는 참신하고 필요한 듯! 어린이집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는데 관리인원부족으로 인해 문제발생.</li> </ul>
		수상활동시 동시 수상 안전			6	3	6	2	
	4.8 비상시 대처방법 및 질차 수립	비상시 대처방안 마련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대미시설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함.</li> <li>「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li> </ul>	9	0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시 대응 방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매뉴얼(응급처치방법, 병원이송, 부모 응대법,</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다(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완강기는 적합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li> <li>•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 각 층마다 최소 1개씩 구비, 눈에 잘 띄는 곳, 소망약제가 충분, 압력이 정상범위 내</li> <li>- 유도등: 비상시 어린이집 내 모든 유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li> <li>- 비상구: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안쪽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어야함,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 등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음</li> <li>• 보육교직원은 대피시설과 설비를 바르게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li> </ul>					<p>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매년 필요</li> </ul>

80 영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랍직하며, 실습 등을 통해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안 숙지(비상 시 대처방안의 필수기재사항 : 대피요령, 보육교직원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li> <li>• 대피 출구를 나타내는 건물 도면(배치도)</li> <li>• 센터 내에 탈출 경로를 나타내는 신호체계</li> <li>• 응급처치를 할 줄 알고 응급처리 최신 방법을 익힌 직원이 최소 한명 이상</li> </ul>					
	4.9 사고예방 및 처치	안전교육 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li> <li>•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li> <li>•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이 있으며, 이외 안전한 보행법,</li> </ul>	8	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의 강사의 전문성 확보, 교육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필요.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는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영유아가 보다 쉽게 안전의식을 내면화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li> <li>원장은 영유아의 안전교육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안내하며, 희망하는 보호자가 안전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li> <li>어린이집에서는 소방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li> <li>정기 소방훈련 이외 비정기적으로(불시) 다양하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li> <li>안전교육과 소방(대피) 훈련은 보육일지 등에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li> </ul>					

22) 원본에 △로 표기함.

## 5) 지역사회 연계 측면-5.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계 측면에서 돌봄 공동체 의식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정착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어린이집과 협력기관이 정해져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원연계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중심의 MOU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현재 지역자원, 예를 들면 보육반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자원연계의 효율화가 대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집-가족간 연계 방안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유아 발달 증진을 위한 많은 교육이 가족과 연계 및 일원화가 필요한데 학부모 참여가 쉽지 않아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육구를 지닌 가족의 경우 어린이집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가족-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표 IV-10 |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지역사회연계측면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여부	미포함	가능	불가능			
지역사회연계측면	5.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5.1 상호작용	영유아와 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관찰, 개별면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영유아의 적응문제나 영유아 가족의 당면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li> <li>다른 영유아와 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안내.</li> <li>영유아의 적응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와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돕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논의</li> <li>영유아와 가족의 특정 문제를 도와줄 전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예 : 서비스 종류, 전화번호, 비용 등)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모에게 안내해주어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줌</li> <li>어린이집은 부모가 영유아의 문제나 가족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전문기관, 주민센터, 구청 또는 전문가(예 : 의사,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부모와 논의</li> <li>특수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협조하여 함</li> </ul>	8	1	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부모에게 안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함.</li> <li>가족문제 지원은 관련 시스템 구축등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용지원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야함.</li> <li>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영유아가 가정으로부터 가정폭력 내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인지될 경우 행동요령 숙지</li> </ul>



80 81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p>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들이 가정과 어린이집 외에 지역사회 환경에서 보다 친밀하게 이해하도록 어린이도서관, 병원, 경찰서, 초등학교, 대학, 주민센터, 공원 관리사무소, 소방서 등의 가까운 장소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li> <li>• 영유아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li> <li>•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있는 공통된 자원뿐 아니라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음</li> </ul>	7	2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반장 활용을 통한 자원연계 및 정보제공</li> <li>• 어린이집과 협력기관이 정해져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계</li> </ul>	

## 6) 보육기관의 공공성 측면-6.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7. 보육서비스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기준에 따른 3차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어린이집 운영이 아동중심보다는 부모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둘째, 한부모, 다문화, 장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보육이 가능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과 그에 따른 보육과정 마련 및 환경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관의 책무성 차원에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상시화 및 부모의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도점검 등 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과 오히려 그에 따른 간소화가 필요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방안을 통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IV-11 | 델파이 3차 조사 결과: 보육기관의 공공성 측면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보육기관의 공공성	6.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6.1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평등성	6	3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의 욕구를 들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li> <li>• 한부모, 다문화가정, 장애부모가정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 접근성 우선화보</li> <li>• 별도 담당자가 있기 전에는 교사 업무과중으로 어려움 발생 가능</li> <li>• 원내절차 외에 원외절차도 마련 필요성</li> </ul>
		6.2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상시화	6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 방법이 마련된 후 검토 가능</li> <li>• 평가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보다는 영역에 따른 보육 전문가가 보육기관과 일대일로 컨설팅을 통해 수정보안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li> <li>• 어린이집별, 자치구별 평가 기준을 구분 적용, 자치구별 평가기준에 따른 상위 어린이집은 인센티브 부여</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을 희망하거나 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효과적인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li> </ul>
			개방성	5	2	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가능시간을 제한해 두어야 운영의 어려움이 없을 것</li> <li>• 점검 방법이 마련된 후 검토 가능</li> </ul>
			균형있는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환경에 따른 맞춤보육</li> <li>• 자치구청의 역할이므로 어린이집 제외</li> <li>• 지역의 국공립+직장+법인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비율을 단계별로 몇%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수급계획시 포함</li> </ul>
	7.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7.1 부모(보호자)의 보육서비스 욕구와 선택이 용이한 기관 접근성 강화	자치구별 인가 조건(정원충족률 등)의 합리적인 운영	7	2	7	1	1	
		7.2	평가인증	8	1			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포함여부		적용가능성		비고
				포함	미포함	가능	불가능	
		부모(보호자)의 선택이 가능한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확대	또는 모니터링 통과율 어린이집의 투명성 및 신뢰성 강화 운영					
			예: 학부모 부담금 등 재경, 양질의 보육교직원 확보, 맞춤형보육 등	8	1		1	

## 제 3절 국공립어린이집 정착화 방안을 위한 현장전문가 조사결과

### 1. 아동발달의 적정성

#### 1) 아동발달에 적합한 시설설비

아동발달에 적합한 시설설비 마련에 대해서 유희실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Plus 요인으로 압도적이었다. 어린이집 인허가 기준의 조정 필요, 예를 들면, 보육시설의 내부공간에 대해 유희실의 면적을 총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실제 보육이 이뤄지는 보육실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어린이집의 필수 공간 구성에 유희실(실내 대근육 공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은 필수 공간 구성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수공간으로 현 보육실 이외에도 유희실(실내 대근육 공간), 교사실, 보육실내 화장실 및 세면대 공간 확보 및 설치, 실외놀이터(50인 이상만 해당) 등이다. 하지만 이들 공간에 대한 각각의 기준 없이 보육실과 전유공간에 대한 면적기준만 있어 어린이집에 따라 유희실은 각각 상이하다. 그리고 유희실을 보육실로 활용하는 어린이집도 있어 분리된 공간 마련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실을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여 교사의 신체구조에 맞는 시설에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외에도 교사실의 상담실 포함 또는 별도 공간 마련 등이 학부모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현 국공립어린이집이 노후시설이 많아 이에 대한 재건축 및 보수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특히 비상재해대비시설에 대한 개정으로 현행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보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감가상각비에 의한 재정 확보 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쯤 잦은 보수로 떼우기식은 Minus 요인으로 제기하였다.

■ 표 IV-12 ■ 추가되어야 할 필수공간 의견수렴 결과

추가되어야 할 필수공간	원장		보육교사	
	N	%	N	%
유희실 (살내 대근육 공간)	19	61.3	12	63.2
교사실(별도공간의)	16	51.6	6	31.6
놀이터(실외)	9	29.0	6	31.6
식당	8	25.8	3	15.8
양호실	5	16.1	3	15.8
장애통합공간	2	6.5	0	0.0
자료실	2	6.5	1	5.3
영아 전용 낮잠공간	1	3.2	0	0.0
학부모 참관실	0	0	5	26.3

## 2) 아동발달에 적합한 급간식

아동발달에 적합한 급간식에 대한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영영아반의 경우 발달에 맞춘 이유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Plus요소로 가장 압도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외에도 웰빙간식 지급 등도 제기되었다. 반면, 현재 식자재 공동구매 폐지 등의 Minus 요소도 제기되었다.

웰빙간식은 아침 등원 후에 바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조리가 필요 없는 간단한 견과류 혹은 콩, 멸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맛별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가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등원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지만, 영아의 경우 콩과 몇몇 견과류들의 크기가 작아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동발달을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Minus 요소로 지적해준 식자재 공동구매는 지역사회 내 재래시장과 지역 상권에 비해 공동구매 식자재 가격이 높고,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아동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아동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원장 및 보육교사들의 응답을 정리한 결과 아래 <표 IV-13>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제공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충분히 아동의 발달에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프로그램, ‘생태프로그램’, 연령별/발달별로 좀 더 세분화시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재구조화가 Plus요소로 제기되었다. 이는 앞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표준보육과정과 평가인증지표, 누리과정으로 인해 각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 역량이 줄어들고, 획일화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특수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시간의 확보를 제안하였던 것과 같이, 아동 발달 특성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 또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보육프로그램’, ‘적정보육서비스 모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과가 모아졌다. 구체적으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만 5세반의 초등학교 준비 지도서,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방법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표 IV-13 】 아동발달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 내용 의견수렴

의견	원장		보육교사	
	N	%	N	%
1. 현행(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유지	4	12.9	4	21.1
1-2 현행에 몇 가지 추가.	8	25.8	11	57.9
2. 각 어린이집의 특성/자율적 역량 강화	3	9.7	6	31.6
3. 타 보육 프로그램의 운영(생태교육 등)	6	19.4	1	5.3
4. 신 서울시 적정프로그램 개발 필요	5	16.1	2	10.5

#### 4) 아동의 연령 및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비

아동의 연령, 그리고 보육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비에 대해서 현재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지원금의 액수가 각 구마다 다르고, 교재교구는 현재 1인당 금액이 책정되어 상한액이 정해져있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점이 제일 대두되는 부분은 영아 교재교구에서 나타났다. 영아의

발달 특성상 교재교구가 입에 들어가도 안전한 교재교구를 구입해야하는데, 천연재료나 무해한 목재를 이용한 영아용 교재교구를 구입하기에는 현행 예산책정방식으로는 모두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하고, 보육주체에 알맞은 교재교구를 구비하기보다 가격에 맞춘 교재교구, 혹은 세트로 일괄구매가 가능한 교재교구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보육이 주가 되고 교재교구가 보육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재교구를 활용할 수 있는 보육주체를 선정하여 보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이에 대해 각 발달단계에 필요로 하는 교재교구를 정한 후 이에 대한 비용 산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 5)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의견은 현행비율에 대해 축소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원장과 보육교사 의견이 대동소이하였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기준을 질문한 결과, <표 IV-14>에서 볼 수 있듯이 만 0세의 경우 1:2, 만 1세 1:3, 만 2세 1:6, 만 3세 1:12, 만 4세 이상 1:15 등으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4】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기준 의견 수렴 결과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기준	N	기준	N	기준	N	기준	N	기준	N
현장전문가 의견	1:2	14	1:2	3	1:3	1	1:3	1	1:10	2
	1:1	1	1:3	7	1:5	8	1:7	1	1:12	2
			1:4	7	1:6	5	1:10	5	1:15	9
			1:5	1	1:7	1	1:12	9	1:16 이상	2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담임교사뿐 아니라 보조교사 등을 포함한 통합반 운영(2담임제 등)에 대한 의견과 1 class 1담임제로 2담임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단, 보조교사가 반별 배치 아니면 현재

비담임교사 1명 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이후 제기될 담임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제한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에 따른 기대효과는 영유아들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수정 및 개별적 보육이 용이하여, 보다 아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개별적 특성과 성향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이고, 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아동에 대한 교사 비율(1:3)도 1명씩 축소되어야 하며,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비율이 개별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장애통합 어린이집 운영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 6)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에 대해 응답자들은 ‘장애가 있는 아동’ 혹은 ‘다문화 가정의 아동’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응답을 하였다. 먼저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행동 접근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특수교사’를 배치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장애를 진단, 측정,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각 어린이집에 상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순회지원프로그램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는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경계성 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 즉각적으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전문가들이 직접 아동의 부모와도 전문적인 진단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면, 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의 특별한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에 대한 해결책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욕구해결을 위한 각 어린이집의 접근사례에 대해 관할 구 내 어린이집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등의 절차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 아동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

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는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전체 보육교사에게 필요하고 이에 대한 관찰, 대응, 개입, 부모와의 협력 및 소통 등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 7) 시간연장형 보육과 일시보육

2013년 시간연장형 보육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 의무시행사항으로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시간연장 보육이 정기적, 주기적 욕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학부모 개인사정에 의해 당일 오후 요구를 받는 경우 당직교사 배치문제, 업무가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첫째, 당일 시간연장 보육을 신청하게된 계기와 사유에 대해 타당할 경우에만 시간연장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간연장 보육을 책임질 지역구 내 거점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로써 질 높은 시간연장 보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보육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거점형 어린이집까지의 이동수단과 방법, 또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야하는 문제점, 애착형성 및 불안증세에 대한 대응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또한 일시보육에 대해서도 아동의 경우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전담인력이 아닌 구조에서는 오히려 아동에게 불안, 부적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 2. 보육교사 측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 1)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보유 및 지원

보육현장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어린이집 직무 특성상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보통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 타 직종과는 달리 점심시간에 업무가 오히려 가중되

는 보육교사들의 노동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8시간(점심시간도 일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포함)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보육교사들은 추가적으로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대한 요구를 덧붙였다. 보육교사들의 휴가를 학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가사용을 은연중에 거부하거나 개인사정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해야하는 어린이집의 관례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원장들은 행정지원 교직원 및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를, 보육교사는 행정절차 및 행정서류를 통일하거나 간소화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2)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연차별, 직급별로 실효성있는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최근 붙어진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문제에 대해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격기준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 3) 자율장학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자체연수나 전달교육을 통하여 동료집단 간 정보공유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율장학은 내용과 구성에 대해 기존의 것과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이뤄지는 보육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교사들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율장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히려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보육교사들은 또 다른 업무과중으로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현 수업에 대한 코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는 의견이었다.

#### 4) 아동의 행동지도

아동의 행동지도에 대해 현재 행동지도와 아동학대의 정의와 경계가 모호하여 보육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행동지도를 위한 지침서’가 마련되어 기준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이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행동지도가 필요한 ‘문제행동’의 정의, 그리고 경계에 있는 행동을 검사하는 척도를 포함하여 이를 지도하는 지침서를 포함하기를 기대했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행동이 혹 장애나 가정의 문제, 정서심리상의 문제를 동반할 경우 타 전문기관으로 위탁,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 5)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급수별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급수에 따라 담임교사와 보조교사의 자격을 구분하고, 인적성검사를 자격요건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교직이수를 통해 자격요건 강화를 주장하였고, 보육교사들은 직급별, 경력별, 학력별 급수별로 구분하는 호봉제도를 통해 자격요건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채용 전에 ‘유급수습기간’ 즉, 인턴기간을 두어 충분히 자격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 6) 보육교직원의 채용조건

공통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는 조건에 ‘인적성검사’를 필수로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보육교사자격 급수에 따라 2급 이상을 채용하고, 보육도우미에 한해 3급을 채용하는 세부 조건을 제시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일관성 있게 ‘인턴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보육교사(담임)로 채용되기 전 유급수습기간을 통해 예비담임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 표 IV-15 】 아동발달을 위해 프로그램 개선 내용 의견수렴

기준	구분	내용	원장	교사	
2.1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보유 및 지원	공통 의견	• 주 40시간 근무의 현실 적용 불가능 • 점심시간(휴식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직종특수성 인정해야함 • 휴게시간(1시간)확보 불가로 인한 8시간 근무 인정하여 5시 퇴근해야함.	23	18	
		• 탄력근무제 시행	4	2	
		• 시간외 수당의 현실적인 지급방침마련	10	3	
	원장	• 비담임 및 행정지원(회계담당) 교직원 채용 및 인력비 지원해야함	8		
		• 원장도 직무특성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해야함	2		
	보육 교사	• 연월차 휴가에서 국경일 제외하고 대체휴가지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처벌해야 함 • 연월차를 개인사정에 의해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시스템 필요. (생리휴가 포함)		18	
		• 원장재량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규정을 통일		4	
		• 행정적인 작업을 통일하여 간소화하거나 인력배치 필요		3	
	2.2 보육교직원 의 전문성 강화 교육	공통 의견	• 교사들의 전문성강화 교육 뿐 아니라 인성강화교육이 필요함.	10	5
			• 연차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내용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승급, 보수교육이 되었으면 함	17	7
원장		• 원장도 리더십교육 및 운영에 대한 교육이 연차별로 있어야함	3		
보육 교사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받을 때 대체인력 지원필요.		9	
		• 보수교육신청 현직교사에 한해 자동 신청되도록		3	
		• 자격기준 및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기준강화필요		4	
2.3 아동의 행동지도	공통 의견	• 문제행동에 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야	5	5	
		• 구체적 사례를 위주로 실질적 교육해야	4	4	
		• 문제행동을 (진단, 파악, 부모상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함	10	3	
	원장	• 지역사회연계 및 전문기관 연계 필요함	15		
	보육 교사	• 전문가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관리.		11	
		•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임.		3	
2.4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공통 의견	• 사이버교육 및 교육원에서 자격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필요	11	10	
		• 담임자격은 1급,2급만. 3급은 보조교사 후 시험을 거쳐 담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장치가 필요	28	8	
		• 보육교사의 인적성검사 필요함	7	8	
	원장	• 교직이수필수지정	7		
	보육	• 담임자격요건과 부담임 자격요건이 달라야함		8	



기준	구분	내용	원장	교사
2.5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교사	• 직급별, 경력별, 학력별, 급수별 호봉표가 달라져야함		3
		• 인턴제도 도입되어 유급수습기간 두어야함		5
	공통 의견	• 채용은 2급 이상으로	4	5
		• 도우미는 3급으로	4	3
		• 채용시 인성검사필수로하는 국공립만의 자격기준 필요함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같은 임용교사 등)	7	8
원장	• 원장채용시에도 보육교사 경력 5년 이상 포함되어야	2		
보육 교사	• 채용 전 유급 인턴기간 거친 후 채용.		2	

### 3. 보육서비스 측면: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 1) 아동관리

아동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한 어린이집의 관리의무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일본, 스웨덴)의 사례처럼 영유아의 출생과 연령에 따라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발달사항에 대한 내용을 국가 혹은 지역 보건소에서 자료를 일괄 관리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관리에 대해서도 2~3개소만 신청 가능하도록 대기신청 횟수에 제한을 두는 방법과 자치구에서 일괄 수집하여, 입소가능시기에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배치하는 등의 시스템 보안을 제시하였다.

#### 2) 기관 관리감독

현재 어린이집은 많은 주체에 의해 지원금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주체들이 그만큼 늘어난 상태이다. 같은 내용의 서류를 감독주체에 따라 변경과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같은 내용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경



우도 있다. 또 너무 잦은 관리감독으로 인해 보육준비보다 감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들과 원장들은 관리감독의 주체를 일원화시키고 감독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 3) 운영절차

운영절차에 대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한 의견과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재 위탁 시 원장의 포상에 대한 점수 항목을 삭제해야한다는 의견 이외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절차단계가 늘어감에 따라 법인과 구청 및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현재의 운영절차가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작합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 행정보조 사무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회계프로그램과 예산과 지출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된다면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현재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련한 공통 서식들과 재량 수정 가능한 서식들이 포함된 운영요람 제작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경우 현재의 운영절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의견 외에는 특별한 응답이 없었다. 만약 회계사 1인이 3~5개 구립어린이집을 집중하는 관리방식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반대 의견이 높았다. 각 어린이집 마다 1인 배치하지 않는다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 4) 기록관리

기록관리의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보육현장에서 관리해야 할 문서들이 너무 많고, 협소한 공간에서 문서관리가 차지하는 공간비중이 크다보니 이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었다. 또 문서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기록관리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필수 문서들의 간소화, 일원화 및 전자문서관리가 먼저 선행된다면 당연히 간소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 5) 재무회계

재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업무간 소화로 인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원장 3명)이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사용과 카드사용에도 수기로 지출증명서류를 관리해야하는 이중부담에 대해 간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재무회계에 대한 교육과 지시사항은 담당직원과 관리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일관되게 지도점검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무회계에 대한 부분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임 교사 외 다른 보육교사들의 의견은 없었고, 응답을 했던 주임교사들의 응답은 원장의 응답과 같이 간소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6) 예산 및 지출의 적정, 타당성

보육 지원 예산에서 영아반 담당 교사의 인건비보조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호봉이 높은 교사가 무조건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건비보조의 차등지원문제는 보육교사들의 장기근속 및 높은 호봉의 경력 많은 보육교사들의 채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원장 위크숍에서 보육교사들의 근속을 장려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호봉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나 기타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7) 기관정보 공개 및 제공

현재 기관의 정보가 공개되어 학부모들의 신뢰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그 외의 의견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공개되어, 어린이집 간의 서열화가 형성되었고 원장의 역량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되는 기분을 느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대안으로는 평가인증 통과여부만 개시하는 방안과 점수별로 등급을 나누어 공개하는 방안(최우수, 우수, 통과)이 논의되었다. 또 어린이집의 운영정보를 공개 및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보 공시에 대한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 4. 보육서비스측면: 건강, 안전, 위생

### 1) 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아동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지표 3-1 아동관리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에는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해 교직원의 우울증 및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병명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육교사의 응답에서는 영유아의 접촉이 많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염병 및 독감 등의 예방접종에 대해 무료접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아동 급간식 관리

아동의 급간식에 대한 의견은 크게 식자재에 대한 의견과 구매경로, 1인당 급식비의 인상, 조리방법 및 급식환경개선에 대한 응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자재에 대한 응답 중에서 영유아의 영양의 균형에 맞게 친환경 재료 및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2명으로 전체 응답자(원장)의 38.7%의 응답자가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친환경 재료가 전체 식자재에 차지하는 비중에서는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1명,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1명에 그쳤다.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에 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급식비는 1인 1,745원이다. 현재 보육현장전문가들은 누리과정의 운영비 등으로 급간식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상적인 급간식비용으로 2,000원~2,500원이라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조리방법이 서구화 되고 있는 식단을 친환경적 전통식단으로 지향해 가야한다는 의견과 급식을 배급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위생환경조성

위생적인 보육환경을 위하여 공기청정기나 손소독제 구비 및 정기적 내부소독과 교재교구 소독에 대한 관리가 각 원에서 적절히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장에서 주기적인 소독 외에 보육환경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는데, 이는 영유아가 활동하는 보육시설의 공기 질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없고 ‘자주 환기한다’ 혹은 ‘청결하게 유지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이 평가인증 지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에서는 이러한 위생환경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물리적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의 설비 보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4)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

교재교구의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육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소독 및 세척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손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현장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특히 구입한 영아의 교재교구가 영아의 발달 특성상 입에 들어가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친환경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아 역시 교재교구의 공정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함유 및 성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한 교재교구 구입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에 교재교구에 대한 필수 구입조건이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는 운영비 부담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5) 부지, 시설설비 기준준수

어린이집 시설 부지와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준수에 대해서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정원에 맞게 설비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장전문가들은 오래된 어린이집의 경우 현행법상의 설비와 면적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을 증축, 개축 혹은 지역구 내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6) 안전 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보육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대해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 건물의 연한과 비례하는 보수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물리적 환경에 대해 신속한 보수를 위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여 전담 보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 되었다. 또한 시간연장 보육을 진행할 경우 늦은 시간, 약자들만 있는 곳으로서 보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귀가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 7) 아동의 안전보호

보육현장전문가들은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이 시설의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보호,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전염병 및 건강에 대한 보호, 외부 유해환경에 대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안전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안전매뉴얼’을 기반으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각 사례에 대해 어린이집을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이 공유하여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8)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 수립

비상시 대처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비상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육현장전문가들은 ‘서울시 적정 보육서비스 모델’에 대해 비상대피훈련이 더욱 강화되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비상훈련’에 대한 사례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9) 사고예방 및 처치

사고예방과 대응, 처치방법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절차가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수방법이나 자료를 통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에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직원들의 민감성과 전문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 5. 지역사회측면: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 1) 상호작용

어린이집이 영유아 뿐 아니라 영유아의 가족의 당면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 등의 소개를 받아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현재의 수준에서 ‘적정 보육서비스 모델’은 지역인사와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하는 등의 적극적인 수준의 상호작용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는 노인복지관의 동화구연, 한자 프로그램 등을 신청하거나, 보건소, 동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은 기관과의 연계도 이루어진다. 앞으로는 가족을 대상으로 두고 다양한 자원연계를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해가야 하며, 영아들의 지역사회연계 활동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 6. 보육기관의 공공성: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 1)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평등성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응답자들은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보다, 아동의 가족상황과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아동이 부모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문서를 조작하거나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른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별히 장애아동의 경우, 자신의 주거지 근처의 어린이집이 없고, 학교진학을 원하더라도 거주지 인근에 장애통합지정 어린이집이 없다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이를 도와야할 가족들의 어려움을 꼽았다.

### 2)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상시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를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는데, 각 내용이 매번 변동이 있으나 바뀌는 내용에 맞게 개선하거나 보완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장학제도와 보수교육 및 재교육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지하되, 다양한 내용과 직급별, 호봉별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 7. 소결: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

델파이 조사결과,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로 아동측면의 1. 아동발달 증진, 보육교사 측면의 2.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보육서비스 측면의 3. 운영의 투명성 확보, 4. 건강·안전·위생관리 강화, 지역사회 연계측면의 5. 돌봄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기관운영의 공공성 측면의 6. 보육서비

스 형평성 제고 및 기관 책무성 강화, 7. 보육서비스기반 확충 및 접근성 제고 등의 7가지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으로 37개 기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7의 경우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및 접근성은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기준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의 목표로서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기준과 수위가 상이하다는 문제제기로 여기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 원칙과 36개의 기준을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으로 마련하였다.

【표 IV-16】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아동 측면	1. 아동 발달 적정성	1.1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설비
		1.2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
		1.3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1.4 아동의 연령 및 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 구비
		1.5 교사 대 아동비율
		1.6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
		1.7 시간연장형보육·일시보육
보육 교사 측면	2. 보육교직원 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2.1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보유 및 지원
		2.2 보육교직원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2.3 보수교육
		2.4 역량강화 교육 (자율장학 등)
		2.5 원장의 역할과 리더십
		2.6 아동의 행동지도 및 대응성
보육서	• 보육서비스 공급의 적정 기준에 의한 예산	3.1 아동관리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비스 측면	<p>3. 운영의 투명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립 및 그에 따른 지출의 투명성 확보</li> <li>어린이집 운영 및 예·결산 결과보고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li> <li>재정운영에 대한 내외부 점검체제 마련 및 책임 운영</li> </ul>	<p>3.2 기관 관리감독</p> <p>3.3 운영절차</p> <p>3.4 기록관리</p> <p>3.5 재무회계</p> <p>3.6 예산 및 지출의 적정·타당성</p> <p>3.7 기관정보 공개·제공</p>
	<p>4. 건강·안전·위생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시설은 각 아동마다 필요한 건강 관리 목록(예방접종, 알러지, 편식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함(응급처치, 혐오인 제거-흡연, 위험물 등)</li> <li>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내·외부에서 어린이가 활동을 하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할 시, 정 부기준안에 의거하여 처리함</li> <li>아동이 자고 싶어하거나 쉬고 싶어 할 때 이를 들어 줌.</li> <li>설비가 위치한 건물은 건실하고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보육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함.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에게 친밀한 시설이어야 함.(쾌적한 온도, 위생, 디자인, 시설구조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아동관점으로 구성)</li> <li>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li> <li>보육시설 내에 있는 아동을 항상 관리 감독(supervise) 함.</li> <li>직원은 관련 건강 법규 및 안전 법규를 숙지함.</li> <li>보육시설 실내/실외에 확인된 위험을 평가한다. 위험이 감지된 장소/시설을 제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위험 수준을 반드시 적합한 안전한 상태로 낮추어야 함.</li> </ul>	<p>4.1 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p> <p>4.2 아동 급간식 관리</p> <p>4.3 위생환경 조성</p> <p>4.4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p> <p>4.5 부지·시설설비 기준 준수</p> <p>4.6 안전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p> <p>4.7 아동의 안전보호</p> <p>4.8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 수립</p> <p>4.9 사고예방 및 처치</p>
지역 사회 연계 측면	<p>5. 돌봄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부모교육</li> <li>지역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 및 자원 연계</li> <li>지역의 요보호아동 및 유해 환경 등에 대한</li> </ul>	<p>5.1 돌봄 문화 구축</p> <p>5.2 체험학습</p> <p>5.3 상호작용</p>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지원 및 안전환경 노력	5.4 지역사회 자원 연계
보육 기관의 공공성 측면	6. 보육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기관 책무성 강화	•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본인이 필요한 보육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얻음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합의된 서면 계약을 작성함 . 아동 발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으며, 어린이가 참가하는 활동, 성과, 발달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함께 함. • 해당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동등한 기대와 존중을 받음.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불만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 불만에 대해 보육 시설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가 자신의 불만사항이 반영되어 수정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낌
		6.1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평등성
		6.2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상시화
6.3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 채널 상시화		

# V

##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제 1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본원리

제 2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에 의한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제 3절 소결: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과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V

##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 제 1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본원리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적자원의 지적 역량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된다(Neal & Johnson, 1996). 최근 OECD의 Starting Strong 보고서와 DeSeCo 프로젝트(OECD, 2001, 2005, 2006)에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생애초기 국가나 사회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각국에서는 모든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정미라 외, 2007).

우리나라에서 ‘보육’의 개념은 영유아보육법 제 2조에 의거,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서울시 보육의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스웨덴은 학습의 지속성을 위해 0~20세 대상 교육과정의 원칙과 가치를 민주주의, 삶에 대한 비폭력, 개인의 자율과 청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가치, 성평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환경 존중 등(OECD, 2012: 119)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보육과 교육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서울시 보육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 운영 철학과 기준 그리고 ‘서울시 국공립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서울시 보육 철학과 보육목표

## 1) 서울시 보육 철학과 가치

보육 철학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함”이라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제3조 보육이념인 다음 세 가지에서도 일국의 철학적 배경을 엿볼 수 있다. 첫째,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육을 통한 아동발달의 지향점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전히 가정복지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서영숙 외, 2013).

그래서 본 연구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보육철학과 가치는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전인적 성장 발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있다.

## 2) 서울시 보육목표

서울시 보육목표는 아래와 같이 『서울 보육 선언』 6가지(서울시, 2011)를 통해서 철학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발견 할 수 있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의 소중한 권리를 위하여 성별, 장애, 계층,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 없는 보육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의 개별성을 존중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보육의 전문성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의 첫 스승이자 보육의 주체인 보육 교사로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보육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정치, 경제, 행정,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의 바탕 위에서 세계 속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육한다.

## 2. 어린이집 운영방침 및 세부기준

### 1)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철학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철학(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권리와 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토대로 전인적 성장 발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둘째,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동의 특수성과 다양성, 지역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균등한 발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육 계획과 보육과정을 마련, 실천하여야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관리 구조, 보고 체계,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필요한 경험과 기술, 특성과 역량을 가지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보육서비스 공급의 적정 기준에 의한 예산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출(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개 그리고 내외부 점검체제 마련 및 책임 운영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어린이집은 철저한 안전, 위생,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건강 관리에는 예방접종 관리, 아동발달, 인원, 연령에 적절한 급간식(식수포함)을 제공, 위생적인 환경 및 식자재 관리, 충분한 휴식, 식습관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고 친밀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환경구성 마련뿐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

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 및 자원연계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한다.

일곱째, 어린이집은 개방성과 불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수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한다.

## 2) 어린이집의 역할

어린이집의 역할은 취업, 학업, 질병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적극적인 보호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다양한 영유아 개개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접근과 함께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어린이집의 보육목표 및 원칙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목표 및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발달 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둘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한다.

셋째, 서울시-어린이집-보육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등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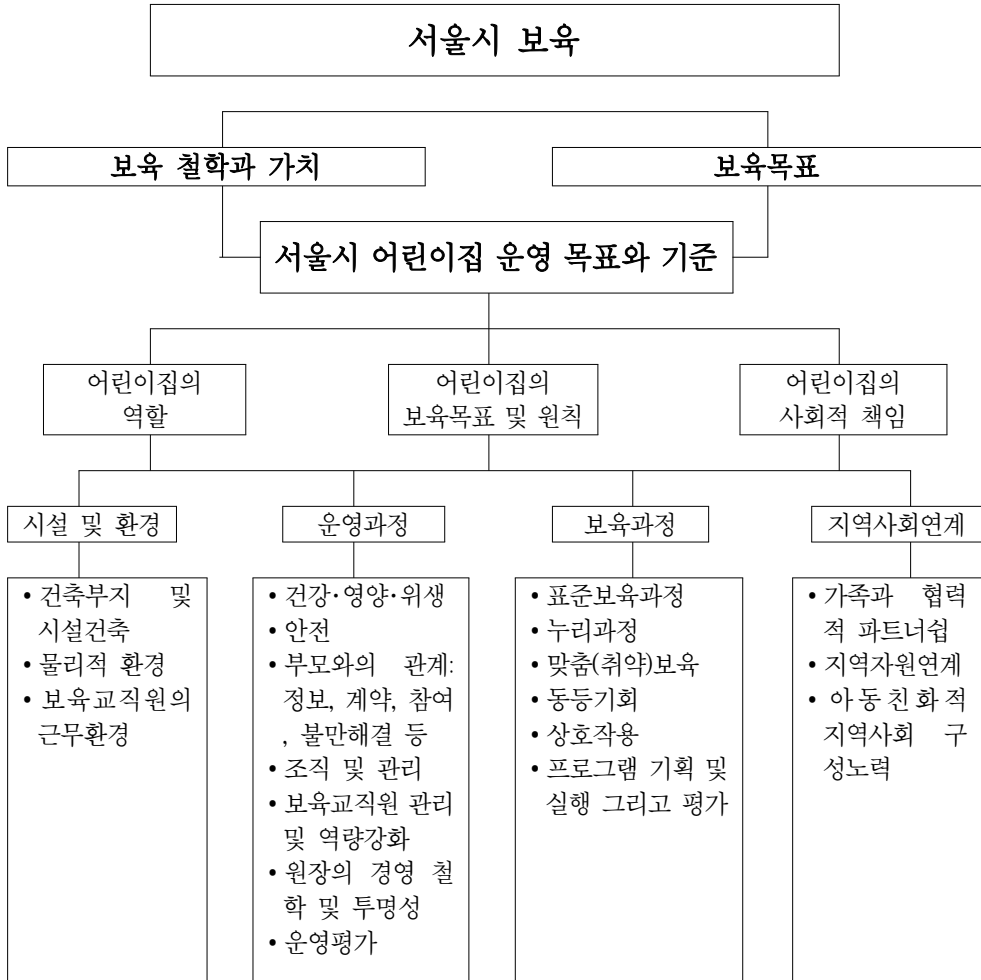
넷째, 건강, 안전, 위생 관리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습관과 태도를 길러, 심신의 건강한 기초를 마련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보육환경 구성, 즉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한다.

여섯째, 보편적 보육을 통한 형평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을 다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 목표 및 원칙을 포괄하는 서울시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체계는 아래 <그림 V-1>과 같다.



주: 앞서 연구방법에서도 밝혔듯이 보육과정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후 모델에서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제외함. 단, 맞춤보육, 동등기회,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포함함.

그림 V-1 | 서울시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 체계 및 관계

구체적으로 ‘서울시 어린이집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은 <표 V-1>과 같다.

서울시 어린이집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은 1. 아동발달 증진, 2. 보육교직원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3. 운영의 투명성 확보, 4. 건강·안전·위생관리 강화, 5. 돌봄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6. 보육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기관 책무성 강화 등 총 6가지이고, 각각 원칙에 따른 36개 기준(standards)을 도출하였다. 이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서울시 국공립 모델 개발을 위해 먼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방향성을 마련하였고, 현 영유아보육법, 보육지침 등에서 미흡하거나 기준이 부재한 경우만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제시하였다.

표 V-1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원칙과 기준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아동 추진	1. 아동 발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권리와 최우선 원칙을 토대로 전인적 성장 발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li> <li>▶ 전인적 아동관점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각 발달사항에 대해 어린이가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을 일컫는다.</li> <li>▶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동의 특수성과 다양성, 지역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균등한 발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li> </ul>	<p><b>- 공간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인가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 확보(가구 등 20%미만 배치)</li> <li>② 유희실 별도 공간 확보: 보육실 이외 유희실 공간 확보 기준 필요</li> <li>③ 세면대 및 변기: 아동 10명마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배치 등과 같이 직원 수, 장애아동 수 등을 고려한 수 기준 마련</li> </ul> <p><b>- 인적구성성의 적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최적의 교사대 아동비율: 만0세 1:2, 만1세 1:3~4, 2세 1:5, 만3세 1:12, 만4세 이상 1:15</li> <li>⑤ 직장맘 진화형 지원 : 직장맘 이용 일정비율 이상의 경우 교사추가 지원</li> </ul>
보육 교사 추진	2. 보육교직원 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서비스의 관리 구조, 보고 체계,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필요한 경험과 기술, 특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li> <li>▶ 보육 서비스의 핵심 정책과</li> </ul>	<p><b>- 서비스의 적절성과 균형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연령별 보육과정 중심의 교재교구 기준안 마련</li> </ul> <p><b>- 인력관리의 체계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울시 보육교직원 취업규칙마련: 구체적인 내용 제시(모집, 채용, 승급 체계 등)</li> </ul> <p><b>- 인적구성성의 전문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보육교사 자격요건: 담임교사의 자격 제한, 1, 2급 보육교사</li> </ul>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p>서비스 절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p> <p>▶ 아동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격려해줌.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해줌.</p>	<p>2.4 역량강화 교육 (자율장학 등)</p> <p>2.5 원장의 역할과 리더십</p> <p>2.6 아동의 행동지도 및 대응성</p>	<p>구립 원장 자격: 보육교사 3년+원장자격 5년 또는 원장자격10년</p> <p>③ 사전교육 의무화: 임면 전 30시간(보육공공성, 인권, 교직과목, 상호작용 등) 교육과 실습 이수 의무화</p> <p>④ 자율장학 및 보육교육 체계화</p> <p>- 대응성</p> <p>⑤ 아동행동지도 지침서 마련 및 교육 이수</p>
보육 서비스 측면	<p>3. 운영의 투명성 강화</p>	<p>3.1 아동관리</p> <p>3.2 기관 관리감독</p> <p>3.3 운영절차</p> <p>3.4 기록관리</p> <p>3.5 재무회계</p> <p>3.6 예산 및 지출의 적정·타당성</p> <p>3.7 기관정보 공개·제공</p>	<p>- 재정의 투명성</p> <p>① 회계관리시스템 전 의무화 및 원장 책임제</p> <p>② 회계평가: 클린운영, 특별활동비 등</p> <p>- 운영의 효율성</p> <p>③ 보육품질 평가 계획 및 자가평가</p> <p>· 서비스 품질 목표 설정: SMART</p> <p>· 어린이집 운영방침 수립</p> <p>· 직원 전문성 강화 계획 수립</p> <p>· 품질지표에 따른 평가(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이행율, 교육목표 대비 실행율 등)</p> <p>- 운영의 공개성</p> <p>④ 어린이집 정보공시</p>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p>▶ 어린이집은 각 아동마다 필요 요한 건강 관리 목록(예방접종, 알러지, 편식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함(응급처치, 위험요인 제거, 흡연, 위험물 등)</p> <p>▶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함. 어린이집 내부에서 어린이가 활동을 하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할 시, 정부기준안에 의거하여 처리함</p> <p>▶ 설비가 위치한 건물은 건실하고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교육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함.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에게 친밀한 시설이어야 함. (폐적한 온도, 위생, 디자인, 시설 구조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아동관점으로 구성)</p> <p>▶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p>	<p>4.1 아동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p> <p>4.2 아동 급간식 관리</p> <p>4.3 위생환경 조성</p> <p>4.4 교재교구의 위생 및 안전성 관리</p> <p>4.5 부지·시설설비 기준준수</p> <p>4.6 안전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p> <p>4.7 아동의 개인정보</p> <p>4.8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 수립</p>	<p>- <b>특튼건강</b></p> <p>① 건강: 급간식 비용이 아닌 필수 기준 도입 : 열량, 칼로리, 제철과일, 단백질, 칼슘, 염도 등 기준</p> <p>- <b>특튼안전</b></p> <p>② 안전인증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석면어린이집</li> <li>· 모든 자재, 물감, 장난감 무연인중품 사용</li> <li>· 보육시설 내부 마감재로: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 설치</li> </ul> <p>※ 건강, 위생, 안전은 보육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내용에 모델에 명시하지 않음. 단, 조사결과 지침이 미흡한 위 내용에 대해서만 모델로 명시함</p>
4. 건강·안전·위생 관리 강화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서울시 공공립 모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내에 있는 아동을 항상 관리 감독(supervise) 함.</li> <li>▶ 직원은 관련 건강 법규 및 안전 법규를 숙지함.</li> <li>▶ 보육시설 실내/실외에 확인된 위험을 평가한다. 위험이 감지된 장소/시설을 제거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위험 수준을 반드시 적절한 안전한 상태로 낮추어야 함.</li> </ul>	4.9 사고예방 및 처치	
지역 사회 연계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상담 및 정보제공 그리고 부모교육</li> <li>▶ 지역 유관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실현 및 자원연계</li> <li>▶ 지역의 요보호아동 및 유해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지원 및 안전 환경 노력</li> </ul>	5.1 돌봄 문화 구축 5.2 체험학습 5.3 상호작용 5.4 지역사회 자원 연계	<b>- 거점 공공립어린이집 운영</b> ① 지역사회 돌봄 거점기관의 책무성- 어린이집 미 이용 부모의 육아두려움 해소를 위한 부모 교육 ② 지역자원 연계 및 확보를 통한 현장학습, 특별 프로그램, 연계 프로그램 ③ 보육반장과의 긴밀한 연계 및 정보공유
보육 기관 의	6. 보육서비스 형평성제고 및 기관 책	6.1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평등성	<b>- 다양성 및 동등기회 보장</b> ① 다문화, 장애통합 등의 아동 맞춤형 매뉴얼 개발 및 교육실시

영역	원칙(principal)	기준(standard)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공공성 추진	<p>인음</p> <p>▶ 부모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합의된 서면 계약을 작성함</p> <p>- 아동 발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으며, 어린이가 참가하는 활동, 성과, 발달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함께 함.</p> <p>▶ 해당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동등한 기대와 존중을 받음.</p> <p>▶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불만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 불만에 대해 교육 시설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가 자신의 불만사항이 반영되어 수정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낌</p>	<p>6.2 지속적인 교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상시화</p>	<p>※ 운영원칙: 기회의 평등성, 비차별 실천, 참여 강별제거, 다양성 공유, 특별한 욕구에 대한 수용 및 대응</p> <p>- <b>개방성</b></p> <p>②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한 정보제공 및 매뉴얼: 서면계약서, 어린이집 서비스 목표 및 기능, 교사소개, 교과과정, 부모교육참여,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보육서비스 불만 처리 방식, 각 자녀에 대한 세부기록사항 등)</p> <p>③ 열린어린이집 운영 : 주일 열린이집 운영 및 상시화</p> <p>④ 운영위원회 운영 및 불만창구 마련</p> <p>- 불만창구 운영절차 마련 및 실시</p>
	<p>무성 강화</p>	<p>6.3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 채널 시화</p>	

## 제 2절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에 의한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

### 1. 아동 발달 증진

#### 1) 원칙

##### 원칙(Principal)

- 아동의 권리와 최우선 원칙을 토대로 전인적 성장 발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인적 아동관점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각 발달사항에 대해 어린이가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동의 특수성과 다양성, 지역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균등한 발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육 계획과 보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세부기준안

아동발달의 적정성은 공간의 적정성, 인적구성의 적정성, 서비스의 균형성을 목표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 (1) 공간의 적정성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발달의 적합성, 통합, 균형, 연속성과 융통성, 안전성의 구성원리를 준수해야 한다(White & Coleman, 2000). 앞서도 아동 1인당 어린이집 인가 규정은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유아 1인당 최소 실내공간은 3.6㎡이고 실외공간은 8.9㎡인데(OECD, 2012:46), 한국은 보육실의 경우 2.64㎡, 놀이터 3.5㎡로 상대적으로 협소하며, 50인 미만은 실외놀이터가 없이도 인가가 가능하다.

조사결과, 어린이집 전체 면적기준, 보육실 기준, 놀이터 기준은 있지만 교재교구, 가구 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실 면적이 매우 작아져서 활동영역 확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공간의 적정성 확보방안으로



첫째, 인가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으로 확보(가구 등 20%미만 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보육실 이외에 신체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유희실 별도 공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에는 유희실을 따로 확보한 어린이집도 있지만 보육실이 유희실로 동일시, 활용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sup>23)</sup>

셋째, 세면대 및 변기 수, 수면공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여 아동 10명마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배치 등의 기준, 수면공간(크기, 햇빛이나 조명 등의 밝기, 온도 등)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 (2) 인적구성의 적정성

인적구성의 적정성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영유아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주요한 영향요인이다(OECD, 2006).본 연구를 위한 조사결과, 최적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 1:2, 만 1세 1:3~4, 만 2세 1:5, 만 3세 1:12, 만 4세 이상 1:15로 의견이 집약되었다. 하지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은 보육재정 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 구성의 적정성은 운영시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 시간 오전 7:30분에서 오후 7:30분까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8시간/일이지만 학부모도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보육교사도 장시간근로로 이어져 이에 대한 인적 구성의 적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안현미 외(2013)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 8이상 이용자는 전체 23.6%인데 취업모의 경우 46.5%에 달한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겠으나, 내일의 수업준비 등을 위해서는 추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맘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교사1인 추가지원 등을 통해서 직장맘 자녀를 거부하거나 시간연장 보육에 대해 보이지 않는 압력 등을 느끼는 육아장벽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24)</sup>

23)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실겸 유희실이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리 규정이 필요함.

【 표 V-2 】 어린이집 하루 이용시간

(단위: 명, %)

		하루 6시간 미만	하루 6~7시간 미만	하루 7~8시간 미만	하루 8~9시간 미만	하루 9시간 이상	계
전체		13.2 (140)	31.3 (331)	29.2 (309)	13.5 (143)	12.8 (136)	100.0 (1,059)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8.5	29.1	32.6	17.6	12.1	100.0(340)
서울형		18.1	29.6	28.8	11.2	12.3	100.0(260)
비서울형		13.9	33.8	26.8	11.8	13.7	100.0(459)
영유아구분							
영아		13.8	36.1	26.6	9.5	14.0	100.0(515)
유아		12.7	26.7	31.6	17.3	11.8	100.0(544)
모의 취업여부 및 근로시간							
비취업모		15.4	37.7	33.3	11.1	2.5	100.0(648)
취업모		9.7	21.2	22.6	17.3	29.2	100.0(411)
근로 시간	주20시간미만근무	13.2	23.1	23.1	13.2	27.5	100.0(91)
	주21~40시간근무	9.1	21.1	24.9	18.7	26.3	100.0(209)
	주41시간이상근무	8.1	19.8	18.0	18.0	36.0	100.0(111)
영유 아별	영아	8.4	27.1	20.7	11.8	32.0	100.0(203)
	유아	11.1	15.4	24.5	22.6	26.4	100.0(208)

출처: 안현미 외(2013)

### (3) 서비스의 적절성과 균형성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실재를 위해서는 교실의 환경 구성 역시 발달에 적합해야 한다(Bredenkamp & Copple, 1997). 이는 교재 및 교구를 선정하고 실내 흥미영역을 배정할 때 연령별 차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동일 연령 내에서의 개인 간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이순형 외, 2013)

우리나라 표준보육비용 내 교재교구비는 아동발달 특성에 따라 교재교구를 선정

24) 3인 이상의 시간연장 보육에 대한 교사임면시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맘 자녀 일정비용 이상시 교사지원을 의미함

하고 이에 대한 단가조사를 통해 산정되었는데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하여 아동 1인당 평균 49천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하였다. 하지만 교실설비비는 월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재료비와 소모품비만을 고려한다면 월 평균 약 32천원이 보육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동 1인당 월7천원의 예산 책정을 하고 지출하고 있다. 즉, 보육료 단가 산정 기준과 실 지출이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아동발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히려 평가인증시 평가지표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표 V-3>에 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별, 영역별 개수 만을 제한하고 있어 교재교구의 충분성, 발달의 목적성 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표 V-3 】 평가인증시 보육활동자료 구비 기준(40인 이상)

활동영역		필요 교재교구 종류 수						
		39인 이하			40인 이상			
		0~1세	만2세	유아	0~1세	만2세	유아	
신체활동	대근육 활동자료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4종 이상	4종 이상	
	소근육 활동자료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4종 이상	4종 이상	
자연탐구 활동	자연 탐구 활동 자료	탐색활동 자료	3종 이상	3종 이상	-	3종 이상	4종 이상	-
		수확동 자료	-	-	3종 이상	-	-	4종 이상
		과학활동 자료	-	-	3종 이상	-	-	4종 이상
예술활동	미술활동자료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4종 이상	4종 이상	
	음악 및 동작활동자료		3종 이상	3종 이상		4종 이상	4종 이상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역할놀이자료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3종 이상	4종 이상	4종 이상	
	쌓기놀이자료		3종 이상	3종 이상		4종 이상	4종 이상	
언어활동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각 1종씩 총 5종 이상						

자료: 평가인증 지표

출처: 2013년 설치운영 매뉴얼

그래서 2000년 서울시 보육지침에 게재된 ‘필요 교재교구 항목’에 대해 현재 단가를 적용, 재계산했고, 규모별 교재교구비의 경우 2009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김현숙·서병선(2008)에 근거,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평가인증시 기준이 되는 <표 V-4>의 교재교구 항목을 산출하여 단가를 산출하여 비교해보았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 중심으로 교재교구 구성이 이루어져 신규 개원 한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목록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였다.

표 V-4 | 교재교구비 단가 산출 기초

구분	자료	방법
규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항목</li> <li>• 교육재료비의 경우 ‘보육사’ 비용</li> <li>• 교실설비비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나온 필요 교재교구 항목에 2012년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온라인 상품 가격을 적용함</li> <li>• 규모별 1인당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 김현숙·서병선(2008) 교재교구비 기준에 나와있는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의 7가지 기준을 적용함</li> </ul>
연령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항목과 비용</li> <li>• A(가정)어린이집의 실제 지출 항목과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항목에서 연령별 1인당 비용은 0세, 2세, 3세5세의 반별 교사대 아동비율의 평균값으로 각각 4명, 7명, 17.5명으로 나누어 계산함</li> <li>• A(가정)어린이집은 0세 6명, 1세 7명으로 0세 1인당 비용을 도출하기 위해 총 현원 13명으로 나누어 계산함</li> </ul>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규모별, 연령별 아동 1인당 가이드라인은 아래 <표 V-5>와 같다. 이러한 비용 이외에 교재교구의 안전성은 이후 4. 건강·위생·안전 기준에서 다룰 것이다.

【 표 V-5 】 규모별, 연령별 아동1인당 교재교구비 비용: 가이드라인

구분	기준							
규모별 1인당 비용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교육재료비	52,507	21,003	13,638	10,826	8,469	7,395	6,214
연령별 1인당 비용	구분	0~1세		2세		3~5세		
	평가인증	17,519		9,269		5,854		

주: 순수 교재교구비만 적용한 결과임

## 2.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 1) 원칙

#### 원칙(Principal)

- 보육서비스의 관리 구조, 보고 체계, 개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은 필요한 경험과 기술, 특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 보육 서비스의 핵심 정책과 서비스 절차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다.
- 아동이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격려해준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이 긍정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동을 격려해준다.

### 2) 세분기준(안)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대응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관리의 체계성, 전문성, 아동에 대한 대응성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인력관리의 체계성

보육교직원 관리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채용에서부터 역할 및 업무 분담, 복무규율, 교직원의 임금 및 후생복지, 경력관리, 교직원의 보수교육 등을 포

팔하며 이는 문서화된 인사관리정책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Taylor, 2002).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린이집 공식 인사관리체계는 전문하고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체의 관리감독 및 적극적 운영개입에 따라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기 마련되어 있는 기관과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의 취업규칙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아래 <표 V-6>과 같이 서울시 어린이집 취업규칙(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취업규칙에 대해 신규 보육교직원들에게 고지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준수,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표 V-6 】 어린이집 취업규칙 구성(안)

취업규칙 구성	취업규칙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준수 의무 제4조 균등대우 제5조 적용범위 제6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 2 장 채용	제 7조 일반원칙 제 8조 평등한 채용기회 보장 제 9조 채용의 절차 제10조 결격사유 제11조 근로계약
제3장 복무	제12조 복무의무 제13조 출퇴근, 지각, 조퇴, 외출, 결근 제14조 겸직의 금지 제15조 출장 및 보고 제16조 출장비 제17조 휴직(가족돌봄휴직 등)
제4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18조 근로시간 제19조 휴게시간 제20조 연장근로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6장 급여	제21조 일반원칙 제22조 호봉책정 및 승급
제7장 퇴직 및 해고	제23조 퇴직 제24조 정년

취업규칙 구성	취업규칙 조항
	제25조 해고 등 제26조 퇴직급여제도
제8장 상벌	
제9장 교육 및 훈련	
제10장 모성보호 등	
제11장 기타	재해보상, 안전과 보건 등

## (2) 인적구성의 전문성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육교직원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보육수행에 필요한 특수지식,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교육기술,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는 자질이 그것이다(양옥승 외, 1999). 많은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양질의 서비스와 성과를 위해 교사가 지녀야 할 중요한 기술과 특성은 첫째, 영유아발달과 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둘째, 영유아의 관점을 발달시켜나가는 능력, 셋째, 영유아를 칭찬하고 위로하며, 영유아에게 질문을 던지고 민간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넷째, 리더십 기술, 문제해결능력, 선별적인 교육계획안 개발, 다섯째,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고 유아의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등이다(OECD, 2012: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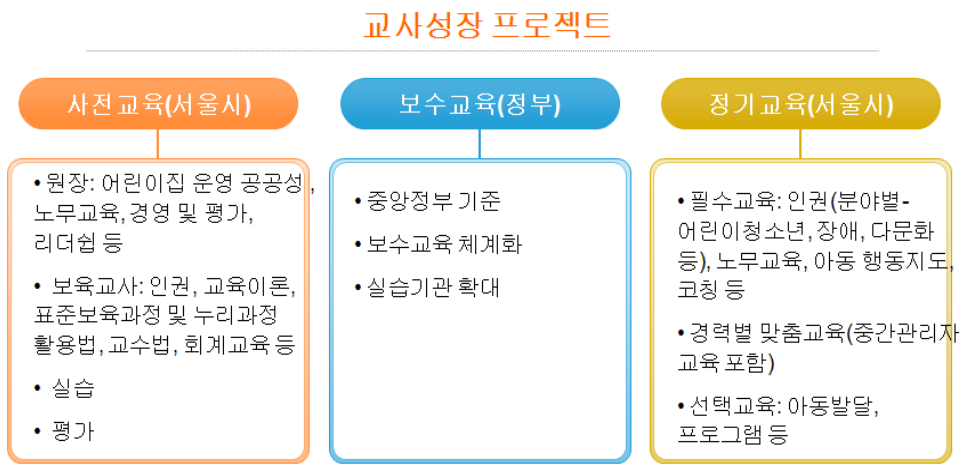
보육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역할에 따른 수행방법,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육기술의 강화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서울시 공인자격제도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채용조건은 「교사성장프로젝트」과정을 이수하여야만 가능하다.<sup>25)</sup> 「교사성장프로젝트」는 <그림 V-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교육-보수교육-정기교육이 체계적으로 구축, 순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보육교직원 지원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 서울시 보육교직원 DB가 마련되어 사전교육, 보수교육, 정기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이수 DB 구축, 알리미서비스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25) 교사성장프로젝트는 공동육아교사성장체계 모형연구(2007)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단,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하다는 것을 밝힘.

체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교사의 경력과 직위(원장, 원감 또는 주임, 교사, 특수교육, 기타인력 등)에 따른 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승급교육은 평가를 포함하고 일정기준 이상이 되었을 때 승급이 가능한 체계여야 한다. 또한 맞춤형(취약보육)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교사는 관련된 특수교육 또한 이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문화, 장애통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그림 V-2 ■ 서울시 교사성장프로젝트 (안)

그리고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준으로 자기평가 및 교사 간 성장체계, 즉 자율장학이 정착화되어야 한다. 자율장학은 전문가 교수 코칭과 교사간 코칭으로 구분,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 서울시는 전문가 코칭 방법으로 “맞춤자율장학”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장학 프레임은 <표 V-7>에서 볼 수 있듯이 경력에 따라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계획-주제선정-실시-평가-사후관리 등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표 V-7 자율장학 프레임(안)

단계	주요 내용			비고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장학의 목적 공유</li> <li>자율장학의 주제 및 방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경력에 따른 주제구성 논의</li> <li>자율장학을 위한 팀구성</li> </ul>                             예: 경력교사와 초임교사                              원내 동료간의 팀 구성                              인근 어린이집 동료 간의 팀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내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율장학 논의</li> </ul> </li> </ul>			※ 자율장학을 계획하기 전에 외부전문가를 활용여부를 미리 파악
주제 선정	초임교사	경력자	주임교사	※ 주제선정은 경력에 상관없이 주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에서의 직장예절</li> <li>표준보육과정의 이해</li> <li>일과운영</li> <li>보육일지작성</li> <li>평가인증의 이해</li> <li>어린이집 지역사회 참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보육과정의 실제 사례발표</li> <li>영유아 발달의 이해 및 관찰</li> <li>상호작용</li> <li>단위활동 방법적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멘토 역할 알아보기</li> <li>표준보육과정 영역별 적용 사례 발표</li> <li>중간관리자의 역할</li> <li>수업 모니터링 방법</li> </ul>	
시행 (진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성적 저널쓰기</li> <li>수업 사례 분석</li> <li>전문서적 읽기와 토론</li> <li>멘토링</li> <li>동료간 협의</li> <li>동료코칭</li> </ul>			※ 다양한 진행방법을 참고하여 월별로 계획구성하여 실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장학 전반적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주제의 적절성</li> <li>교육방법의 적절성</li> <li>추후 반영되어야 할 주제</li> <li>교사협력의 적절성</li> </ul> </li> </ul>			※ 내년도 반영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진행

주: 구립어린이집에서 실제 수행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프레임(안)을 마련함.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자격기준 강화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듯이 국공립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자격은 사전직무교육을 받은, 1, 2급 보육교사인 교사에 한해 채용하고,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 3년+원장자격 5년 또는 원장

자격 10년 중 구립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 (3) 원장의 역할과 책무성 그리고 전문성

원장은 보육의 질 및 직원의 자질의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고 필요한 환경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첫째, 원장은 어린이집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 등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을 둘러싼 사회 정세 등을 감안해 그 전문성 등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 계획 및 평가에 따라 직원들이 어린이집 철학과 목표에 따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개선에 노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직원 및 어린이집의 철학과 목표를 토대로 한 다양한 역량강화 기회제공과 연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원장-직원간, 직원-직원간 상호코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과 협업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집은 전문성을 가진 직원에 의해 그 업무가 수행되는 것부터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환경의 확보도 원장 역할 중 하나이다. 어린이의 현장에서는 교사 등이 가진 기초적 이론이나 기술을, 실천을 통해 높이고 어린이집 안에서 발휘되는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원장은 본인 시설의 연수 체제와 그 결과를 자가평가하고 개선, 향상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본 보육소 지침 참조).

다섯째, 평가인증 또는 서울시 공공성 평가(안) 등에 대한 향후의 과제로 밝혀진 것에 대해 개선책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직원들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협업한다.

여섯째, 어린이집은 지역내 전문기관이라는 점, 영유아발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비영리기관이라는 점 등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최선을 다한다.

#### (4) 대응성 강화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 보육, 대응, 지도가 가능하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앞서도 제시하였듯이 이미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일지라도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아동행동지도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아일랜드 보육서비스 기준을 살펴보면, 용인되는 훈육(acceptable discipline)과 금지된 훈육방법(prohibited discipline)에 대해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과 이를 위해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발달과 진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모님과 논의, 공유가 필요하고 자가평가 및 교사회의를 통해서 사후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V-8】 아동행동 대응성: 용인되는 훈육과 금지된 훈육

acceptable discipline(용인되는 훈육방법)	prohibited discipline(금지된 훈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인 지도</li> <li>- 분명한 한계 설정</li> <li>- 자기 훈련이 되기 위한 아이의 능력 촉진</li> <li>-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칭찬</li> <li>- 방향수정(redirectio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의 체벌은 허락되지 않음(때리기, 엉덩이 때리기, 매질, 꼬집기)</li> <li>- 신체적 체벌의 위협</li> <li>- 음식, 휴식 또는 화장실 사용기회를 철회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li> <li>- 욕설</li> <li>-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치/굴욕의 어떤 형태</li> <li>- 학대의 어떤 형태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학대)</li> </ul>

출처: 아일랜드 어린이집 운영 가이드라인

그래서, 아동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행동지도 매뉴얼(영어, 유아의 발달 및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필수)과 주기적 교육 그리고 사례 관리 및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가 연계 개입 및 중재 등의 자원연계로 다양화 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행동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도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행동 지도를 위한 운영 체계는 아래 <표 V-9>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여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 표 V-9 】 어린이집 아동행동지도를 위한 운영 체계(안)

단계	주요 내용	비고
담임에 의한 실태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행동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관찰 기록 및 동영상 촬영을 통한 활동모습 자료 수집</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li> <li>• 전문가 상담 협조 요청</li> </ul>
원내 팀에 의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임교사, 주임교사, 통합지원교사, 원장 등 아동행동 특성 논의</li> <li>• 아동행동 발견을 위한 조사<sup>26)</sup> 및 발달체크리스트 실시<sup>27)</sup></li> <li>• 아동행동지원을 위한 원내 협력체계 구성 및 전문가 협력 구축</li> </ul>	
아동행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의한 개별화 교육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sup>28)</sup> ⇨ 지도목표의 설정 ⇨ 지도방법의 결정 ⇨ 지도 ⇨ 지도 후의 평가</li> </ul> </li> <li>• ABC 관찰을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 관찰 ⇨ 행동진단 (회피, 관심끌기, 원하는 물건 또는 활동언기) ⇨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 평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및 전문가 연계</li> <li>• 원내 협력</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행동지원에 대한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및 평가의 적절성, 개별화 교육 실행 적절성, 운영과 협력체계의 적절성 평가</li> </ul> </li> </ul>	보호자에게 보고

자료: 김미숙·김향지 (2014) 재구성

26) 아동행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 목록은 아래와 같음(자료: 김미숙·김향지, 2014 재구성)

영역	방법
기초정보	개인정보, 문제, 요구 등 파악/ 보호자나 당사자와의 면접, 행동관찰, 관련자료 검토
환경정보	가정환경, 생육력, 교육경험 등 파악/ 보호자나 담당교사와의 면담/ 유아기의 진단력 조사/ 의료기관과의 자료 검토/ 행동관찰
인지 및 언어능력	인지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언어능력 검사(검사도구 활용 및 대화를 통하여 검사), 행동관찰
신체·운동 특성	수의 운동 발달 검사 및 운동 능력 검사 실시 협응운동 능력 정도 파악/ 관찰
생활·행동특성	행동관찰이나 개별 면접/ 보호자나 담당교사와의 면접 행동 체크리스트에 의한 조사/ 사회생활 능력 검사 실시

27) 특수아동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영역은 아래와 같음(자료: 김미숙·김향지, 2014 재구성)

구분	영역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 평가, 학습준비도 검사
	의사소통 장애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 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28) 사정은 교육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양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함

### 3. 운영의 투명성 확보

#### 1) 원칙

##### 원칙(Principal)

- 보육서비스 공급의 적정 기준에 의한 예산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운영 및 예·결산 결과보고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및 정보공개로 통한 투명성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 재정운영에 대한 내외부 점검체제 마련 및 책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과 교직원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 세부기준안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은 재정 투명성, 운영의 효율성, 운영의 공개성 등의 세 가지 모델을 마련하였다.

먼저, 재정의 투명성은 회계관리시스템 기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중앙정부의 보육통합시스템과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이 연동될 경우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가 용이하다. 실제 회계관리시스템은 보육통합시스템을 불러올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지만 활용률이 낮다. 그래서 회계관리시스템 전 기관 의무화 및 원장 책임제 하에 보조금 지급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세부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2014 안심회계컨설팅” 결과, <표 V-10>에서 볼 수 있듯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안을 투명성 확보 준거(안)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표 V-10】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 기준안 개선(안): 수입지출운영

구분	문제점	개선사항
회계운	예결산 공고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계관련하여 알려야할 사항 필수 안내
	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논의 내용 중 예·결산 뿐 아니라 보육료 외의 필요 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구분	문제점	개선사항
영	<p>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또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p> <p>② 자치구에 예결산 보고를 익년 2월까지 하도록되어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음. 각각 자치구마다 일관성이 없이 이루어짐(예: 예산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p>	<p>⇒ 예·결산 보고의 필요성 및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의 책무성에 대한 교육 내용 필요</p>
예산편성	<p>예산편성에 구체적인 예시 없어 통합적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음 (예: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특별활동비 등 구체적인 산출기초 없이 책정)</p>	<p>⇒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안 제시 ※ 예시-특별활동: 연령별, 과목별,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시 : 연령×과목×단가×개월수</p>
수입 및 지출 운영 관리	<p>- 반납금과 보호자 반환금의 구분 혼란 :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은 예산서에 세입, 세출 예산액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기타필요경비 잔액이 남을 경우 그에 따른 정산금액을 기타필요경비 반납으로 해야할지, 보호자 반환금으로 해야 하는지 대다수 혼란스러워 함(보호자 반환금으로 할 경우 기타필요경비 세입, 세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 : 자치구마다 정산액을 기타필요경비 반납으로, 보호자 반환금으로 하라는 지시가 다 다름</p>	<p>⇒ 반납금에 대한 규정 필요 (예: 분기별 정산 후, 미참여 영유아, 입학금 반환은 기타필요경비로 반환 함)</p> <p>⇒ 보호자 반환금 최종 연말 결산시(예 12월) 보호자 반환금으로 안내</p>
	<p>- 수입 및 지출결의서 작성법 : 결의서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음.</p>	<p>- 결의서에 기본적으로 기록해야 할 사항 안내 필요 예: 급간식비 지출결의서 내용(식단, 주간, 날짜, 기록) 구입장소 결제방법 [비고] 카드 영수증 및 상세내역</p>
	<p>수입결의서 증빙서류 : 현재 보육료수입과 기타필요경비의 경우 카드영수증, 보육료 수납 영수증, 보육료결제 현황 출력물, 통장사본 등 4가지 중 1가지로 간소화 됨. : 그 외 수입결의서에 필요한 증빙서류</p>	<p>⇒ 수입결의서 증빙 서류 간소화 필요 어린이집 수입결의서 시 증빙서류에 대한 간소화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필요 (예: 인건비보조금, 기타 지원금 별도 보관으로 인정)</p>



구분	문제점	개선사항
지출	간소화 필요(예: 보조금 신청내역증빙을 결의서에 할지 또는 따로 보관해야 할지 등)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간소화 :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서류 안내 미비함 : 보호자 반환금시 보호자 통장사본 증빙서류 안내 없음 : 거래내역서 최저 금액 제시없음 (예: 5만원 이상) : 회식 시 거래내역서 필요사항 내용없음	⇒ 카드결제와 계좌이체시 증빙서류 명확히 안내 ⇒ 보호자 이체내역이 이름 동일하면 통장사본 생략가능으로 안내 ⇒ 거래내역서 5만원 이상은 서울형 기준임. 국공립도 동일기준 안내 필요 ⇒ 회식 시 거래내역 제외사항으로 안내하고, 적요란에 필수 기재사항 안내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 급간식비 예산계상 시 급간식비 보육교직원 인원수에 대한 적정 기준 안내 없음 : 교재교구비 7,000원에 대한 규정 없음	⇒ 급간식비 예산편성 예시 및 보육교직원 인원수에 대한 기준 안내필요 ⇒ 교재교구비 자치구 지원금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준단가 제시 필요
	누리과정 : 누리과정에 대해 쓸수 있는 항목만 있고, 누리과정 예산에 따른 적정하게 비용사용여부에 대한 안내 없음	⇒ 세입세출 예산서에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한 계상 제시 ⇒ 결의서에도 누리과정 표시하도록 안내
	보육교직원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관련규정이 조금씩 달라 혼란스러움 : 급여대장에 직책급, 제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간헐적으로 주고 있는 수당도 포함해야 하는지 구체적 사항 없음	⇒ 4대보험 기준 비율만 있지만 적용시점에 대한 안내 필요 예: 국민연금-작년도 소득기준에서 적용, 건강보험-보수액 신고 후 다음달부터 적용, 급여 상승이 이루어지는 해당 월 신고시 정산 후 적용, 고용보험-현 급여에서 적용 ⇒ 4대 보험에 포함해야 할 항목 제시 필요(제수당, 직책급 등)
비품대장과 교재교구대장 구분 : 현재 비품대장에 대한 내용만 제시하고 있음	- 비품대장과 교재교구목록대장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안내필요 (정원수 기준 제시- 예: 40인 이상은 비품대장과 교재교구목록대장 구분하여 작성)	

자료: 2014년 안심회계컨설팅 내용 일부 발췌함  
출처: 서수경 외(2014)

그리고 어린이집 회계규칙을 들여다보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고용환급금의 수입처리 목을 어디에 해당되는지, 병원비 지출은 어디 목에 해당되는지, 일용잡급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지, 특별활동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와 협의하에 운영비 사용이 가능한데 수입 처리없이 사용하는 경우 지출 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근 해외연수를 기타후생경비로 처리하던 것을 예비목으로 처리할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 표 V-11 】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 기준안 개선(안): 관항목

구분	관련사항	비고
고용환급금	기타지원금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임. 복지부에 문의한 경우 고용환급금은 나라에게 지원해 주므로, 기타 지원금으로 안내 받음. 시스템에서는 기타지원금은 자치구에 보조금 신청사항 이라고 하며, 기타잡수입으로 안내 함 고용환급금은 지출 후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와 예산에 변동이 없어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시스템과 사회복지법인 회계 내용과 다소 다른점이 있음.	⇒ 고용환급금에 대한 세입, 세출 규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 안내 필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협의하여 내용 일치하여야 함)
병원비 지출	세출예산과목에 관련 근거 없음.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수용비 내역에 의료비로 항목이 있음 병원비 사용 후 안전공제회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세입세출 비용처리 기준 모호. 수용비에서 수용비 반납으로 하나 시스템에서는 기타잡수입에서 잡지출로 안내.	⇒ 적절한 계정과목 안내 필요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협의하여 내용 일치하여야 함)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단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 달라 혼란스러움. 임면보고 된 자를 단기시간동안 채용한다고 하여 일용잡급으로 처리하기도 함.	⇒ 일용잡급에 대한 예시 사항 필요 ⇒ 임면보고 된 자는 기본급으로 지출하도록 명확한 지침 필요 (근무시간에 따른 4대 보험 가입여부도 함께 안내 필요)
운영비로 지출하는 특별활동	보육사업안내에 운영비에서 특별활동을 지출할 경우 관련 계정과목에 따라 지출하라고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음. 2014.10. 에 나온 특별활동 책자 예시에 교재교구는 교재교구비 목으로, 특별활동 강사에게 주는 비용은 수용비로 안내 됨.	⇒ 대부분 특별활동 강사비는 일용잡급으로 주고 있으며, 수용비가 맞는지 그 외 지출할 수 있는 규정 필요함
해외연수	교육을 위한 연수로 기타후생경비로 계상함. 현재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구분	관련사항	비고
	<p>서울시에서 여비로 책정하도록 함. 여비로 할 경우 관련 규정을 공무원 규정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없음.</p>	<p>(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지자체(시·도)에서 개별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행정안전부예규 제364호 (2011.7.1.) ⇒ 여비 규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 안내 필요</p>
대표자 겸 보육 교직원 4대보험 규정	<p>대표자, 대표자겸 보육교직원 퇴직금 적립에 대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4대 보험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음. 대표자는 운영비로 4대보험 지출 불가에 대한 내용 없음.</p>	<p>⇒ 대표자, 대표자겸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규정 필요 ⇒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운영비 지출 불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p>
기타후생 경비와 기관 운영비 구분	<p>교사회식 및 커피의 경우 기관운영비로 서울시에서 제시 함. 명절수당, 휴가수당 상품권 지급도 원칙은 기관운영비이며, 기타후생경비 불문(자치구마다 상품권 지급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이 있음). 업무추진비는 보육사업안내에는 규정이 자율화 되었음(2012년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정확한 명시가 없음. 또한 기관운영비로 하게 될 시 한도액의 변동이 필요함.</p>	<p>⇒ 기타후생경비에 지출할 수 있는 부분과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필요</p>
제수당	<p>원장이 받을 수 있는 제수당, 교사에게 지급될 수 있는 제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음 (예: 연구수당을 원장이 갖고 갈 수 있는지, 금액 한도액은 없는 지 등). 명절수당과 휴가수당은 기타후생 경비로 계상하여 지출하기도 함.</p>	<p>⇒ 제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함</p>
직책급	<p>직책급의 상한액에 대한 규정과 4대보험, 급여대장에 포함사항인지 안내 없음.</p>	<p>⇒ 관련규정 명확함 필요함</p>
도시가스비	<p>도시가스비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계정과목이나 연료비가 보일러,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로 적혀 있어 인지 연료비로 계정과목을 지출하기도 하여 혼란스러워 함.</p>	<p>⇒ 도시가스는 공공요금으로 하도록 안내필요</p>
행정조치 후 지출 처리	<p>서울형 사례이긴 하나, 서울형 인건비 지원을 못 받다가 추후 소급되어 1년 것을 지원 받음. 이런 경우 적절한 계정과목 안내가 없음. 행정처분을 받고 나서 지출해야 할 부분에 대한 안내(예: 운영비 지출 불가)</p>	<p>예: 보육료결제 11일 이상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은 운영비 지출 가능. 범칙금, 세금연체료 등 원장 실수로 인한 사항은 운영비로 지출 불가 등</p>

구분	관련사항	비고
적립성 보험	적립성 보험 금지에 대한 사항 안내없음. 2013년 서울시보육사업안내에 수용비에 대한 사항만 소멸성으로 가입내용만 있음.	⇒ 소멸성 보험가입 불가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필요
교사현장 학습관련 비용	영유아와 함께 하는 교사현장학습 시 도시락, 입장료, 음료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마다 다르게 적용. 기타필요경비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비용으로 안내하고 있음. 도시락, 음료비의 경우 기타후생경비로 세출처리 하나 입장료에 대한 문의도 종종 있음.	⇒ 원아와 함께 하는 입장료는 자치구마다 수용비, 행사비로 안내하고 있어 기준 필요함. 예: 운영위원회서 승인 시 교사 입장료 기타필요경비로 지출 가능

자료: 2014년 안심회계컨설팅 내용 일부 발췌함  
출처: 서수경 외(2014)

마지막으로 원장 사전 직무교육 중 회계교육 및 실습에 대한 의무화 → 현장 컨설팅 → 시스템 관리 및 컨설팅 상시화 체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제기한 회계관리시스템 중심의 체계가 정착화되면 <그림 V-3>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 등의 서류간소화,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컨설팅 및 지도점검으로 효율적인 관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출처: 안현미 외(2011)

■ 그림 V-3 ■ 회계관리시스템 활용 지도점검 간소화

둘째,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장은 ‘보육품질 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방침, 직원 전문성 및 역량강화 계획, 평가 계획 등을 수립,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사후조치이행 계획 및 학부모에게 공개 등에 대한 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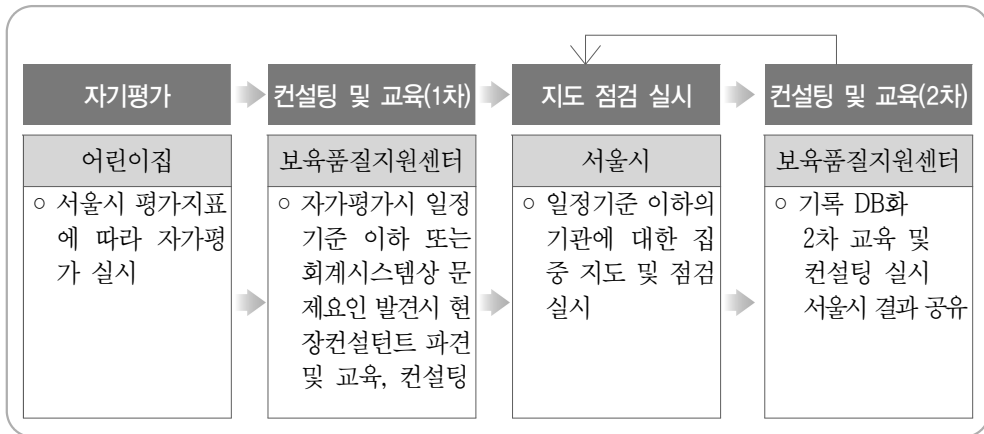
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관리(회계투명성, 직원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 역할, 아동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에 대한 평가라면, 교사는 보육과정 계획과 실천 그리고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자가평가가 중요한데 중앙정부의 평가인증의 통한 보육과정과 교수법 등은 일회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원장조사시 의견수렴).

OECD(2012)에서 국가별 ECEC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기 위한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그 구성을 보면 ① (보육서비스)질적 목표와 최소기준, ② 커리큘럼 프레임워크, 기준과 가이드라인, ③ 노동력(자격요건, 인력공급 및 유지, 전문인력개발), ④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 ⑤ 자료축적, 연구 및 모니터링 등이다. 이 평가 척도는 단순 국가간 비교를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ECEC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문제의식을 높이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평가인증 지표 중 보육과정 평가지표는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 등으로 나뉘는데 ECEC가 제시한 척도, 즉 커리큘럼은 전체적인 ECEC 목표와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아동성과 및 서비스 품질과 같이 측정되고 모니터링 되는지, 목표와 원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유용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으로 평가해본다면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평가인증은 아동발달에 맞게 보육과정이 계획, 구성, 활동이 이루어지는에 대한 평가이지 정부 보육서비스 목표, 아동의 성과와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보육품질평가계획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보육 목표, 어린이집 운영 목표와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 제시된 후 그에 따른 보육과정과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정부의 관리감독 중심의 평가라기 보다는 원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V-12>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평가(원장, 보육교사) → 전문기

관 컨설팅 및 교육 → 지도 및 점검 → 컨설팅 및 교육(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제3자에 의한 평가보다 스스로 자발적 평가가 지금의 평가에 대한 거부감 문제를 일정부문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표 V-12】 서울시 평가 추진과정(안)



셋째, 운영의 공개성은 부모 및 보호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정보 등의 오리엔테이션 설명자료,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계획 및 활동,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한 소통과 협의 그리고 결과에 대한 공개, 마지막으로 평가에 참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모참여 모니터링과 정보공시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표 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 및 내용 대한 정보를 보육 통합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V-13】 정부공시 범위

정보공시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시설, 설치, 운영자, 보육교직원등 기본현황</li> <li>•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li> <li>•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li> <li>•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li> <li>•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출처: 2014년 보육사업 안내(p155)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위의 정보공시 제도가 이를 위한 노력이지만, 이외에도 입소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매뉴얼 즉, 어린이집(원장)과 부모의 서면계약서, 어린이집 서비스 목표 및 기능, 교사소개, 교과과정, 부모교육 참여,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보육서비스 불만 처리 방식 등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평가에 참여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ECEC 사업 평가에 있어서 부모참여는 <표 V-14>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자치구 책임하에 ‘전문가+부모’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곳은 없다.

【 표 V-14 】 ECEC사업 평가에의 부모참여

지역	평가기관	부모와 협력하는 주체	평가 종류
덴마크	어린이집, 전 학령기 교육(유치원)	ECEC 직원	설문
영국(UKM)	어린이집, 전 학령기 교육	ECEC 직원, 관리자	관찰
핀란드	어린이집, 가족보호, 전 학령기 교육	ECEC 직원, 아동	질문지, 포트폴리오
벨기에 플레미쉬 공동체	어린이집	-	설문
이탈리아	아동보육센터, 프리스쿨	ECEC 직원, 관리자	설문, 관찰, 포트폴리오
일본	유치원, 어린이집	이해관계자	평가지, 상담
노르웨이	유치원	ECEC 직원	관찰, 질문지
폴란드	유치원	ECEC 직원, 관리자, 이해관계자	질문지, 면담
슬로바키아	프리스쿨	ECEC 직원	체크리스트
스웨덴	프리스쿨	ECEC 직원, 관리자	평가지

출처: OECD(2012)

## 4. 건강·안전·위생관리 강화

### 1) 원칙

#### 원칙(Principal)

- 보육시설은 각 아동마다 필요한 건강 관리 목록(예방접종, 알리지, 편식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응급처치, 위험요인제거-흡연, 위험물 등)
- 아동보호: 어린이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보육 시설 내 또는 바깥에서 어린이가 활동을 하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어떤 문제라도 발생할 시, 이는 영유아 우선관점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설비가 위치한 건물은 건설하고 안정된 구조를 갖추고 보육 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에게 친밀한 시설이어야 한다(쾌적한 온도, 위생, 디자인, 시설구조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아동관점으로 구성)
- 아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보육시설 내에 있는 아동을 항상 관리 감독(supervise) 한다.
- 직원은 관련 건강 법규 및 안전 법규를 숙지한다.
- 보육시설 실내/실외에 확인된 위험을 평가한다. 위험이 감지된 장소/시설을 제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위험 수준을 반드시 적합한 안전한 상태로 낮추어야 한다.

### 2) 세부기준안

#### (1) 건강 증진 및 관리

영유아에 대한 건강상태, 발육, 발달 상태에 대해 정기적,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보육지침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정기적인(매년마다)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및 주치의제 또는 방문간호사제(서울시)를 통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주치의제는 형식적일뿐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체적 발달 및 건강에 초점을 둔 건강진단만 있을뿐 정신건강 등의 건강관리 기준은 부재하다.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계획’을 마련, 그 목표와 내용을 토대로 개개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 개개인에 대해 관찰(신체적, 정서적 발달, 아동학대 징후, 영양섭취, 위생상태 등의 발달검사) 하고, 방법과 기준, 정신적 발달 체크 기준안, 파악결과에 대한 대응 및 조치이행 등의 절차(보호자에게 정보 제공 및 주치의의 검진 의뢰 등), 학대 의심의 경우 해당기관 의뢰 등의 절차와 기

준, 감염병 및 질병 아동에 대한 처치 및 보육 기준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건강관리 및 증진”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 스스로 건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건강교육과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여야 한다.

■ 표 V-15 ■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관찰 내용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관찰 내용

- ① 아이의 신체 상태: 작은 키, 마른 등의 발육 장애나 영양 장애, 부자연스러운 상처, 피하출혈, 골절, 화상, 충치가 많아 또는 갑작스러운 충치 증가 등
- ② 마음과 행동의 상태: 겁먹은 표정· 어두운 표정, 극단적으로 안정이 없어 심하게 짜증, 웃음이 적고 울기 쉬운 말이 적고 과잉행동, 불안, 공격적 행동, 옷 착탈을 싫어하고, 식욕 부진, 극단적 편식, 거식·폭식 등
- ③ 부적절한 양육 상태: 불결한 복장이나 몸, 이를 닦지 않거나 예방 접종이나 의료를 받지 않은 상태 등
- ④ 부모나 가족의 상태: 아이들을 과묵하다, 아이들의 심신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 교육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갈등이 잦고, 이유 없이 결석이나 조퇴, 불규칙한 등원 시간 등

출처: 일본 보육소 지침

(2) 영양

어린이집은 영유아 급간식 공급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즉, <표 V-16>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발달에 맞는 열량, 칼로리, 제철과일, 단백질, 칼슘, 염도 등 기준에 따라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반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비용에 맞추어 식단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표 V -16】 서울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가이드라인 산출 기준

급간식비 가이드라인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 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중기이유식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산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로리 기준 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400 kcal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 머무는 시간과 활동량을 고려하여 전체의 50% 제공.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하루동안 필요한 700kcal를 기준으로 +50 kcal, -50kcal의 범위내에서 제공</li> <li>• 식단구성시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밥은 잡곡을 기준으로 함</li> <li>② 국과 반찬 식단의 구성은 찌개, 단백질 1회/1일, 들깨, 반찬은 칼슘 1~2회/주, 셋째, 야채찬은 제철기준으로 매일, 김치도 매일 구성</li> <li>③ 간식 중 오전간식은 과일, 유산균, 우유 중 선택 하여 구성</li> <li>④ 염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메뉴 : 0-0.3%</li> <li>- 국, 찌개, 육수류 및 조림류 :0-0.5%</li> <li>- 김치류 : 0-1.0%</li> </ul> </li> </ol> </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식단</th> <th>기준</th> <th>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점심</td> <td>밥</td> <td>잡곡</td> <td>매일</td> </tr> <tr> <td>국 &amp; 반찬</td> <td>단백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td> <td>매일(국이 동물성단백질 기준이면 주반찬은 식물성단백질로 구성)</td> </tr> <tr> <td>반찬</td> <td>칼슘</td> <td>주 1-2회</td> </tr> <tr> <td>야채찬</td> <td>제철기준</td> <td>매일</td> </tr> <tr> <td>김치</td> <td></td> <td>매일</td> </tr> <tr> <td rowspan="3">간식 2회</td> <td rowspan="3">오전, 오후 간식</td> <td>과일</td> <td>주2-3회</td> </tr> <tr> <td>유산균</td> <td>주2-3회</td> </tr> <tr> <td>우유</td> <td>매일 200ml</td> </tr> </tbody> </table>			식단		기준	횟수	점심	밥	잡곡	매일	국 & 반찬	단백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	매일(국이 동물성단백질 기준이면 주반찬은 식물성단백질로 구성)	반찬	칼슘	주 1-2회	야채찬	제철기준	매일	김치		매일	간식 2회	오전, 오후 간식	과일	주2-3회	유산균	주2-3회	우유	매일 200ml
	식단		기준	횟수																											
점심	밥	잡곡	매일																												
	국 & 반찬	단백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달걀)	매일(국이 동물성단백질 기준이면 주반찬은 식물성단백질로 구성)																												
	반찬	칼슘	주 1-2회																												
	야채찬	제철기준	매일																												
	김치		매일																												
간식 2회	오전, 오후 간식	과일	주2-3회																												
		유산균	주2-3회																												
		우유	매일 200ml																												

자료: 위의 급간식 기준은 2012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립,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영양사 4분과 기준을 만들고 실제 1년 동안(3,6,9,12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식단표 구성) 실제 어린이집에서 먹고 있는 식단표의 단가(공동구매)를 계산하여 산정한 기준임

출처: 안현미(2012 미발간) 재수정

### (3) 건강, 안전, 위생 관련 적정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재정비

위에서 제시한 적정보육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준 이외에도 <표 V -17>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집 운영 관계 법률 및 지침과 관련하여 모호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표 V-17 】 어린이집 운영 관계 법률 및 보육지침 개선(안)

법령	조항	내용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 마련을 위한 개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제12호	법 제51조(소독의 의무)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모든 어린이집, 소독 의무화 필요, 점검 기준 내용 부재 격월 또는 매월 기준 제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제1항 제10호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적용대상)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연면적 430㎡미만 규모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기준 포함 필요 예: 공기청정기 설치 또는 창문설치 크기 기준 제시 필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4호	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학교 또는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자동차 신고필증 게시 여부 필요: 어린이집 소유 차량뿐 아니라 운송계약 차량 포함, 관리책임 및 안전벨트 규정 명확한 기준 지침 필요(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기준 없이 사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예방교육의 실시) 제3항	③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안전교육 규정 안에 포함. 구체적인 교육내용 지침안 기준 제시

법령	조항	내용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 마련을 위한 개선안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아동에 대한 교육) 제1항, 제2항	<p>① 법 제9조(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교육기준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1. 교통안전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p> <p>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p>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주기, 시간 등 개정안 필요(예: 영아, 유아 구분, 교육 내역 구체화 명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 소방대상물) 제9호 기목	<p>특정소방대상물</p> <p>9.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p>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화기 종류에 따른 설치규정 및 위치, 개수,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등 기준 명시, 유도등, 유도표지(법적 의무사항 아니지만 원에서는 활용) 등에 대한 기준 명확히 명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안전점검 실시) 1항, 별표 2(어린이놀이시설) 제6호	<p>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p> <p>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p>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체, 점검시기, 관리자 명시 및 교육의무화 기준 필요. (놀이시설이 공유지인 경우 관리주체 명시화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1 제2호 아목(1)	<p>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p> <p>아. 노유자시설</p> <p>(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법령	조항	내용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 마련을 위한 개선안																																						
	별표 2 제3호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3" style="width: 10%;">편의시설 대상시설</th> <th colspan="3">매개시설</th> <th colspan="3">내부시설</th> <th colspan="4">위생시설</th> <th>기타 시설</th> </tr> <tr> <th rowspan="2" style="width: 10%;">주출입구 접근도로</th> <th rowspan="2" style="width: 10%;">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th> <th rowspan="2" style="width: 10%;">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th> <th rowspan="2" style="width: 10%;">출입구 (문)</th> <th rowspan="2" style="width: 10%;">복도</th> <th rowspan="2" style="width: 10%;">계단 또는 승강기</th> <th colspan="3">화장실</th> <th rowspan="2" style="width: 10%;">샤워실· 탈의실</th> <th rowspan="2" style="width: 10%;">임산부 유류시설</th> </tr> <tr> <th style="width: 10%;">대변기</th> <th style="width: 10%;">소변기</th> <th style="width: 10%;">세면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0%;">노유자시설</td> <td style="width: 10%;">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아동복 지시설·유치원)</td> <td style="width: 10%;">의무</td> <td style="width: 10%;">의무</td> <td style="width: 10%;">의무</td> <td style="width: 10%;">의무</td> <td style="width: 10%;">의무</td> <td style="width: 10%;">의무</td> <td style="width: 10%;">의무</td> <td style="width: 10%;">권장</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10%;">권장</td> </tr> </tbody> </table> <p>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p>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 시설	주출입구 접근도로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임산부 유류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아동복 지시설·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연령별 반특성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화 기준 적용 모호. 그에 따른 세부기준 필요 (예: 장애아동이 있는 반이 1층 우선 사용 원칙 등)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기타 시설																														
	주출입구 접근도로	장애 인 전용 주차 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임산부 유류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아동복 지시설·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영유아 발달점검 체크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점검 또는 건강검진 내용 구체화 필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 부서 및 담당자) 제1항제2호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현 장애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 1:3은 연령에 상관없이 이루어지지만 장애 특성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선 필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3항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주유소로부터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어린이놀이터·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인가시 법적 기준과 인가 이후 위험지역 발생시에 대한 책임소재 및 관리 규정 필요																																						

법령	조항	내용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안 마련을 위한 개선안
		용 천연가스 충전소로부터 30미터(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출처: 안현미 외(2011) 재구성

## 5. 돌봄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 1) 원칙

#### 원칙(Principal)

- 아동, 부모, 보육교직원, 지역사회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한다
-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지역 육아자원 연계 및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토대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
- 지역-어린이집-학부모 및 아동과의 관계 형성 및 문제 발생 예방과 조기대응 그리고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한다.

### 2) 세부기준

사회적 돌봄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일차적으로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어린이집-부모님 상생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은 <표 V-18>과 같다. 특히,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영유아에 대한 공유, 일원화된 보육 그리고 부모의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
- 부모와 보호자사이의 매일 공식적인 대화
- 일 년에 최소 두 번 부모와 보호자사이의 계획된 의사소통
- 아이의 장점, 건강문제와 다른 어떤 관련된 사항의 논의
- 서비스 제공의 욕구와 강점과 관련된 부모의 피드백 격려
- 아이의 발달의 시설에서의 보호 적응의 정기적 리뷰
- 아이의 유치원 진학 또는 다른 교육시설의 전학 계획
- 함께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급자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어떤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불만 절차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비밀은 적절한 관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하는 아이의 안전과 행복에 어긋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함

자료: 몰타의 '최소보육서비스' 기준

다음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파트너쉽이다. 어린이집은 지역의 육아가정에 있어서 육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동발달에 적절한 가정내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이와 반대로, 지역사회는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 물적, 인적 자원 등의 공유를 토대로 영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커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립어린이집과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림 V-4>에서 볼 수 있듯이 구립어린이집을 거점으로 한 돌봄공동체는 자원 파악 및 확보 그리고 연계가 가능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반장사업을 자원으로 구립어린이집은 콘텐츠 개발 및 공동체 마련 등의 거점 역할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 구립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종일보육을 넘어선 가족,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통합운영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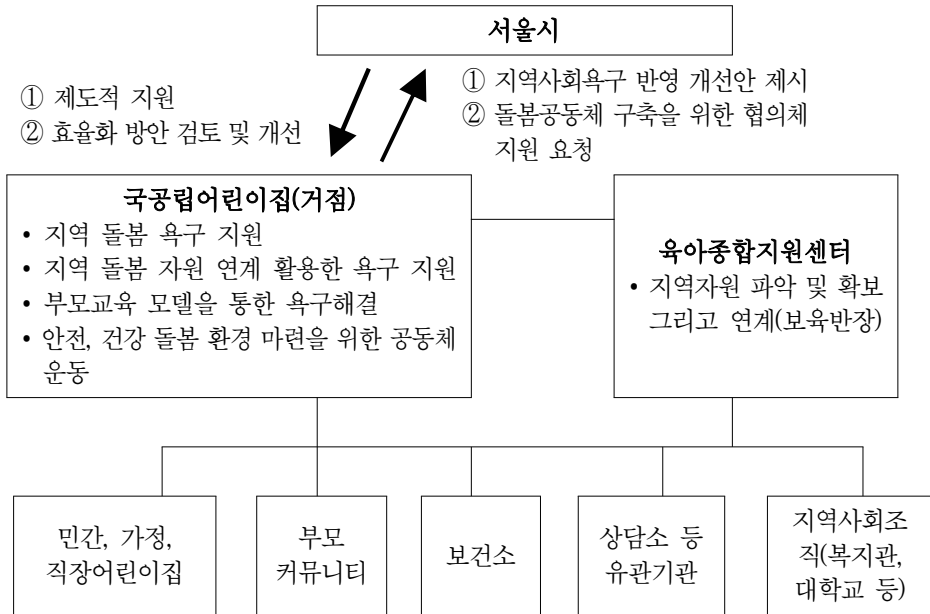


그림 V-4 | 거점국공립어린이집 모델(안)

## 6. 보육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기관 책무성 강화

### 1) 원칙

#### 원칙(Principal)

-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본인이 필요한 보육 서비스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 합의된 서면 계약을 작성한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동 발달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받는다. 어린이가 참가하는 활동, 성과, 발달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함께 한다.
- 해당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동등한 기대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한다.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불만을 귀담아 들어주고, 그 불만에 대해 보육 시설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아가 자신의 불만사항이 반영되어 수정되는 것에 만족감을 느낀다.

## 2) 세부준거

보육서비스 형평성 제고 및 기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준거로는 다양성 및 동등기회, 개방성이 도출되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종, 성별, 계층, 가족환경 등의 이유로 차별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구성 및 어린이집 운영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아래 <표 V-19>와 같다.

【표 V-19】 부모님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육서비스 형평성 실현: 다양성, 동등기회, 개방성			
[공통 가치 및 인식 그리고 운영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 모든 종류의 차별은 적절하게 다루어짐.</li> <li>▶ 어린이는 한 개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다.</li> <li>▶ 모든 기준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됨.</li> <li>▶ 보육시설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더 많은 활동 및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줌.</li> <li>▶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때 이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직원이 해당 아동을 담당하여 돌보아야 함.</li> <li>▶ 인력 배치 및 업무배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계획함. 이러한 조치와 업무배치는 정기적으로 검토</li> <li>▶ 직원 및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이들에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li> <li>▶ 어린이집 개방을 통한 부모-지역사회 신뢰성 향상 및 접근용이</li> </ul>			
[육구별 보육서비스 운영기준]			
장애아동	다문화아동	취업부모아동	기타(시간제보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증진 시설 및 환경 확보</li> <li>▶ 장애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 교재교구 준비 및 지원</li> <li>▶ 장애 전문적 지원 및 아동및교육전문가 연계 체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적 용어, 행동, 고정관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 교직원, 아동 등의 교육 및 프로그램에 포함</li> <li>▶ 다양한 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상호존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연장 보육에 따른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신뢰제공</li> <li>▶ 시간연장 환경 구성 마련 및 부모 정보제공</li> <li>▶ 부모교육 참석 활성화 방안 마련 및 교사와의 소통채널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적 육구(시간제 보육, 아동행동지도 및 상담 등)에 대한 소통채널 상시화</li> <li>▶ 누구나 동등한 보육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추가로 필요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평등체계 마련</li> </ul>



## 제 3절 소결: 서울시 국공립 모델(안)과 추진체계

###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 설립 인가 개선(안): 환경구성을 중심으로

#### 1) 필요성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적정성, 인적구성의 적정을 담보하기 위한 ‘어린이집 인가 기준과 공간배치의 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이외 보육실의 환경구성(교재교구, 환기, 온도, 소음, 채광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물론 인가시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목록을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 이에 대한 기준 부재 및 자치구마다 다르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 모호성으로 인가 이후 평가인증 받는 경우야 교재교구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인가시 환경구성 기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치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 2) 추진체계 및 내용

표 V-20 | 어린이집 인가기준 개선(안)

구분	범직근거	내용	추가 개정 내용																
설립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동법령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 준수 : 어린이집 영유아 1인당 면적: 4.29㎡ 이상(놀이터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희실 필수 공간 마련 및 설치<sup>29)</sup>, 이외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상담실 겸 교사실 확보</li> </ul> </li> <li>• 보육실 공간구성 가이드라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육실 면적의 80% 이상 프로그램 및 활동 공간 확보(가구 등 20%미만 배치)</li> <li>② 환경위생(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 설비, 소음 등) 관련 설치기준 마련<sup>30)</sup></li> <li>③ 세면대 및 변기 수, 수면공간 등에 대한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기: 아동(기저귀를 떼는 시)인 평균 만3세 이상 아동수를 기준) 10명마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배치 -수면공간 (크기, 햇빛이나 조명 등의 밝기, 온도 등) 등의 기준 마련</li> </ul> </li> </ol> </li> </ul>																
설치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필수시설</th> <th>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보육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 및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층에 설치</li> <li>• 영유아 1명당 2.64㎡ 이상</li> <li>• 침구, 놀이기구 및 필요한 교재·교구 구비</li> <li>• 바닥난방시설</li> </ul> </td> </tr> <tr> <td>조리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청정한 실내 환경·방충망 설치</li> <li>• 식기 소독,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li> </ul> </td> </tr> <tr> <td>목욕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미끄럼방지 장치</li> <li>•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li> <li>•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li> </ul> </td> </tr> <tr> <td>화장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 미끄럼 방지장치</li> <li>•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온도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li> </ul> </td> </tr> <tr> <td>놀이터</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참조</li> </ul> </td> </tr> <tr> <td>급배수 시설</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은 공급하는 경우: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li> <li>•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우</li> </ul> </td> </tr> </tbody> </table>	필수시설	기준	보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 및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층에 설치</li> <li>• 영유아 1명당 2.64㎡ 이상</li> <li>• 침구, 놀이기구 및 필요한 교재·교구 구비</li> <li>• 바닥난방시설</li> </ul>	조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청정한 실내 환경·방충망 설치</li> <li>• 식기 소독,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li> </ul>	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미끄럼방지 장치</li> <li>•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li> <li>•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li> </ul>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 미끄럼 방지장치</li> <li>•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온도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li> </ul>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참조</li> </ul>	급배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은 공급하는 경우: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li> <li>•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우</li> </ul>	
필수시설	기준																		
보육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상에 노출 및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인 층에 설치</li> <li>• 영유아 1명당 2.64㎡ 이상</li> <li>• 침구, 놀이기구 및 필요한 교재·교구 구비</li> <li>• 바닥난방시설</li> </ul>																		
조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청정한 실내 환경·방충망 설치</li> <li>• 식기 소독,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li> </ul>																		
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 미끄럼방지 장치</li> <li>•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li> <li>• 수도꼭지는 온도를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li> </ul>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 미끄럼 방지장치</li> <li>•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온도 조정 및 고정 가능해야 함</li> <li>•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li> </ul>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 참조</li> </ul>																	
급배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은 공급하는 경우: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li> <li>•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우</li> </ul>																	

구분	법적근거	내용	추가 개정 내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57 1234 299 1331">필수시설</td> <td data-bbox="257 591 299 1234">기준</td> </tr> <tr> <td data-bbox="299 1234 367 1331">비상재해 대비시설</td> <td data-bbox="299 591 367 1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용 기구,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법적기준 준수</li> <li>•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 대피 가능</li> </ul> </td> </tr> </table>	필수시설	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용 기구,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법적기준 준수</li> <li>•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 대피 가능</li> </ul>	
필수시설	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용 기구,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법적기준 준수</li> <li>•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 대피 가능</li> </ul>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건법 제23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1호 근거</li> <li>- 어린이활동공간 시설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항목 적용 인가시 필수조건화 필요</li> </ul> </li> </ul>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시설, 설비 관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교구 설치 기준: 6개 영역별 + 특성별(장애통합, 다문화 등) 교구 설치기준</li> <li>- 시설·설비 기준: 보육실(책상, 의자, 교구장, 사물함, 칠판, 컴퓨터, 기저귀갈이대, 청소함 등), 조리실, 급식실 등</li> </ul> </li> </ul>				

29)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을 포함하고 있어 보육실겸 유희실이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리 규정이 필요함.

3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환기

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 1) 환기설비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 2) 교사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 3) 교사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 4)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 것
2. 채광(자연조명)
- 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인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조도(인공조명)
- 가.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나.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실내온도 및 습도
- 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
  - 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

##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증제 도입 및 보육품질 지원센터 설립

### 1) 필요성

국공립어린이집 적정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 인적구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첫째, 교사 대 아동 비율 둘째,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셋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 모두 상호연관되어 있다.

먼저,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은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의 현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담임교사는 1, 2급 교사로 제한하고 주임교사 또는 원감제도를 도입 승진체계를 만들어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주임교사 제도 도입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교사 평가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하며 주임수당은 추가 소요예산없이 운영비(제수당)에서 분배가 가능하다.<sup>31)</sup>

셋째, 보육교직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시 공인제도 마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1위는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꼽고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상대적으로 유치원교사에 비해 자격취득 조건, 보수 교육 이수시간과 커리큘럼, 교직과목 이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낮은 전문성 등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특성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토대로 한 역량강화, ‘서울시 보육교사 중심의 자율장학<sup>32)</sup>

31) 현재에도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주임교사 또는 원감을 지정하고 제수당 지급을 하고 있음. 하지만 주임교사 자격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공식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식화, 선정기준의 공정성 등을 마련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없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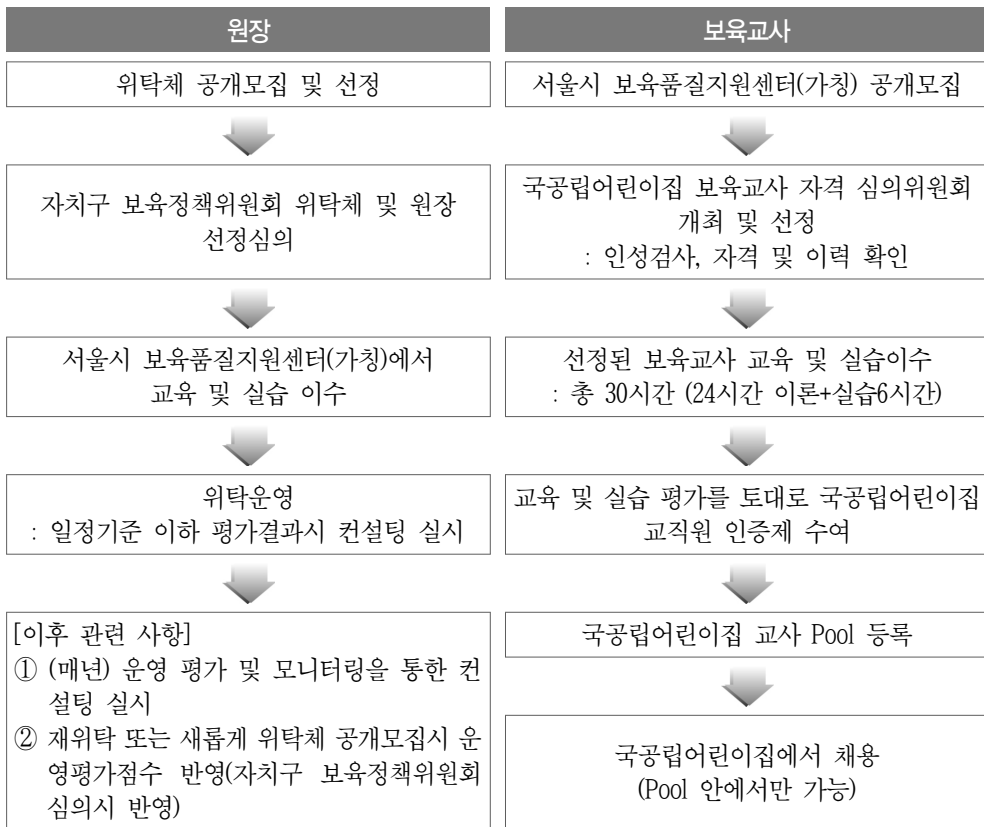
32) 유치원의 자율장학은 행정기관주도의 자율장학과 원주도의 자율장학으로 크게 이루어짐. 특히, 원주도의 자율장학은 유치원에서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원장·원감을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기초로 하여 서로 지도·조언, 정보공유, 협의 등의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함. 교사중심의 자율이라기 보다는 유치원 차원에서의 장학이라고 볼 수 있음.

및 자조모임(교사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지만(안현미, 2013: 129~130), 이 보다 보육교사 총체적 질적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시 인증제 도입 및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추진체계(안) 및 내용은 <그림 V-4>와 같다.

## 2) 추진체계 및 내용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증제는 <그림 V-4>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장과 보육교사 체제가 상이하게 적용되며, 서울시 보육품질지원센터(안) 설립을 토대로 이 기구에서 관리, 교육, 평가 등이 이루어진다.



■ 그림 V-4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증제(안)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 및 실습 내용은 <표 V-21>에서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단, 전제조건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이수과목 및 보수교육 이수과목을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로서 필요로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앞서 제안한 『서울시 교사성장프로젝트 (안)』(그림 V-2)의 연장선상에서 구체화한 것이다.

【표 V-21】 서울시 보육교직원 인증제: 사전직무교육 및 실습 내용(안)

	원장	보육교사
이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 윤리, 보육 공공성, 성평등,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li> <li>-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li> <li>- 보육경영 및 효율적인 리더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 윤리, 보육 공공성, 성평등,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li> <li>-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li> <li>- 교육철학 및 원리, 다양한 교수법 등</li> <li>- 아동행동이해 등 대응성 강화교육</li> </ul>
실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재무회계</li> <li>회계관리시스템 사용 및 기록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권리 존중 교수법 활용</li> <li>- 아동의 개별성 이해 및 대응성</li> <li>- 아동관찰 등 기록</li> </ul>

### 3. 서울시 어린이집 SMART 평가 시스템 도입

#### 1) 필요성

국공립어린이집 적정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서울시 보육목표와 어린이집 운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평가인증에서 주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의 기획-실행-평가 등에 대한 보육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로 건강, 영양, 안전뿐 아니라 환경구성 등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제3자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안심보육 모니터링 또는 부모모니터링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 평가이다. 즉, 아동의 성과평가(학부모 만족도 또는 참여도 등), 교사의 근무환경 만족도 및 역량평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 어린이집 운영 주체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 평가에 대해서는 안전, 건강, 영양 등에 있어서는 담당부서별 중복되어 평가가 과도하다는 점(안현미, 2011), 평가인증의 경우 형식적인 자기평가와 상호작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재정투명성, 보육교직원 관리 등)에 대한 평가는 부재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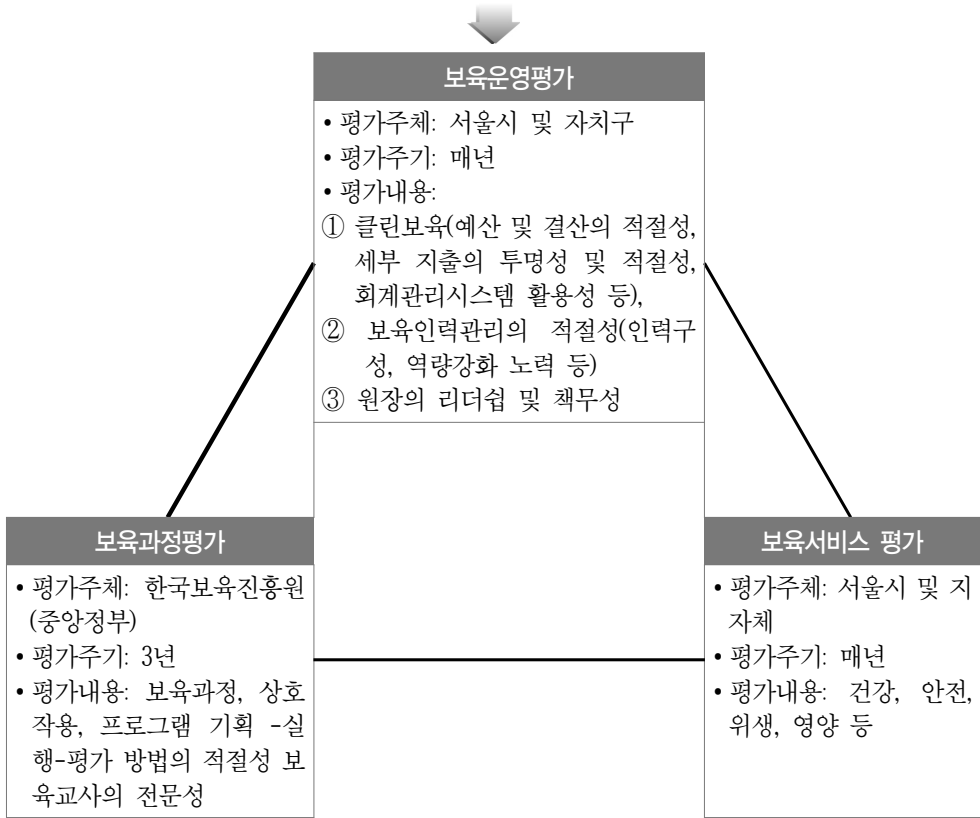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어린이집 운영 총괄평가시스템(안)을 『SMART 평가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추진체계 및 내용

SMART 평가 시스템을 보육운영평가, 보육과정평가, 보육서비스 평가 등 세영역으로 구분, 실시한다. SMART 평가 시스템의 전제조건은 평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평가자의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체계 또한 포함한다. 그리고 SMART 평가 목표는 a) 구체적으로(Specific), b) 측정가능하게(Measurable), c) 달성 가능하게(Achievable), d) 관련 있게(Relavant), e) 시기적절하게(Timely), f) 시간이 정해져 있도록(Time-bound) 설정하는데 일차적으로 주체는 어린이집 운영 주체인 원장과 보육교직원이라는 점이다. 즉, 평가가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하에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  
 : 평가지표개발, 평가기준안 마련(서울시-어린이집 연합회-학부모 대표-교사대표단 구성)  
 : 평가결과 공시 및 지도점검



■ 그림 V-5 ■ 서울시어린이집 SMART 평가 시스템(안)





## 참고문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국내문헌>

- 김미숙·김향지(2014), 『교사를 위한 특수아동의 이해과 교육』, 창지사.
- 김미애 외(2007). 공동육아교사성장체계 모형연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김유정, 박지혜, & 안선희. (2012). 보육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유능성, 그리고 가정  
연계 효능감이 부모-교사 협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5), 71-89.
- 김은영 외 (2011).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인(2004).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4), 147-182
- 김통원 외(2006).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안) 개발. 보건복지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 김현숙·서병선(2008). 보육료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승실대학교.
- 김혜금(2010). 보육비 현실화를 위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한국보육시설연합회.
- 남상호·최병호. (2011). 국민부담과 공공사회지출의 적정수준-복지국가유형별 접근. 재정정책논집, 13(1), 3-49.
- 문무경·천세영·황현주·이진경(2012). 표준 유아교육비 산출 연구: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박경일 외 (2009). 영아전담보육시설의 부모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질 구성차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6, 139-168.
- 박능후(2002).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단일호), 135-158.
- 박영숙, 제롬 글렌, 테드 고든(2007), 『전략적 사고를 위한 미래 예측』, 교보문고
- 박찬옥 외(2013).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정민사.
- 박찬옥·이경림·장명림(2007). 쟁점연구: 유치원 교육과정 사회생활 영역의 개정방향 탐구.  
유아교육연구, 27(1), 97-122.
- 보건복지부(2014). 『2014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사회복지협의회(2010). 사회복지시설유형별 최소기준(안)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
- 보건복지부·중앙보육정보센터(2013).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및 0-2세 영아보육프로그램의  
이해.
- 서영숙 외(2013), 보육학개론, 양서원
- 서수경(2014). 2014 안심회계 컨설팅 결과보고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미발간)
-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2013). 서울시민복지기준.
- 서울특별시(2011). 『서울 보육 선언』

- 서원석 외 (2009). GIS 를 활용한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간적 입지적정성 평가.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21(4), 265-283.
- 안종범(2010).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연구총서, 97(단일호), 1-111.
- 안현미·박소영. (2010).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1-239.
- 안현미 외(2011). 서울시 어린이집 평가 및 지표체계 효율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안현미 외(2012). 어린이집 보육재정 분석 및 지원체계 개선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미발간)
- 안현미 외(2013a). 무상보육(보육료 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b). 서울시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옥승 외 (1999). 『영유아보육개론』. 서울:학지사.
- 우명숙 외(2012). 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유희정 (1998). 어린이집의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3, 287-314.
- 유희정·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 보고, 2.
- 유희정·이연승·강민정(2012).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운영 및 교사처우 실태에 대한 분석: 부산광역시 보육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4), 181-202.
- 윤상용 외(201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제도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선(2000). 보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정·강란혜(2011).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무실태 개선을 위한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11(3), 27-44.
- 이미화 외(2013). 영유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순애·성소영(2012). 보육교사의 배경변인과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만족도. 아동교육, 21(3), 267-284.
- 이순형 외 공저(2013).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이승희·박지은(2006).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 산출에 관한 연구 .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57-79.
- 이연승·조미나(2005).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41-67.
- 이은주·양성은(2012).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이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30(2), 121-136.
- 이종성(2001). 『텔파이 방법』, 교육과학사.
- 일본 후생노동성 시행령 제63호 제35조
- 임영심 공저(2013). 『보육과정』. 양서원

- 장명립 외(2009).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모형개발 및 시범적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정계숙(2011). 유아교사의 어머니-교사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한 지각 관련 변인 연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vol 15 No 3, 143-164
- 정미라·박은혜·허혜경·권정윤·임준희(2007).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을 위한 영·유아 교육복지 정책 비교. 유아교육학논집, 11(3), 207~225.
- 정옥분(2004),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 조성연, 백은주, 김혜금, 권연희, & 정지나(2011). 한국형 보육교사 직무만족척도 (K-CTJSS)의 표준화를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1-12.
- 지은구, 이원주, & 김민주(2013).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품질관리척도 개발연구. 사회복지정책, 40(3), 347-374.
- 최경애(2004).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보육시설의 자체평가. 아동학회지, 25(5), 129-145.
- 최목화 외 역(2009). 보육시설환경디자인. 교문사
- 최선화·고순생(2009). 맞춤형보육의 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57, 227-247.
- 최은아(2007). 영아보육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 최효정·석은조(2013).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5, 93-115.
- 표갑수 백선희(1999). 보육인력(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및 전문성 유지환경에 대한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7, 57-96.
- 한유미·권정윤(2005). 스웨덴과 한국 보육시설의 질과 어머니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39-149.
- 합기남(2007). 영아보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해외문헌>

- ACECQA(2013). Guide to the National Quality Standard
- Bredenkamp, S., & Cople, C. (Eds.)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Rev.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De Bono, E(2005). De Bono's Thinking Course (Revised Edition)
- Dunn, L., Beach, S. A., & Kontos, S. (1994). Quality of the literacy environment in day care and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9(1), 24-34.
- EU(2013a), Barcelona objectives, European Commission
- EU(2013b), COMMISSION RECOMMENDATION, Investing in children: breaking the investing in children: breaking the cycle of disadvantage
- Greet C., Eveline V. C., Valery L., Leen H., Ilse B.. (2008). The contribution of preschool playground factors in explaining children's physical activity during re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2008. 5-11.
- Helburn, S. W., & Howes, C. (1996). Child care cost and quality. *The future of children*, 62-82.
- Howes, C., Phillips, D. A., & Whitebook, M. (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63(2), 449-460.
- Mattson, Marlin R(1992). *Manual of Psychiatric Quality Assurance*. Washington DC:
- Neal, Derek A. and William R. Johnson.(1996), *The Role of Premarket Factors in Black-White Wage Differ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69-895.
- Nishikawa, M. (2011). (Re)defining care workers as knowledge workers. *Gender, Work & Organization*, 18(1), 113-136.
- OECD(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arly Childhood*.
- OECD(2012).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OECD(2013). *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 Scarr, S., Eisenberg, M., & Deater-Deckard, K. (1994). Measurement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2), 131-151.
- Skolverket. (2010). *What influences Educational Achievement in Swedish Schools?*
- Taylor, D.(2005). *Development of Standard and Measurement Tools for Quality Assurance Systems in Australian Children's Services*. the Centre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Education.
- White, C. Coleman, M.(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Building a Philosophy for Teaching*. Merrill.



<웹사이트>

- 몰타(Malta)(2006), Ministry for the Family and Social Solidarity([https://secure3.gov.mt/socialpolicy/admin/contentlibrary/Uploads/MediaFile/booklet\\_standard\\_cdc\\_facilities\\_en.pdf](https://secure3.gov.mt/socialpolicy/admin/contentlibrary/Uploads/MediaFile/booklet_standard_cdc_facilities_en.pdf))
- 법제처, 영유아보육법(<http://www.law.go.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아일랜드(2011), 『NationalStandardsforPre-SchoolServices.』, Department of Health, accessed 2014.05.15([http://www.dohc.ie/publications/national\\_standards\\_preschool2010.html](http://www.dohc.ie/publications/national_standards_preschool2010.html))
- 일본 후생노동성(<http://www.mhlw.go.jp/bunya/kodomo/hoiku04/pdf/hoiku04b.pdf>)
-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과선택의정서’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 호주(2009), 『ACT Childcare Services Standards』, Department of disability, housing&community services
- Chapter 170-295 WAC: 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S(2013.10.22일 업데이트 자료)(<http://apps.leg.wa.gov/wac>)
- Department of Health, (2011), ‘NationalStandardsforPre-SchoolServices.’ accessed 2014.05.15 ([http://www.dohc.ie/publications/national\\_standards\\_preschool](http://www.dohc.ie/publications/national_standards_preschool))

## Abstract

#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equate child-care service standards' model for Seoul City and its application

AN, Hyun-Mi

Research Fellow, Policy Research Department

This study aims to set up new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of state and public child-care service in Seoul, going beyond just quantitative expansion. It proposes "adequate child-care service" based on these new standards and suggests how this model can be applied effectively in reality.

The study proposes new objectives and standards in the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ies, values and goals of Seoul's childcare policy. The six principles for quality child-care services are identified as: promotion of child development; promotion of professionalism of child-care teacher; transparency in operation; secur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promotion of community awareness on child-care and development of local social networks; and improvement of equity in child-care service and strengthening of organizational accountability. The study also presents 36 standards concerning these principles, based on which the researchers propose the following as necessary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child-care: better space and human resource configuration; systematic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improved professionalism of staff members; financial transparency; efficiency of operations and openness; enhanced health and safety protocols; the opening of hub nurseries; and ensured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The study also proposes that

staff of state and public child-care be required to gain certification, that a child-care quality support center be established, and that a smart evaluation system for child-care be introduced.



# 부 록

부록 1.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의 법적기준 및 근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기준의 법적기준 및 근거

### 1. 『아동측면 - 1.아동발달 적정성』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아동 측면	1. 아동 발달 적정성	1.1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시설설비	영유아용 기구와 설비/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영유아보 육법시행 규칙 별표1	영국 호주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나라별 필수공간                             <table border="1"> <tr> <td>한국</td> <td>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50인 이상)</td> </tr> <tr> <td>영국</td> <td>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무연</td> </tr> <tr> <td>호주</td> <td>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무연, 세탁실</td> </tr> <tr> <td>일본</td> <td>포복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td> </tr> </table> </li> <li>• 권장 공간 구성 :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li> <li>• 영유아 연령에 맞는 설비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용 기구 : 책상, 식탁, 의자, 교구장, 침대 등</li> <li>- 영유아용 설비 : 세면대, 변기,</li> <li>- 개인별 소지품 보관 공간</li> <li>- 영아반의 경우, 기저귀갈이·수유·온습도 조절 기능설비 포함</li> </ul> </li> </ul>	한국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50인 이상)	영국	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무연	호주	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무연, 세탁실	일본
한국	보육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50인 이상)									
영국	실내놀이공간, 외부놀이공간, 화장실, 무연									
호주	실내놀이공간, 행정공간, 저장고, 화장실, 무연, 세탁실									
일본	포복실, 의무실,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의 공간 배치		1-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만2세) : 신체영역, 언어영역, 탐색영역, 탐색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영역</li> <li>- 유아(만3~5세) : 언어영역, 수·조작영역, 과학영역, 과학교육영역, 음악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li> <li>• 보육실 내 영유아의 휴식 공간 마련</li> <li>• 보육실 내 영유아의 수면 공간 마련</li> <li>• 시설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음식과 간식에 대하여 영양사가 식단 작성</li> <li>• 식단구성시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밥은 잡곡을 기준으로 함</li> <li>② 국과 반찬 식단의 구성은 첫째, 단백질 1회/1일, 둘째, 반찬은 칼슘 1~2회/주, 셋째, 야채찬은 제철기준으로 매일, 김치로 구성</li> <li>③ 간식 중 오전간식은 과일, 유산균, 우유 중 선택하여 구성</li> </ol> </li> </ul>			
		영양사가 작성한 영유아용 식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5-11~12	
	1.2 아동의 발달에 적절한 급간식	급간식의 열량과 배식량, 제공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과 내 급식 1회와 간식 2회(오전, 오후) 제공을 원칙</li> <li>○전간식: 하루열량의 5~10%</li> <li>○점심: 하루열량에서 간식을 제외한 1/3</li> <li>○오후간식: 하루열량의 10%</li> <li>• 칼로리 기준</li> </ul>		5-11 5-1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법적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령</th> <th>하루필요열량</th> <th>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영영아</td> <td>이유식 3회</td> <td>중기이유식 후기이유식</td> </tr> <tr> <td>영아</td> <td>1000kcal</td> <td>500kcal</td> </tr> <tr> <td>유아</td> <td>1400kcal</td> <td>700kcal</td> </tr> </tbody> </table>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중기이유식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연령	하루필요열량	점심과 2회 간식 포함 열량기준																
영영아	이유식 3회	중기이유식 후기이유식																
영아	1000kcal	500kcal																
유아	1400kcal	700kcal																
		조리형태 및 음식의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하여 너무 짜거나, 달거나, 맵지 않아야 하며 영유아가 먹기에 적절한 크기로 제공되어야 함.</li> <li>식품 알레르기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에 반영하도록 함.</li> </ul>		5-11													
		보육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 :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li> <li>보육계획(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등에 의거하여 운영)</li> <li>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li> </ul>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보육과정)	3-1	몰타												
	1.3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의 내용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계획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활동과 집단 활동, 동적 활동과 정적 활동, 놀이 활동과 일상적 양육활동, 영유아 주도 활동과 교사 주도 활동의 균형</li> </ul> </li> <li>계획된 활동에 대한 실행 및 평가 기록</li> </ul>		3-2													
		보육 프로그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내용 편성·운영의 적절성 평가</li> <li>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흥미, 요구에 적합한지 평가</li> </ul>	영유아보육법	3-7	아일랜드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의 발달수준, 흥미, 요구에 적합한 경험 및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수학습 방법이 계획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평가</li> <li>일과 운영 및 보육활동 구성 시 놀이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의 양과 내용이 영아 및 유아 각 연령의 발달에 적합하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 평가</li> <li>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수시로 반영하여 보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다음 연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는지 평가</li> <li>기록과 분석평가가 유치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 살펴봐야함</li> </ul>	시행규칙 별표8의3		스웨덴
		적절한 교수법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주도적 접근법과 보육교사 주도적 접근법의 효과적 사용</li> </ul>		4-10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정하여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연령 이상 : 24개월 이상의 영유아</li> <li>-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 :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li> </ul> </li> </ul>	영유아보 육법 제29조제4 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3-5	
	1.4 아동의 연령 및 주제에 적합한	적절한 프로그램 용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자료의 구비 :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 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교구</li> <li>활동자료의 충분성, 다양성, 발달의 적합성</li> <li>신체활동 자료 : 대근육·소근육</li> </ul>	영유아보 육법시행 규칙 별표1	1-4~8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교재교구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활동 자료 : 듣기·말하기읽기·쓰기</li> <li>- 자연탐구활동 자료 : 수·과학</li> <li>- 예술활동 자료 : 음악·동작·미술</li> <li>- 역할놀이 및 쌓기놀이 자료</li> </ul> ※ 평가인증 기준: 각 활동역역별, 연령별(0~1세, 2세, 3~5세) 구분에 따른 필요 교재교구 구성																																	
		1.5 교사 대 아동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한국</td> <td style="width: 10%;">만0세:1.3</td> <td style="width: 10%;">만1세:1.5</td> <td style="width: 10%;">만2세:1.7</td> <td style="width: 10%;">만3세:1.5</td> <td style="width: 10%;">만4세이상: 1:20</td> </tr> <tr> <td>스코틀랜드</td> <td>2세이하:1.3</td> <td>2~3세 이하: 1:5</td> <td>3세 이상: 1:8</td> <td>8세 또는 그 이상: 1:10</td> <td></td> </tr> <tr> <td>영국</td> <td>2세 이하: 1:3</td> <td>2세: 1:4</td> <td>3~7세: 1:8</td> <td></td> <td></td> </tr> <tr> <td>몰타</td> <td>0~12개월: 1:3</td> <td>13~24개월:1.5</td> <td>25~46개월:1.6</td> <td></td> <td></td> </tr> <tr> <td>아일랜드</td> <td>0-1세:1.3</td> <td>1~2세:1.5</td> <td>2~3세:1.6</td> <td>3~6세:1.8</td> <td></td> </tr> </table> </li> </ul>	한국	만0세:1.3	만1세:1.5	만2세:1.7	만3세:1.5	만4세이상: 1:20	스코틀랜드	2세이하:1.3	2~3세 이하: 1:5	3세 이상: 1:8	8세 또는 그 이상: 1:10		영국	2세 이하: 1:3	2세: 1:4	3~7세: 1:8			몰타	0~12개월: 1:3	13~24개월:1.5	25~46개월:1.6			아일랜드	0-1세:1.3	1~2세:1.5	2~3세:1.6	3~6세:1.8		영유아보 육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2	2-3	스코틀랜드 영국 몰타 아일랜드
한국	만0세:1.3	만1세:1.5	만2세:1.7	만3세:1.5	만4세이상: 1:20																															
스코틀랜드	2세이하:1.3	2~3세 이하: 1:5	3세 이상: 1:8	8세 또는 그 이상: 1:10																																
영국	2세 이하: 1:3	2세: 1:4	3~7세: 1:8																																	
몰타	0~12개월: 1:3	13~24개월:1.5	25~46개월:1.6																																	
아일랜드	0-1세:1.3	1~2세:1.5	2~3세:1.6	3~6세:1.8																																
		1.6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10%;">한국</td> <td colspan="5">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td> </tr> <tr> <td>영국</td> <td colspan="5">한 그룹의 아이들의 수는 절대 26명을 넘지 않아야 함</td> </tr> <tr> <td>호주</td> <td>2세의 경우 최대 15명</td> <td>2~3세의 경우 최대 20명</td> <td>3~5세의 경우 최대 35명</td> <td colspan="2"></td> </tr> </table> </li> </ul>	한국	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					영국	한 그룹의 아이들의 수는 절대 26명을 넘지 않아야 함					호주	2세의 경우 최대 15명	2~3세의 경우 최대 20명	3~5세의 경우 최대 35명			보육 사업 안내		영국 호주												
한국	만0세반 2.6, 만1세반 2:10, 만2세반 2:14																																			
영국	한 그룹의 아이들의 수는 절대 26명을 넘지 않아야 함																																			
호주	2세의 경우 최대 15명	2~3세의 경우 최대 20명	3~5세의 경우 최대 35명																																	
		1.6 아동의 특별한 욕구와 행동에 대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에 대한 사례회의 및 협력</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평가인증	기타
	시간연장 보육 등 교사 데 아동 비율 적정	1.7 양질의 특수보육 환경 및 구성	한국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시간연장 보육 1:5	영유아보 육법 제26조의2 (일시보육 서비스), 시행규칙 제28조의2	스코트랜드 아이일랜드
			스코트랜드	3세 이상이거나 그 이상 아이들이 4시간 보다 적은 시간으로 돌봄 제공 1:10		
			아이일랜드	분기별 서비스 혹은 잠깐 맡기는 보육서비스 0-1세 1:3 / 1-2.2세 1:5 / 2.5-6세 1:10		
	특수보육 운영계획 마련 및 실행	특수보육 환경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보육 계획-실행-평가 계획서 작성 및 실행</li> <li>• 부모의견 수렴</li> </ul>			
	인적 물적 환경 구성의 적합성	인적 물적 환경 구성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인력 배치</li> <li>• 특수보육 특성에 맞는 물적환경(급간식, 장애아동의 경우 환경구성, 수면실, 샤워실 등)</li> </ul>			

## II. 『보육교사측면-2.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 교사 측면	2.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대응성 강화	2.1 보육교직원 복지규정 보유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개인 사물함이나 개별 책상의 구비, 별도의 공간 마련</li> <li>• 보육교사용 참고자료(구비, 활용) 지원</li> <li>• 직장의 고충처리 이행절차 마련 및 이행</li> <li>• 법적 보수교육 이외 다양한 교육 기회 지원</li> <li>• 복무규정지침 마련</li> <li>• 교사회 구성</li> </ul>	1-10 1-11		
		2.2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보육교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리엔테이션 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어린이집의 운영철학 및 보육목표,</li> <li>② 보육과정의 내용과 프로그램 특성,</li> <li>③ 직무에 관한 설명, 고용과 관련된 조건과 용어들에 대한 설명,</li> <li>④ 불만이나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리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li> <li>⑤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지침,</li> <li>⑥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법,</li> <li>⑦ 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반드시 기록, 관리</li> </ol> </li> </ul> </li> <li>• 모든 직원들은 직장에서 첫 주에는 건강, 안전 그리고 아동보호정책과 절차에 대한 신규훈련을 받아야함</li> </ul>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2-6	영국,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직무교육: 3년마다 40시간</li> </ul> </li> </ul>	영유아보육법 제23조, 동법	2-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 직무교육: 40시간</li> <li>- 승급교육: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 2급 승급 80시간, 1급 승급교육 40시간</li> <li>- 원장사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 80시간</li> <li>• 원장과 보육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승급교육을 받은 후 관련 행정기관의 증명서류(예정서류 포함)를 비치</li> <li>• 내용 : 아동발달, 교수방법 등 보육관련</li> <li>• 다양한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어린이집 내부 교육, 외부 교육·워크숍·세미나, 지역별 모임 등</li> <li>• 공평한 교육 참여 기회 제공</li> </ul>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지침사례 작성</li> <li>• 용인되는 행동 규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긍정적인 지도, 분명한 한계 설정, 자기 훈련이 되기 위한 아이의 능력 촉진,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칭찬, 방향 수정</li> </ul> </li> <li>• 금지되는 행동 규율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의 체벌 또는 위협, 음식·휴식·화장실 사용기회의 철회 또는 위협, 욕설, 공개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치·굴욕, 학대(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다른 형태 학대 포함)</li> </ul> </li> <li>• 아동의 행동 교육시 직원은 일관된 태도 취함</li> <li>• 아동을 소외·무시·방치·고립 시키면 안됨, 신체적 중재는 안됨</li> <li>• 아동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으로 기록 남김</li> </ul>			호주 몰타 아일랜드
		2.3 아동의 행동 지도	<p>적절한 개입과 대처방안 (긍정적 방법의 행동지도)</p>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2.4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li> <li>•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li> <li>• 관리자는 보육현장에서 적어도 2년의 경험</li> </ul>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국
		2.5 보육교직원 채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 이하: 그룹사이즈 10명 - 유아교육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인력</li> <li>• 그룹사이즈 15명 - 유아교육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자격있는 보조인력,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li> <li>• 그룹사이즈 20명 - 아동관련자격증 또는 유아교육 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두명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 인력</li> <li>• 3세 이상: 그룹사이즈 20명 - 아동서비스 수료증 또는 동등한 요건 또는 유아교육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인력</li> <li>• 그룹사이즈 22명 이상 - 유아교육학사 또는 대학에서 유아 전문에 해당하는 3년의 경험, 아동서비스 자격증 있는 한명의 자격있는 보조인력, 한명의 자격요건이 없는 보조인력</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자격, 근무기간 다른 급여기준, 퇴직금, 4대보험, 휴가, 휴직, 처</li> </ul>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	몰디브, 아일랜드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p>사직절차, 직무내용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계약은 문서화(제출서류: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자격증 사본)</li> <li>직원 모집 자격기준(나이, 경력, 자격, 증빙서류) 포함</li> <li>범죄경력조회서 포함</li> </ul>	<p>유교직원의 입면 등, 시행규칙 제11조(보육 교직원의 입면) 및 별표 3</p>		
	<p>용의 공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장은 전체를 조직하고 관리</li> <li>보육교사는 원장 운영방안에 따라 영유아를 보호, 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 수행</li> <li>원장과 보육교사는 반드시 업무분장된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 문서화되어 있음</li> <li>비품관리, 도서관리, 실외시설 관리 등과 같은 공동업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들에게 분담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지</li> <li>정기적으로 교사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음</li> </ul>	<p>영유아보육 법 제18조(보육 교직원의 직무)</p>	2-5	
	<p>보육교직원 의 직무분담 적절성</p>					



### III. 『보육서비스 측면-3.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서비스 측면	3.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의 투명성	3.1 아동관리	원어에 대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티પ소 관리</li> <li>• 신입 원아 적응절차(기간, 방법, 실행기록) 수립 및 시행</li> <li>• 수업장학(맞춤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내실 있는 수업 전개</li> <li>- 단위유치원의 수업 혁신 공동체 구축</li> <li>- 수업 혁신을 위한 자율장학 활성화</li> <li>- 자발적인 수업 컨설팅 장학 시행 및 지원</li> </ul> </li> </ul>	2-2	서울유아 장학지원 계획
		3.2 자율장학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위한 기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별 학급 회의회 운영</li> <li>- 교사 상호간의 수업참관 및 협의의 기회 확대</li> <li>- 교수·학습 계획안 공동 협의 및 자료 공동 개발</li> </ul> </li> </ul>		서울유아 장학지원 계획
		3.3 기관 관리감독	어린이집 간 자율적인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자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연수 실시</li> </ul> </li> <li>• 3년마다 정부의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인증)</li> <li>• 매년 1기관 1 모니터링 실시</li> <li>•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구비하고 매월 실시(필요시 매일)</li> </ul>		서울유아 장학지원 계획
		3.4 운영절차	자가 관리 및 정부 등의 지속적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방침(유무, 내용, 실행), 운영방침에 대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지, 부모 안내</li> <li>• 정책과 절차 설명서에 내부고발자 정책을 포함하여 시설 안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보장</li> <li>• 보육 정책 이행(응급절차/안전, 건강과 위생/직원/아</li> </ul>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물타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p>등)을 위한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법적 책임(보험) 보증</li> <li>• 기타 법률 및 규칙 준수</li> <li>•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li> <li>•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li> <li>•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함</li> <li>•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예산 및 결산,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어린이집 운영,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li> </ul>	등)		
			<p>운영위원회 계획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기록부(신체발달상황, 감염병 예방접종)</li> <li>• 접근 가능한 개인 기록(직원이름, 주소, 위원구성, 모집 정보, 훈련, 가격 등)은 건물 내 보관</li> <li>• 건물에 중요한 변경, 운영계획 변경, 직원·봉사자의 확대 협의, 다른 중요한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통보해야함</li> </ul>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영국
	3.5 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아 입·퇴소 관리서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이동연명부)</li> <li>• 어린이집 운영일지 작성 관리(영유아 출결상황 포함)</li> <li>• 재무회계 관련 서류</li> </ul>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 (어린이집 생활기록)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과정 운영 : 영유아 보육일지 작성 관리</li> <li>• 사고발생 등록 및 보고 : 사고보고서(보육사업 안내 서식 II-7) 작성 보고</li> <li>•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li> <li>• 영유아 관찰 기록 관리</li> <li>• 투약 기록 관리 : 아픈 영유아의 부모가 투약을 의뢰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투약한 내용에 대한 보고 관련 기록 (투약의뢰서, 투약 보고) 유지</li> <li>※ 투약의뢰서의 필수 기재사항 : 투약하는 약의 종류, 용량, 횟수 및 시간, 의뢰자</li> <li>• 응급처치동의서 및 귀가동의서 기록 관리</li> </ul>			
		영유아 개별 기록 관리		보육사업	2-2, 3-7, 5-9	
	3.6 재무회계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준수</li> <li>• 재무회계 관련 서류 구비</li> </ul>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3.7 예산 및 지출의 적정·타당성	이동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보육비용 산출기준 준수(연령별, 규모별): 표준보육비용의 항목별 비율 준수 또는 비용 준수 * 2009년 표준보육비용 산출기준</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법적	평가인증	기타							
			인간비	80%	71%	70%	51%	45%	45%									
			교재교구비	8%	11%	11%	18%	18%	18%									
			급간식비	4%	8%	9%	13%	18%	19%									
			관리운영비	5%	7%	9%	13%	13%	13%									
			시설설치비	3%	3%	3%	5%	6%	5%									
			표준보육비용	711,300	512,800	409,200	296,400	283,400	284,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는 책자의 형태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비스 목표와 그 기능에 대한 안내문,</li> <li>② 주요 정책과 서비스 절차,</li> <li>③ 아동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주는 방법, 관리체계의 세부사항,</li> <li>④ 아이들의 위해 제공하는 활동 세부사항,</li> <li>⑤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의 세부 사항,</li> <li>⑥ 자녀에 대한 세부 기록사항,</li> <li>⑦ 불만처리 방식,</li> <li>⑧ 그 외 보육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li> </ul> </li> <li>보육시설에 등록하기 전에 부모(보호자)에게 행동관리에 대한 서면지침을 알림</li> </ul>														
		3.8 기관정보 공개· 제공	부모/보호자를 위한 정보 제공															아일랜드

명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li> </ul>	영유아보육법 제 49조2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어린이집 정보 공시 준수					

#### IV. 『보육서비스 측면-4. 건강·안전·위생』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서비스 측면	4. 건강·안전·위생	4.1 아동 및 교직원 건강관리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마련</li> <li>• (장애) 영유아 투약 약물 관리 및 보관 : 상온, 냉장보관 등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li> </ul>	영유아보육법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5-9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정기적(연1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li> <li>•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li> </ul>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32조	5-10	물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li> </ul>	영유아보육법 제33조	5-6	
			4.2 급간식 관리	영양적 균형 및 다양한 식품 제공 양질의 신선한 식재료 사용 및 당일 소모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 (아동발달 기준 서비스 지표에 포함)</li> <li>• 당일 소모를 원칙으로 하며 재배식하지 않도록 함</li> </ul>		5-11
	4.3 위생환경 조성		실내 공간의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 즉, 보육실은 물론 공유공간(현관과 복도,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식당, 계단 등)을 매일 청소하며, 청결상태도 매일 점검</li> <li>•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공유공간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과 대청소 실시</li> <li>• 일과 중 대부분 현관은 잘 정돈되어 있고, 복도와 통</li> </ul>		5-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법적	평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계단과 창문 등은 청결 유지</li> <li>• 모든 보육실의 바닥, 천장, 창문과 창틀, 교구장, 책상, 의자, 바구니, 사물함 뒤편 구석진 곳 등도 청결상태 유지</li> <li>• 모든 보육실의 홍미영역에 깔려 있는 공동매트도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일광 소독하여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li> <li>• 청소도구(걸레, 빗자루 등)와 보관함, 휴지통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 처리하여 청결하게 유지.</li> <li>•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공유공간 포함)에 비취벌레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과 위생관리</li> <li>• 쓰레기 처리·관리</li> </ul>			
	보육실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는 영유아의 등원 전, 놀이 후, 식사 및 간식 시간 후, 낮잠 시간 후 등에 창문을 열고 환기</li> <li>• 채광(자연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 조도와외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 창문에 과도하게 썬팅지(한지)를 부착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블라인드)을 치는 등 햇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li> </ul> </li> </ul>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 운영기준) 별표8,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별표2	5-2	아일랜드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도(인공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li> <li>-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li> <li>- 보육실을 포함한 어린이집 실내에는 필요에 따라 사 용할 조명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함</li> <li>- 흥미영역에서 책을 읽거나 놀이 활동을 할 때에 어둠 거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를 유지</li> <li>- 어린이집 실내에 전반적으로 잔등의 수가 부족하거나 조명의 조도가 낮아 어두워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밝기를 유지</li> </ul> </li> <li>• 실내온도 및 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 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할 것</li> <li>-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할 것</li> <li>- 환절기, 여름철, 겨울철 등에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li> </ul> </li> <li>• 보육실 외 영유아가 사용하는 다른 실내 공유공간(예 : 유희실 등)도 환기, 채광, 조명,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li> </ul>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과 세면장이 항상 쾌적하고 건조하며,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과 중 수시로 확인</li> <li>• 변기 사용 후 오물(대·소변 등) 내리기 등과 같은 후속</li> </ul>	영유아보육법시 행규칙 제23조(어린이	5-4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법적	평가인증
			<p>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변기를 자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과 세면장에는 마른 수건, 비누, 휴지, 휴지통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함</li> <li>• 영유아가 사용하는 수건이 젖었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교체</li> <li>•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관리를 위해 청소 도구와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되,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li> <li>• 사용한 기저귀나 물휴지 등은 위생적으로 처리한 후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주 비워서 보호실 내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관리</li> <li>•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 오물(대·소 변)을 바로 처리하고 변기를 세척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li> </ul>	집 운영기준 별표8		
	조리실 공간과 설비의 위생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리실 바닥, 벽 및 천장 등 전반적인 조리실 공간에 대한 청결관리와 환기.</li> <li>• 조리실의 개수대 및 바닥 하수구에 음식 찌꺼기가 끼지 않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하고, 조리대, 싱크대, 식기수납장 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li> <li>• 조리실의 가스레인지, 후드, 환풍기 등에 찌든 때가 없도록 매일 청결하게 관리</li> <li>• 조리실의 냉장고는 내부를 정리정돈하며, 음식물이나 때가 냉장고 인편에 묻어 있는지 매일 확인하여 세제와 물로 잘 닦은 다음 소독하고 건조함.</li> <li>•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의 주방 가전도 매일 청결하</li> </ul>	영유아보육법시 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 운영기준) 별표8	5-5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평가인증	기타
			<p>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리실 비품(조리도구, 행주 등)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li> <li>식기류는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li> <li>영유아용 물컵은 먼지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청결하게 보관하고 관리</li> <li>영유아용 개별 컵을 준비하거나, 청결한 컵을 여러 개 비치하고 사용 전과 후로 구분하여 영유아들이 물을 마실 때 같은 컵을 쓰지 않도록 함</li> </ul>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식자재는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소비기한, 식품 구입날짜 등을 표기하고, 유통기한을 준수.</li> <li>각 식재료별 보관 방법을 확인 후, 그에 맞게 냉장, 냉동, 실온 보관하며, 선입선출</li> <li>남은 음식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반드시 폐기하고, 우유 등과 같이 쉽게 변할 수 있는 식품이 장시간 상온에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함</li> <li>마실 물의 경우 영유아들이 원할 때 손쉽게 마실 수 있도록 준비</li> <li>영유아들이 마실 물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를 제공.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정수기 꼭지와 필터는 정기적인 위생관리</li> <li>위생적인 음식조리</li> <li>위생적인 배식 과정</li> </ul>		5-6	
	영유아와 보육 교사의 청결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는 대소변 이후, 식사와 간식 전, 실외활동 이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 씻기.</li> </ul>		5-7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는 출근한 후, 영유아의 배변 지도(기저귀 갈이) 후, 식사(수유) 및 간식 전후, 실외활동 후, 투약하기 전, 영유아의 컵물을 닦아준 후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li> <li>• 손 씻기의 대안적인 방법으로 손 세정제(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위생장갑을 매번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함</li> <li>• 영유아와 보육교사는 점심 식사 이후 이를 닦아야 함.</li> <li>• 어린이집과 보육실 내 설치된 화장실에 영유아가 바르게 손을 씻는 순서와 이 닦는 방법에 대해 적절히 안내하며(예 : 그림판) 영유아 스스로가 올바르게 손을 씻고 이를 닦을 수 있도록 격려</li> <li>•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칫솔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세균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가 낮잠을 잘 때에는 개별 침구 사용, 오는 공동으로 사용 가능</li> <li>• 개별 침구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li> </ul>		5-8
	4.4 교재 교구의 안전 위생 및 친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보육실, 유희실, 놀이터 등)에 있는 플라스틱 블록이나 인형, 형질 놀잇감, 소꿉놀이 도구 등의 놀잇감을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유지</li> <li>• 놀잇감은 재질에 따라 천으로 닦아주거나 비눗물 세척, 일광 소독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하여 관리</li> <li>• 영유아가 실외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놀이기구(예 : 이동식 및 고정식 기구)를 먼지나 찌든 때가 없고 녹이</li> </ul>	안전하고 청결한 장난감과 용품 관리	5-3

명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법적	기타																
			<p>슬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만 0~1세, 2세)는 놀이감을 입으로 탐색하려는 발달 특성이 있으므로 더욱 청결하게 관리</li> <li>•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에 위치</li> <li>•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위치</li> <li>• 보육실 면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한국</td> <td colspan="3">영유아 1명당 2.64 제곱미터</td> </tr> <tr> <td>영국</td> <td>2세 이하: 3.5 제곱미터</td> <td>2세: 2.5제곱미터</td> <td>3~7세 : 2.3제곱미터</td> </tr> <tr> <td>아일랜드</td> <td>0-1세 3.5제곱미터</td> <td>1-2세 2.8제곱미터</td> <td>2-3세: 2.35제곱미터</td> </tr> <tr> <td></td> <td></td> <td></td> <td>3-6세: 2.3제곱미터</td> </tr> </table> </li> </ul>	한국	영유아 1명당 2.64 제곱미터			영국	2세 이하: 3.5 제곱미터	2세: 2.5제곱미터	3~7세 : 2.3제곱미터	아일랜드	0-1세 3.5제곱미터	1-2세 2.8제곱미터	2-3세: 2.35제곱미터				3-6세: 2.3제곱미터			
한국	영유아 1명당 2.64 제곱미터																					
영국	2세 이하: 3.5 제곱미터	2세: 2.5제곱미터	3~7세 : 2.3제곱미터																			
아일랜드	0-1세 3.5제곱미터	1-2세 2.8제곱미터	2-3세: 2.35제곱미터																			
			3-6세: 2.3제곱미터																			
		4.5 부지·시설 비 기준	<p>입지조건이 적</p> <p>실내외 면적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한국 (놀이터 면적 제외)</td> <td>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td> </tr> <tr> <td>몰타 (내·외부 시설 포함)</td> <td>아동 1명당: 5제곱미터</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놀이터 면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면적기준</td> <td>비고</td> </tr> <tr> <td>한국</td> <td>영유아 1명당 3.5㎡</td> <td>보육정원 50명 이상</td> </tr> </table> </li> </ul>	한국 (놀이터 면적 제외)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몰타 (내·외부 시설 포함)	아동 1명당: 5제곱미터	면적기준		비고	한국	영유아 1명당 3.5㎡	보육정원 50명 이상									
한국 (놀이터 면적 제외)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몰타 (내·외부 시설 포함)	아동 1명당: 5제곱미터																					
면적기준		비고																				
한국	영유아 1명당 3.5㎡	보육정원 5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명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영국 아일랜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5-4	아일랜드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법적	평가인증
			<p>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모든 방(수면실 제외)은 18-22도로 난방 -환영안전 관련 기준 준수</li> <li>• 보육실의 자연광 비율</li> <li>• 조명은 은은한 상태 유지(직원 아동의 상태를 확인 가능한 밝기)</li> <li>• 수면영역 제공 : 일반 놀이 공간에서 떨어져 있고, 수면을 취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어야 함</li> <li>• 직원들은 아이들이 자는 내 수면실에 반드시 머물러야 함</li> <li>• 개인침구</li> <li>• 영아반의 경우, 기저귀 같이 영역의 구비</li> <li>•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는 기저귀, 옷가지, 물휴지 등의 비품을 갖추어야 함</li> <li>• 아이 10명당 1개의 기저귀 같이 영역</li> <li>• 아이/유아방과 가까운 곳</li> <li>• 성인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곳</li> </ul>			
	조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광이 잘 되도록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환경을 유지,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li> <li>•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목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방을 하여야 함</li> <li>• 바닥의 미끄럼방지 장치</li> <li>• 샤워설비, 세면설비(영유아가 이용가능하여야 함)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li> <li>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li> <li>바닥의 미끄러움방지 장치</li> <li>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함</li> <li>모든 2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최소 하나의 변기와 뜨거운 물과 찬 물이 나오는 세면대가 있어야 함</li> <li>수세식 유아용 변기 설치(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li> <li>아동 10명마다 변기 1개, 세면대 1개 배치</li> <li>직원 8명당 화장실1개, 세면대 1개</li> <li>장애이용 화장실 1개</li> <li>온수는 43도 보다 낮게 설정</li> <li>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li> </ul>			
	화장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6-1	영국 아이런던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놀이터 : 보육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의무 설치</li> <li>옥외놀이터 시설설비 :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패드, 폼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을 설치</li> <li>놀이터, 놀이기구는 「품질경영 및 공신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범직	평가인증	법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인쪽에 설치하여야 함)</li> <li>•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대피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li> <li>•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출입구 확보</li> <li>• 안전한 유리 성분과 설치기준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 내부의 마감 재료는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가 바람직함</li> <li>• 모든 자재, 물감, 장난감은 무연으로 인증</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6-1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튼 등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을 갖추어야 함</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위험을 사전 평가하고 중요한 변화나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의심된다면 검토해야함</li> </ul>			영국
	4.6 안전환경 조성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실은 영유아가 하루일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므로 보다 안전하게 유지, 관리</li> <li>• 영유아가 접근할 수 있는 창문에는 추락방지를 위해</li> </ul>		6-1	몰타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법적	평가인증
			<p>장문 보호대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한 경우,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을 짧게 정리</li> <li>• 보육실 내 전기콘센트(이동식콘센트 포함)는 안전덮개를 덮고, 전선, 줄 등은 길게 늘어져 영유아의 손에 닿거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li> <li>• 보육실 내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은 적절한 보호 장치</li> <li>•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파손되지 않았으며, 모서리가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을 사용하거나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li> <li>• 교구장은 영유아가 쉽게 움직일 수 없도록 안정적으로 놓여 있으며, 안전을 위해 아래쪽에 무거운 물건을 보관하고, 선반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li> <li>•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li> <li>• 보육실 내 설치된 정수기의 온수는 영유아가 만져도 안전하도록 안전조치</li> <li>• 보육실 내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온수는 사용 시 수온이 지나치게 높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통해 조절하도록 한다.</li> <li>• 보육실 바닥은 장판이 들뜨거나 울퉁불퉁하여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고르게 설치</li> <li>• 아이들이 열수 없게 만든 자물쇠, 문, 창문, 서랍장 등</li> </ul>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조리실 설비의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의 활동공간과 분리되어 설치(분리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접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li> <li>놀잇감은 영유아가 혼자 활동에 몰입하거나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영유아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li> <li>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에 있는 모든 놀잇감은 거친 표면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파손되지 않아야 함</li> <li>모든 놀잇감은 유해색소가 첨가되거나 유해색소로 표면에 도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li> <li>천장이나 벽에 모빌 등을 부착한 경우, 영유아가 잡아 당겼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li> <li>끝이 깨진 사기그릇, 안전 처리되지 않은 깡통 등은 위험하므로 놀잇감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조개껍데기와 같은 실물자료를 제시한 경우 깨지거나 날카롭지 않도록 주의</li> <li>놀잇감 보관함이나 비구니 등도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li> <li>실내의 놀잇감에 파손 등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폐기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후 즉시 수리</li> </ul>	39인이 하 5-3	
	실내의 놀잇감의 안전관리			6-4	
	실내의 위험한 물건의 보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의 모든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로 보관</li> <li>영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장치</li> </ul>	6-5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비상재해대비 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용기구 관리(소화기 및 스프링클러)</li> <li>• 비상구 관리</li> <li>•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li> <li>• 전기 소켓은 가리거나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함</li> <li>• 매년 전기기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함</li> <li>• 약품의 종류별 사용(유효)기한 표기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재료 :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봉대, 탄력붕대, 칼, 가위, 편셋, 반창고,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li> <li>• 의용제 : 과산화수소수, 페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근육용 마사지 연고, 화상용 바세린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li> </ul>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기제품의 안전 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물타
					비상약품의 구비 및 관리	5-9	
	진염성 질환에 대한 조치 및 예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수립</li> <li>•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수시로 제공 : 감염병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안내</li> </ul>		5-10		
					투약의뢰된 영유아 약 관리	5-9	영국 물타
	4.7 아동의 안전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가 복용하는 약은 상온, 냉장보관 등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도록 함</li> <li>• 약물 치료와 관련한 부모와의 논의</li> <li>• 의약품은 원봉용기에 보관하고 알기 쉽게 라벨링, 아</li> </ul>		5-9	영국 물타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p>이들 접근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는 의약품을 관리 할 수 있는 사전 서면 승인 제공</li> <li>• 약물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li> <li>• 보육실의 환경은 보육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li> <li>• 어린이집의 실내외 환경도 가능한 보육교사가 모든 영유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li> <li>• 기동 뒤나 계단 밑과 같이 구석진 곳은 영유아의 접근을 차단</li> <li>• 영유아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보육실 밖으로 나갈 때는 보육교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영유아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살펴보아야 함.</li> <li>• 보육교사가 영유아를 남겨두고 일정 시간 이상 보육실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책임 있는 성인과 교체한 후 자리를 비우기</li> <li>• 영유아가 실내외놀이터에서 고정식 및 이동식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성인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li> <li>• 산책이나 일상생활 관련 활동 등을 위해 영유아와 함께 어린이집 밖으로 나갈 때는 모든 영유아가 보육교사의 보호 하에 있도록 주의</li> <li>• 영아(만 0-1세, 2세)는 유아에 비해 성인의 눈에서 벗어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육교사는 더욱 주의하여 영아를 보호</li> </ul>			
	영유아에 대한 성인의 보호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6-6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의 인계 과정에 자체 규정(필수기재사항 :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부모가 회담 하더라도) 영유아를 혼자 귀가시키지 않도록 함, 반드시 지정된 보호자 에게 영유아를 인계한다는 내용 포함)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li> <li>모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귀가동의서(필수기재사항 : 영유아의 이름, 귀가 시 영유아를 인계받을 보호자의 이름, 관계 및 연락처, 보호자의 서명)를 받아야 함</li> <li>모든 영유아(차량 이용 영유아 포함)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 다른 성인에게 인계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전화나 서명으로 확인</li> </ul>	6-7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li> <li>「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는 교육대상이 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li> <li>차량 내부에 탑승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li> <li>차량 운행 시 운전자 외에 책임있는 성인(원장, 보육교사 등)이 동승</li> <li>보육교사와 유아는 차량 운행 시작 전 모두 개별 안전띠를 착용</li> <li>운전자는 영유아가 안전하도록 서행하며, 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운행 중 영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li> </ul>		도로교통법 제52조제53조 의 2, 제53조의3, 제33조의2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p>없도록 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에 동승한 성인은 영유아가 차량에 타고 내릴 때 위험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거나 옷자락이 끼거나 밟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비가 올 때는 유아가 우산을 접고 펼 수 있도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영장활동시 부모의 서면 동의 필요</li> <li>적십자 구조법이나 YMCA 수중 교육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함시 대기</li> <li>아이들이 사용할 때 어른이 항상 대기</li> <li>직원 대 어린이의 비율: 유치원 및 그 이상 1:8 / 5살 1:5 / 4살 1:3 / 3살 1:2</li> </ul>			아칸 사스
	4.8 비상시 대처방법 및 절차 수립	비상시 대처방안 마련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대비시설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함.</li> <li>「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각 시설별 설치 기준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설비의 종류와 수준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름).</li> <li>어린이집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 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완강기는 적함하지 않음), 피난구 유도등.</li> <li>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관리되고 있어 비상 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li> </ul>	영유아보육법	6-9	몰타 아일랜드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 각 층마다 최소 1개씩 구비, 눈에 잘 띄는 곳, 소방약제가 충분, 압력이 정상범위 내</li> <li>- 유도등: 비상 시 어린이집 내 모든 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li> <li>- 비상구: 비상구는 잠그지 않거나, 평소 잠가두어도 잠금장치가 인접에 있어 성인이 쉽게 열 수 있어야 함, 비상구나 비상계단을 교구장으로 막거나 통로 등에 짐을 쌓아두는 경우 등은 바람직하지 않음</li> <li>• 보육교직원은 대피시설과 설비를 바르게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습 등을 통해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함</li> <li>• 어린이집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과 대처방안 숙지(비상 시 대처방안의 필수기제사항 : 대피요령, 보육교직원 의 역할분담표, 비상대피도)</li> <li>• 소화기와 담요 구비</li> <li>• 대피 출구를 나타내는 건물 도면(배치도)</li> <li>• 센터 내에 탈출 경로를 나타내는 신호체계</li> <li>• 응급처치를 할 줄 알고 응급처리 최신방법을 익힌 직원이 최소 한명 이상</li> </ul>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4.9 사고예방 및 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서는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보육과정 내에 수립하여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li> <li>•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li> </ul>		6-10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평가인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이 있으며, 이외 안전한 보행법, 놀이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등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li> <li>•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때는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놀이, 동화, 이야기나누기 등의 방법으로 보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다룸으로써 영유아가 보다 쉽게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li> <li>• 원장은 영유아의 안전교육에 대해 보호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안내하며, 희망하는 보호자가 안전교육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li> <li>• 어린이집에서는 소방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소방(대피) 훈련을 실시</li> <li>• 정기 소방훈련 이외 비정기적으로(불시) 다양하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li> <li>• 안전교육과 소방(대피) 훈련은 보육일지 등에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li> </ul>			



## V. 지역사회연계측면-5. 사회적돌봄의 공동체 의식강화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지역사회연계측면	5. 사회적돌봄의 공동체 의식강화와 지역사회네트워크	5.1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관찰, 개별면담,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영유아의 적응 문제나 영유아 가족의 당면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li> <li>다른 영유아와 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안내.</li> <li>영유아의 적응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와 어린이집이 영유아를 돕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 논의</li> <li>영유아와 가족의 특정 문제를 도와줄 전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예 : 서비스 종류, 전화번호, 비용 등)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부모에게 안내해주어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줌</li> <li>어린이집은 부모가 영유아의 문제나 가족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 회의 전문기관, 주민센터, 구청 또는 전문가(예 : 의사, 상담전문가, 특수교육전문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부모와 논의</li> <li>특수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협조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li> </ul>		2-12
		5.2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들이 가정과 어린이집 외에 지역사회 환경을 보다 친밀하게 이해하도록 어린이도서관, 병원, 경찰서, 초등학교, 대학, 주민센터, 공원 관리사무소, 소방서 등의 가까운 장소를 방문할 기회를 제공</li> <li>영유아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게 하는</li> </ul>		2-11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p>등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지역사회에 있는 공통된 자원뿐 아니라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음</li> </ul>			

자료

1. 스코트랜드 : national care standards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up to the age of 16, revised march 2005
2. 호주: belonging being and becom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2009
3. 영국: National standards for under 8s day care and childminding, SureStart, 2003
4. 아일랜드: National Standards for Pre-School Services Full day care services, 2010
5. 몰타: NATIONAL STANDARDS FOR CHILD DAY CARE FACILITIES, 2006
6. 아칸사스: MINIMUM LICENSING REQUIREMENTS FOR CHILD CARE CENTERS
7. 스웨덴: '스웨덴의 아동 보육제도' 1998 122-128 / Skolverket. 'Curriculum for the preschool Lpfö 98 revised 2010'.1-16. www.skolverket.se.

## VI. 『보육기관의 공공성 측면-6.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영역	원칙 (principal)	기준 (standard)	criteria	근거		
				법적	평가인증	기타
보육기관의 공공성	6. 보편적 보육을 통한 평등성 보장 및 기관의 책무성	6.1 누구나 필요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만 접수 서비스는 간단 명료하게 접근하기 쉽도록 관리, 처리 형태는 서면기재(이름, 불만의 성격, 불만 접수 일자 및 시간, 조사기록, 조사결과, 조사 이후 불만을 접수한 이에게 정보 제공)형태</li> <li>• 접수된 불만 처리과정을 해당 부모(보호자)에게 공지</li> <li>• 사생활 및 기밀유지</li> <li>• 아동이나 그 불만과 관련된 사항에 별척을 부과해서는 안됨</li> </ul>			아일 랜드
		6.2 지속적인 보육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상시화	<p>공식적인 운영절차 및 김플레인 창구</p> <p>운영의 투명성 노력</p> <p>개방성</p>			



2014 정책연구-01

## 서울시 '적정보육서비스' 모델 개발 및 정착화 방안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안현미  
발행일 2014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http://www.seoulwomen.or.kr)

